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황지태 | 김지영 | 원혜욱 | 김지연

A Study on the Current Operation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in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발간사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는 말처럼 청소년 비행은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혹은 과잉보호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의 문제가 자녀의 내면에 집약되어 나타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는 청소년 비행에 축소되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근대 이전의 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가진 성숙한 인간으로 대우받았다면 근대 이후의 청소년들은 문제적 인간에 지나지 않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였고, 점차로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 병리현상과 동떨어져 오롯이 청소년 자신의 문제, 혹은 청소년과 부모의 문제로만 귀착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문제해결의 초점은 비행 청소년과 부모를 교정하는 것에 한정되었고, 현장에 있는 몇몇 분들의 헌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본고에서 다루는 국선보조인 제도도 큰 틀에서 본다면 소년사법제도의 일부이고, 소년사법제도는 우리 사회의 일부입니다. 일부라 함은 미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소년사법제도가 사회라는 유기체 안에서 작동하는 한 기관으로, 한국사회가 가지는 모든 문제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국선보조인제도도 2007년에 도입되었으나 정확한 현황자료나 평가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국선보조인 개인과 판사의 개인 역량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운이 좋은 청소년은 헌신적인 판사와 국선보조인을 만나 적절한 처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청소년은 더 심각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소년사법제도를 경시하는 국가기관의 태도와 더 나아가 물질만능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소외 등 우리 사회의 가치관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선보조인 현황을 조사하고,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초로 전국 단위의 조사를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를 통해 국선보조인제도뿐만 아니라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회의

아픈 손가락인 비행청소년에게 사랑과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완성되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소년원 관계자분들과 국선보 조인 여러분, 소년부 판사분들, 인하대학교 원혜옥 교수님께 감사 드리며, 황지태 연구위원, 김지영 연구위원, 그리고 김지연 위촉연구원 및 손소영 인턴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황지태)	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7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소년 국선보조인제도 관련 국내외 법률 개관 (원혜욱)	15
제1절 한국의 제도	17
1. 국선보조인 제도의 도입과정	17
2. 보조인의 역할	18
3. 보조인의 선임	19
4. 국선보조인의 선정	19
제2절 일본의 제도	20
1. 소년사법절차	20
2. 보조인(付添人)제도	21
가. 의의	21
나. 보조인의 유형과 효력	22
3. 국선보조인(国選付添人)제도	24
가. 국선번호인과의 구별	24
나. 국선보조인제도의 연혁 및 운영상황	26
다. 국선보조관련업무에 관한 설명(国選付添関連業務の解説)	28

제3절 독일의 제도	35
1. 소년사법제도 개요	35
2. 보조인(Beistand) 제도	35
가. 보조인의 선임	35
나. 권한과 의무	36
3. 변호인(Verteidiger) 제도	37
가. 변호인의 선임	38
나. 소년변호사의 자격 및 역할	38
다. 필요적 변호제도	40
제4절 미국의 제도	42
1.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소년변호의 필요성	42
2. 국가소년변호인센터(National Juvenile Defender Center; NJDC)	43
가. NJDC의 역할	43
나. 소년변호기준(Juvenile Defense Standards)의 정립	45
3. 국가변호인제도와 관련한 각 자치주의 소년변호기준	49
가. 코네티컷(Connecticut)주 : 소년변호 실무지침서	50
나. 인디애나(Indiana)주: 무자력(빈곤)자 변호기준	53
다. 루이지애나(Louisiana)주: 소년변호절차를 위한 사실심 실무기준	54
라. 메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소년범죄 및 소년범죄자, 형사사건에서의 무자력 소년의 변호에 관한 실무지침	54
마. 오하이오(OHIO)주: 소년범죄사건에서의 의뢰인 변호기준	55
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 소년범죄 변호실무지침서	55
사. 위스콘신(Wisconsin)주: 소년변호실무에 관한 국선변호인원칙	55
제5절 소결	56
1. 국선보조인의 전문화	57
2. 국선보조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57

| 제3장 | 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국선보조인 인식조사 (김지영·김지연)

59

제1절 조사방법	61
----------------	----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61
2. 측정변인	63
가.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4
나. 국선보조인 업무와 관련된 측정 변인	65
제2절 국선보조인의 특성과 활동 현황	67
1.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현황	67
2. 인구사회학적 특성	68
가. 성별과 연령	68
나. 교육수준과 전공	68
다. 직업과 자격증	69
제3절 국선보조인 업무 경험	71
1. 활동 경력	71
가. 활동 기간과 실제 사건 담당 여부	71
나. 국선보조인 선발 계기와 시작 동기	72
다. 담당 사건 수	73
라. 다른 보조인과의 교류	74
2. 면담(접견) 경험	75
가. 면담 소요 시간	75
나. 의견서 작성 소요 시간	76
다. 접견 횟수와 형태 및 관계인과의 접견	76
라. 면담상황에 대한 만족도	78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82
가. 참고하는 기관 자료	82
나.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2
다. 처분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	87
라. 소년의 태도	88
마. 국선보조인의 개인차와 의견 결정	88
바. 의견서 형식	89
4.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인식	89
가.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지도	89
나.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	90
다.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	93
라. 예상 처분에 대한 대처	95

마. 직업이 국선보조인 업무에 가지는 강점	96
5.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97
가. 보수 수준	97
나. 관련 교육	98
다. 보완되어야 할 교육 내용	99
라.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	101
마. 보조인 제도의 운영 및 관리 형태	102
6. 향후 계획	103
가. 면담자와의 사후 교류	103
나.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보람	103
다. 업무에 있어 어려움	105
라.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완점	109
제3절 성별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13
1. 성별과 면담업무	113
2. 성별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115
3. 성별과 업무에 대한 인식	118
4. 성별과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119
5. 성별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20
6. 성별과 향후 계획	125
제4절 직업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26
1. 직업과 면담업무	126
2. 직업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128
3. 직업과 업무에 대한 인식	131
4. 직업과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132
5. 직업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33
6. 직업과 향후 계획	139
제5절 지역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40
1. 지역과 면담업무	140
2. 지역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143
3. 지역과 업무에 대한 인식	147
4.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150
5. 지역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52

6. 지역별 향후 계획	163
제6절 소결	165
1. 전국 국선보조인의 활동 현황에 대한 소결	165
2. 성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결	166
3. 직업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결	167
4. 지역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결	169

| 제4장 |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소년들의 평가 (김지영) · 175

제1절 조사방법	175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175
2. 측정 변인	177
제2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80
1. 성별 및 신분, 연령	180
2. 교육수준과 지역분포	181
3. 가족관계	183
제3절 조사대상자의 비행경력과 국선보조인 접견경험	184
1. 조사대상자의 비행경력과 현재 처분	184
2. 국선보조인 접견경험	186
제4절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190
1.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190
2.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195
3.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198
4.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200
5. 지역 및 국선보조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 201	
6. 국선보조인의 활동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206
7. 조사대상자 비행경력과 국선보조인 평가	210
8.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213
제5절 소결	215

| 제5장 | 심층면접 결과 분석 (황지태·손소영) 219

제1절 심층면접의 개요 221

- 1. 심층면접 방법 221
- 2. 심층면접 대상자 221

제2절 심층면접 분석 결과 223

- 1. 국선보조인 제도에 대한 평가_관계자 223
 - 가. 시설 내 소년 223
 - 나. 분류심사원 직원 및 심사관 227
 - 다. 가정법원판사 232
- 2. 국선보조인 제도에 대한 평가_국선보조인(現) 235
 - 가. 변호사 국선보조인(서울지역) 235
 - 나. 청소년 전문가 국선보조인 237

| 제6장 | 시설 내 소년들과 국선보조인들의 응답 비교 (황지태) 253

제1절 두 설문조사 사이의 비교 가능한 응답 비교 255

- 1.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한 비교 255
- 2. 국선보조인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258
- 3. 국선보조인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 262
- 4. 국선보조인의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268
- 5. 설문조사 응답 비교 요약 272

제2절 심층면접 내용과의 비교 275

| 제7장 | 요약·결론 및 정책 제언 (황지태) 277

제1절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요약 및 해석 279

제2절 정책적 제언	282
참고문헌	285
Abstract	289
부록	293
[부록 1]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293
[부록 2] 시설 내 소년 대상 설문지	306

표 차례

〈표 1-1〉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의 신규 소년법 대조	8
〈표 2-1〉 국선변호·국선보조인 제도	25
〈표 2-2〉 국선변호·국선보조 대상사건	25
〈표 2-3〉 소년보호사건 변호사보조인 선임수·원조보조인 이용건수의 추이	27
〈표 2-4〉 가정재판소에서 선임한 국선보조인에 대한 보상기준(개요)	34
〈표 3-1〉 전국 각 법원별 국선보조인 현황	61
〈표 3-2〉 조사기관 및 설문수거현황	62
〈표 3-3〉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측정 변인	64
〈표 3-4〉 국선보조인업무와 관련된 측정 변인	66
〈표 3-5〉 지역별 현황	67
〈표 3-6〉 국선보조인의 성별	68
〈표 3-7〉 국선보조인의 연령	68
〈표 3-8〉 국선보조인의 학력	69
〈표 3-9〉 국선보조인의 전공	69
〈표 3-10〉 국선보조인의 직업(전직(前職) 포함, 복수응답 가능)	70
〈표 3-11〉 국선보조인의 직업경력	70
〈표 3-12〉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복수응답 가능)	71
〈표 3-13〉 국선보조인 활동 기간	71
〈표 3-14〉 국선보조인 업무 경험 여부	72
〈표 3-15〉 국선보조인 선발 계기(중복응답 가능)	72
〈표 3-16〉 처음 국선보조인을 시작하게 된 주된 동기	73
〈표 3-17〉 평균 한 해 담당하는 총 사건 수	74
〈표 3-18〉 다른 보조인과의 교류 여부	74
〈표 3-19〉 다른 보조인과의 교류 형태(중복응답 가능)	74
〈표 3-20〉 소년별로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	75
〈표 3-21〉 국선보조인이 생각하는 적정 면담시간	75
〈표 3-22〉 한 소년당 의견서 작성을 끝낼 때 까지 총 소요시간	76
〈표 3-23〉 두 번 이상 접견 여부	76
〈표 3-24〉 소년접견의 형태(복수응답 가능)	77
〈표 3-25〉 관계인 접견 여부	77
〈표 3-26〉 면담 관계인(복수응답 가능)	78

〈표 3-27〉 관계인 면담의 형태(복수응답 가능)	78
〈표 3-28〉 면담장소의 안정감 정도	79
〈표 3-29〉 직원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	79
〈표 3-30〉 시설에 대한 만족도 정도	79
〈표 3-31〉 정서적 공감 형성 정도	80
〈표 3-32〉 면담시 소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정도	80
〈표 3-33〉 부모의 협조 정도	81
〈표 3-34〉 소년의 협조 정도	81
〈표 3-35〉 소년의 반성과 참회 정도	81
〈표 3-36〉 보조인 의견 결정시 참조 자료	82
〈표 3-37〉 범죄관련사항의 영향 정도	83
〈표 3-38〉 범죄경력의 영향 정도	83
〈표 3-39〉 생활환경의 영향 정도	83
〈표 3-40〉 성장과정의 영향 정도	84
〈표 3-41〉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의 영향 정도	84
〈표 3-42〉 학력 및 학교생활의 영향 정도	84
〈표 3-43〉 교우관계의 영향 정도	85
〈표 3-44〉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 능력의 영향 정도	85
〈표 3-45〉 진술태도의 영향 정도	85
〈표 3-46〉 향후 생활계획의 영향 정도	86
〈표 3-47〉 소년에 대한 이전 조사자료의 영향 정도	86
〈표 3-48〉 재범 가능성의 영향 정도	86
〈표 3-49〉 피해자와 합의 노력 여부의 영향 정도	87
〈표 3-50〉 의견 결정시 영향을 주는 범죄유형의 영향 정도	87
〈표 3-51〉 면담시 소년의 태도가 처분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88
〈표 3-52〉 국선보조인의 개인차가 의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88
〈표 3-53〉 보조인의 의견서 형식	89
〈표 3-54〉 의견서 형식 통일의 필요성 여부	89
〈표 3-55〉 국선보조인 활동 이전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지도	90
〈표 3-56〉 관련 분야 자료에 대한 관심 정도	90
〈표 3-57〉 활동에 대한 소명의식 정도	90
〈표 3-58〉 다른 보조인들과의 교류에 대한 중요성	91
〈표 3-59〉 업무에 열의를 가지기 어려운 정도	91
〈표 3-60〉 내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성 정도	92

〈표 3-61〉 판사의 결정에 심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험 정도	92
〈표 3-62〉 업무의 사회 공헌도	92
〈표 3-63〉 직무에 있어 엄격한 윤리기준의 필요성 정도	93
〈표 3-64〉 판사결정에 보조인 견해 반영 정도	93
〈표 3-65〉 소년의 입장 공감 정도	94
〈표 3-66〉 소년에게 보장된 권리에 도움 정도	94
〈표 3-67〉 업무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 정도	94
〈표 3-68〉 소년에게 신뢰감 줄 수 있는 정도	95
〈표 3-69〉 소년의 예상처분 질문에 대한 답변	95
〈표 3-70〉 시설내 처분 예상될 경우 장래 계획 질문	96
〈표 3-71〉 사회내 처우로 결정 경향 정도	96
〈표 3-72〉 직업이 보조인 업무에 특별한 강점을 가진다는 인식 여부	96
〈표 3-73〉 보조인 활동에 강점이 되는 직업관련 지식	97
〈표 3-74〉 국선보조인 보수 수준의 적절성 정도	97
〈표 3-75〉 정기적인 보조인 교육의 필요성 정도	98
〈표 3-76〉 보조인 교육 경험 여부	98
〈표 3-77〉 교육 내용의 충실성 정도	99
〈표 3-78〉 교육을 받지 못한 사유	99
〈표 3-79〉 청소년비행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100
〈표 3-80〉 상담기법 교육의 필요성	100
〈표 3-81〉 우수 사례 교육의 필요성	100
〈표 3-82〉 사법제도 교육의 필요성	101
〈표 3-83〉 국선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 교육의 필요성	101
〈표 3-84〉 국선보조인의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	102
〈표 3-85〉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의 형태	102
〈표 3-86〉 현행 국선보조인 관리의 체계적 운영 여부에 대한 인식	102
〈표 3-87〉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 체계화의 필요성 여부	103
〈표 3-88〉 면담소년과 지속적인 사후 교류 정도	103
〈표 3-89〉 업무에 대한 보람	104
〈표 3-90〉 향후 보조인 업무 지속할 의향	104
〈표 3-91〉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정도	104
〈표 3-92〉 비행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105
〈표 3-93〉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	105
〈표 3-94〉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정도	106

<표 3-95> 관련지식의 부족 106

<표 3-96> 대상자들이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106

<표 3-97>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107

<표 3-98> 국선보조인간 상호협조의 부족 107

<표 3-99> 처분유형과 시설의 다양성 한계 108

<표 3-100>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108

<표 3-101> 국선보조인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108

<표 3-102> 대상자의 개선가능성에 대한 신념의 부족 109

<표 3-103> 대상자의 해코지 가능성에 대한 염려 정도 109

<표 3-104> 활동사례집 및 회보 발간의 필요성 110

<표 3-105>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확대의 필요성 110

<표 3-106> 국선보조인 워크숍 활성화의 필요성 110

<표 3-107> 교육 및 연수 강화의 필요성 111

<표 3-108> 보조인의 역할 및 권한 강화의 필요성 111

<표 3-109> 법원의 감독 강화의 필요성 112

<표 3-110> 법원의 예산지원 필요성 112

<표 3-111> 국선보조인에 대한 포상의 확대 필요성 112

<표 3-112> 성별 면담시간의 차이 113

<표 3-113> 성별 면담시간의 차이 113

<표 3-114> 성별 접견횟수의 차이 114

<표 3-115> 성별 관계인과의 접견 여부의 차이 114

<표 3-116> 성별 면담상황의 차이 115

<표 3-117> 성별 의견서 작성 소요시간의 차이 115

<표 3-118> 성별 의견결정시 고려 사항의 차이 116

<표 3-119> 성별 의견서 형식의 차이 117

<표 3-120> 성별 의견서 형식의 통일성 필요 여부의 차이 117

<표 3-121> 성별 업무에 대한 인식 차이 118

<표 3-122> 성별 업무의 자신감 차이 119

<표 3-123> 성별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의 차이 120

<표 3-124> 성별 보수수준의 적절성 인식의 차이 120

<표 3-125> 성별에 따른 정기적 교육의 필요성 차이 120

<표 3-126> 성별 교육의 보완 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121

<표 3-127> 성별 보조인 자격에 있어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에 대한 인식의 차이 122

<표 3-128> 성별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 형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 122

〈표 3-129〉 성별 보조인 관리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차이	123
〈표 3-130〉 성별 보조인 활동 어려움의 차이	124
〈표 3-131〉 성별 보조인 제도의 보완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125
〈표 3-132〉 성별 대상자와의 지속적 교류정도의 차이	125
〈표 3-133〉 성별 업무에 대한 보람과 지속 의향의 차이	125
〈표 3-134〉 직업별 면담시간의 차이	126
〈표 3-135〉 직업별 적정 면담시간의 차이	126
〈표 3-136〉 직업별 접견횟수의 차이	127
〈표 3-137〉 직업별 관계인과의 접견 여부의 차이	127
〈표 3-138〉 직업별 면담상황의 차이	128
〈표 3-139〉 직업별 의견서 작성 소요시간의 차이	128
〈표 3-140〉 직업별 처분 결정시 고려 사항의 차이	129
〈표 3-141〉 직업별 의견서 형식의 차이	130
〈표 3-142〉 직업별 의견서 형식의 통일성 필요 여부의 차이	130
〈표 3-143〉 직업별 업무에 대한 인식 차이	132
〈표 3-144〉 직업별 업무의 자신감 차이	132
〈표 3-145〉 직업별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의 차이	133
〈표 3-146〉 직업별 보수수준의 적절성 인식의 차이	133
〈표 3-147〉 직업별 정기적 교육의 필요성 차이	134
〈표 3-148〉 직업별 교육의 보완 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134
〈표 3-149〉 직업별 보조인 자격에 있어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에 대한 인식의 차이 ..	135
〈표 3-150〉 직업별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 형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	136
〈표 3-151〉 직업별 보조인 관리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차이	137
〈표 3-152〉 직업별 보조인 활동 어려움의 차이	138
〈표 3-153〉 직업별 보조인 제도의 보완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138
〈표 3-154〉 직업별 대상자와의 지속적 교류정도의 차이	139
〈표 3-155〉 직업별 업무에 대한 보람과 지속 의향의 차이	139
〈표 3-156〉 지역별 면담시간의 차이	140
〈표 3-157〉 지역별 적정 면담시간의 차이	141
〈표 3-158〉 지역별 접견횟수의 차이	141
〈표 3-159〉 지역별 관계인과의 접견 여부의 차이	142
〈표 3-160〉 지역별 대상자와의 정서적 공감정도의 차이	142
〈표 3-161〉 지역별 의견서 작성 소요시간의 차이	143
〈표 3-162〉 지역별 소년의 성장환경 고려정도의 차이	144

<표 3-163> 지역별 소년의 범죄경력 고려정도의 차이 144

<표 3-164> 지역별 소년의 재범가능성 고려정도의 차이 145

<표 3-165> 지역별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 고려정도의 차이 145

<표 3-166> 지역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고려정도의 차이 146

<표 3-167> 지역별 의견서의 형식 146

<표 3-168> 지역별 의견서 형식의 통일성 필요 여부의 차이 147

<표 3-169> 지역별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의 차이 148

<표 3-170> 지역별 업무에 대한 실망의 차이 148

<표 3-171> 지역별 내 판단에 대한 확신의 차이 149

<표 3-172> 지역별 보조인 견해와 판사 견해의 일치 정도의 차이 149

<표 3-173> 지역별 업무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 150

<표 3-174> 지역별 소년의 예상처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이 151

<표 3-175> 지역별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장래계획 질문의 차이 151

<표 3-176> 지역별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지만 사회내 처우 제시 경향의 차이 152

<표 3-177> 지역별 보수수준의 적절성 인식의 차이 153

<표 3-178> 지역별 정기적 교육의 필요성 차이 153

<표 3-179> 지역별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차이 154

<표 3-180> 지역별 상담기법 필요성의 차이 154

<표 3-181> 지역별 우수사례의 소개 필요성의 차이 155

<표 3-182> 지역별 사법처리 절차 필요성의 차이 155

<표 3-183> 지역별 국선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 필요성의 차이 156

<표 3-184> 지역별 보조인 자격에 있어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에 대한 인식의 차이 157

<표 3-185> 지역별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 형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 158

<표 3-186> 지역별 국선보조인 제도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차이 158

<표 3-187> 지역별 제도적 한계 인식의 차이 159

<표 3-188> 지역별 대상자와의 갈등 인식의 차이 159

<표 3-189> 지역별 보조인간 상호협조 부족 인식의 차이 160

<표 3-190> 지역별 시간적 여유 부족 인식의 차이 160

<표 3-191> 지역별 대상자의 개선에 대한 신념 부족 인식의 차이 161

<표 3-192> 지역별 보수의 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 161

<표 3-193> 지역별 관련지식의 부족 인식의 차이 162

<표 3-194> 지역별 교육 및 연수의 강화 필요성의 차이 162

<표 3-195> 지역별 예산지원과 역할 및 권한의 강화 필요성의 차이 163

<표 3-196> 지역별 대상자와의 지속적 교류정도의 차이 164

〈표 3-197〉 지역별 업무에 대한 보람의 차이	164
〈표 4-1〉 조사기관 및 설문수거현황	176
〈표 4-2〉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178
〈표 4-3〉 국선보조인 태도평가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179
〈표 4-4〉 국선보조인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179
〈표 4-5〉 국선보조인 신뢰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180
〈표 4-6〉 조사대상자의 성별	180
〈표 4-7〉 조사대상자의 신분	181
〈표 4-8〉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181
〈표 4-9〉 조사대상자의 교육 수준	182
〈표 4-10〉 조사대상자 지역분포	182
〈표 4-11〉 조사대상자의 가구 월수입	183
〈표 4-12〉 조사대상자 부모님의 혼인상태	183
〈표 4-13〉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가족(복수응답)	184
〈표 4-14〉 경찰서에 처음 잡혀간 나이	185
〈표 4-15〉 경찰서에 잡혀간 횟수	185
〈표 4-16〉 보호처분을 받은 횟수	185
〈표 4-17〉 현재처분 비행범주별 빈도(복수응답)	186
〈표 4-18〉 접견한 국선 보조인의 수	186
〈표 4-19〉 국선보조인 배정 상황(복수응답)	187
〈표 4-20〉 가장 최근 국선보조인 배정시기	187
〈표 4-21〉 가장 최근 배정된 국선보조인의 성별	188
〈표 4-22〉 가장 최근 배정된 국선보조인 연령	188
〈표 4-23〉 국선보조인 접견횟수	188
〈표 4-24〉 국선보조인 접견시간	189
〈표 4-25〉 국선보조인과 가족의 상담여부	189
〈표 4-26〉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1: 사건의 내용	190
〈표 4-27〉 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2: 과거비행	190
〈표 4-28〉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여건)	191
〈표 4-29〉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4: 성장과정	191
〈표 4-30〉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92
〈표 4-31〉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6: 학력 및 학교생활	192
〈표 4-32〉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7: 교우관계	193

<표 4-33>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8: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93

<표 4-34>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9: 향후 생활계획 194

<표 4-35>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10: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194

<표 4-36>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11: 이번 비행의 처분 195

<표 4-37>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1: 형식적인 태도 196

<표 4-38>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2: 비행소년에 대한 편견 196

<표 4-39>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3: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 197

<표 4-40>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4: 불신과 의심 197

<표 4-41>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5: 편안한 접견분위기 198

<표 4-42>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1: 법률적 지식 198

<표 4-43>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2: 성실한 조사과정 199

<표 4-44>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3: 진심어린 조언 199

<표 4-45>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4: 성실한 변론 200

<표 4-46>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1: 믿고 의지함 200

<표 4-47>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2: 솔직하게 말함 201

<표 4-48>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3: 무성의하게 말함 201

<표 4-49> 지역에 따른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성실성 및 만족도 202

<표 4-50> 지역에 따른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태도평가 및 신뢰 203

<표 4-51> 국선보조인의 성별에 따른 평가 205

<표 4-52> 국선보조인의 연령에 따른 평가 205

<표 4-53> 접견횟수에 따른 국선보조인 평가 207

<표 4-54> 접견시간에 따른 국선보조인 평가 209

<표 4-55> 가족상담여부와 국선보조인 평가 210

<표 4-56> 최초로 경찰서 조사를 받은 연령에 따른 국선보조인 신뢰 정도 210

<표 4-57> 경찰조사를 받은 횟수에 따른 국선보조인 신뢰 정도 211

<표 4-58> 보호처분 받은 횟수에 따른 국선보조인 신뢰정도 212

<표 4-59> 보호처분횟수에 따른 국선보조인 평가 213

<표 4-60> 성별에 따른 국선보조인 평가 214

<표 4-61> 연령에 따른 국선보조인 평가 215

<표 5-1> 심층면접 대상자_시설 내 소년 222

<표 5-2> 심층면접 대상자_기타 관계자 222

<표 5-3> 심층면접 대상자_현 국선보조인 223

<표 6-1> 두 조사에서의 국선보조인 성별 비교 256

<표 6-2> 두 조사에서의 국선보조인 연령대 비교 257

〈표 6-3〉 두 조사에서의 국선보조인의 근무 지역 (부산경남과 기타지역으로 구분) 258

〈표 6-4〉 참고: 각 지역 시설 소속에 따른 소년 접견 횟수 비교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258

〈표 6-5〉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259

〈표 6-6〉 성별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260

〈표 6-7〉 연령대별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261

〈표 6-8〉 지역별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262

〈표 6-9〉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 263

〈표 6-10〉 성별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1 264

〈표 6-11〉 성별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2 265

〈표 6-12〉 성별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3 265

〈표 6-13〉 연령대별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 266

〈표 6-14〉 지역별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 267

〈표 6-15〉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269

〈표 6-16〉 성별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270

〈표 6-17〉 연령대별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271

〈표 6-18〉 지역별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272

그림 차례

[그림 1-1] 우리나라 소년법상 사건처리 절차 7

[그림 2-1] 일본 국선보조인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도 (<http://www.houterasu.or.jp>) 29

[그림 2-2] 사건종료와 보수 및 비용의 지불 (*원출처: <http://www.houterasu.or.jp>) 32

국문요약

- 이 보고서는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보고서이다.
- 보고서 전체의 주요 내용은 ‘국선보조인제도 관련 국내외 법률 개관’(제2장),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제3장), ‘국선보조인을 접한 소년사범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제4장), ‘국선보조인 및 소년부 판사, 소년분류심사관, 분류심사원생 등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제5장), ‘두 종류의 설문응답 결과 및 심층면접 결과 비교분석’(제6장) 등으로 구성된다.
- 주요 연구방법은 외국제도 분석,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설문조사(249명),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 시설에 수용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227명), 국선보조인(6명), 소년부 판사, 분류심사관, 분류심사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등이다.
- 조사를 통해 밝혀낸 국선보조인 운용 실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재 국선보조인의 70% 가량은 변호사, 30% 가량은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국선보조인은 남성, 30-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법원의 위촉공고를 보고 지원해 국선보조인에 위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② 현재 각 국선보조인들의 활동 사이에는 큰 편차가 존재하며, 성별, 직업별,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 직업별로는 청소년 전문가,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지역의 성실성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 국선보조인을 접한

2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들의 경우에도 여성과 부산·경남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대부분 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경우였다.

- ③ 현재 각 지역의 국선보조인제도는 지역마다 독특하게 제각기 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각 지역의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등은 다른 지역의 국선보조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특정 지역 내 국선보조인들 간의 교류는 나름 존재하지만 지역 간의 정보 교류 등은 거의 없는 편이다.
 - ④ 국선보조인 스스로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수준과 국선보조인의 보조를 받는 소년들이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수준 사이에는 매우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성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소년들의 평균적인 평가수준은 대체로 높지 않은 편이다.
- 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범적인 사례들을 서로 배우고, 잘못된 사례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선보조인들이 소년들에게 실수 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서로 공유하여 최소한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년들을 감싸 안는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꼼꼼한 태도나 부산·경남지역의 판사 및 국선보조인들의 헌신을 모범으로 삼아볼 만도 하다.
 - ② 국선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나, 현재와 같은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해 보인다. 현재와 같은 교육은 피부에 잘 와 닿지 않기 쉽고, 적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 자체에 참석조차 하지 않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교육은 오히려 동료와 선배 국선보조인과의 네트워크와 경험 공유를 통한 현장 교육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 ③ 국선보조인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가 소년변호인센터는 소년변호기준(Juvenile Defense Standards)을 정립하여 소년을 변호하고자 하는 변호인에 대한 다양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 소년변호인들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제도는 우리나라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조력을 담당하는 보조인의 자격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현재 우리나라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선보조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国選付添関連業務の解説(국선보조관련업무에 관한 설명)」을 제정하여 국선보조인의 업무 및 그 보수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참조할 만하다.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론

황 지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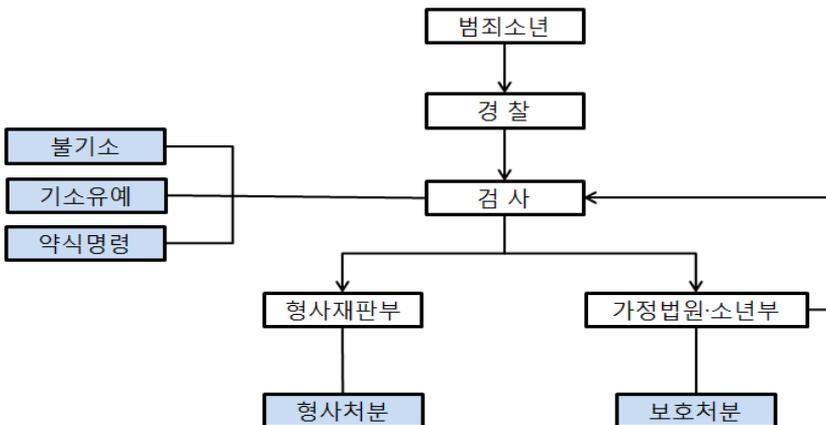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이 보고서는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보고서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 중 소년형사사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 형사절차를 기준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우리나라 소년법상 사건처리 절차

그림 출처: 김은경 외 (2007a),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제1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89.

8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 국선보조인제도는 소년보호사건(그림 1-1의 오른쪽)에 고유한 제도로써, 형사사건의 국선번호인 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은 소년법에서 '보조인'에 해당된다. 시설 내 보호소년 등에게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에 생겨났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은 2007년에 네 번째의 개정을 겪었는데, 당시 개정 내용의 핵심은 다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표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개정에서 국선보조인 선정 등에 관해 규정하는 '제17조의2'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표 1-1>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의 신규 소년법 대조

		기존 소년법	개정 소년법
적용 대상 인하	축범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우범	12세 이상 소년	10세 이상 소년
국선보조인 제도의 도입		보조인선임 규정만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선보조인 규정 신설 (제17조의2)
피해자 보호방안		의견진술권만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등의 진술과 규정신설 (제25조의2) 화해권고제도 도입 (제25조의3)
보호처분의 다양화 내실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감호위탁 2. 단기보호관찰 3. 장기보호관찰 4.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5. 병원, 요양소 위탁 6. 단기소년원송치 7. 장기소년원송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감호위탁 2. 수강명령(100시간내) 3. 사회봉사명령(200시간내) 4. 단기보호관찰 5. 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등의 처우법률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검찰 다이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 신설 (제49조의2) 조건부기소유예제도 명문화 (제49조의3)
비행예방 정책마련			제67조의2 이하

※ 도표 출처 : 김은경 외 (2007a),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1) : 제1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87.

2007년 제4차 소년법 개정 이전의 소년보호절차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과 같은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소년 분류심사원에 신병이 유치되어 있는 소년이나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으로 소년보호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소년들의 인권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 소년 국선보조인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보호사건에도 국선보조인제도가 도입된 후, “소년이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필수 선임)¹⁾해야 하고,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이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²⁾ 보장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선보조인을 ‘변호사 등 적정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국선보조인한테는 단순히 변호인의 역할만이 기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심판규칙에 따르면, 국선보조인은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³⁾ 등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⁴⁾과 같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전문가그룹을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이외의 소년 관련 전문가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까지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인 변호가 가장 중요한 일반 형사범들과는 달리— 열악한 가정·사회 환경에 취약하고 미성숙함을 지닌 소년사범들을 사회가 좀 더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의 발로이기도 하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조인은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갖는다⁵⁾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보조인이 법원의 협력자 역할⁶⁾과

1) 200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의 소년법 제17조의2 ①항.

2) 소년법 제17조의2 ②항.

3) 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 ①항의 1호.

4) 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 ①항의 2호.

5) 대법원 1994. 11. 5. 자 94트10 결정.

6) ‘법원의 협력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용을 참조할 수 있다. “법원의 협력자 역할이라 함은 판사의 최종적인 처분결정에 있어서 조언을 제공하고, 특히 개별화된 처우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복출처: 이동원·박병훈, 2015,

동시에 소년의 후견인 및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적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⁷⁾ 혹은 다른 말로 보조인이 “행정적 또는 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양면성”⁸⁾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년사법 들을 올바르게 제도하여 범죄자의 길이 아닌 정상적인 사회인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회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어 그 도입의 애초 목적은 물론이고 향후에 더 나은 사회제도로 작동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도입된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연구는 그에 관한 실증연구⁹⁾뿐만 아니라 비교법적 연구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소년 국선보조인제도 전반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심도있는 연구는 전무하다. 그런 와중에 이 제도의 운용의 실무 일각에서는 이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가령, 제도도입과정에서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의 경우에만 국선보조인을 필수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의 권리보호에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시설 외 소년에 대한 처분결정을 하는 판사의 경우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 반대로 필수 선정의 경우엔 소년 분류심사관과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국선보조인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전국적인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 없이 각 지검(청) 단위에서 자체적인 지침과 기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경험적 고찰”, 『경찰학논총』 제10권 1호, 283면; 이승현, 2008, “한국 개정소년법상 소년의 권리보장”, 『소년보호연구』 제11호, 4면; 광병선, 2007, “미국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형사법연구』 제19권 3호, 835면.

7) 최병각, 200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소년사법”, 『소년법연구』 창간호: 520면.

8) 대법원 1994. 11. 5. 94트10 결정.

9) 지금까지 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단 한편뿐이다. 이동원·박병훈, 2015,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경험적 고찰 - 진단의견서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0권 1호: 281-303.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선보조인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본 연구보고서는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의 서론과 제7장의 결론 및 제언 부분을 제외한 본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소년 국선보조인제도 관련 국내외의 법률을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에 국선보조인제도가 도입된 계기와 입법취지,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의 국선보조인제도와 그 운영현황에 대해 큰 그림 속에서 조망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외국 제도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국선보조인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국선보조인들 스스로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선보조인을 접한 소년사범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해 보았다. 국선보조인을 만나는 소년사범들의 눈을 통해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제도를 조망해 보고자 한 것이다. 제5장에서는 국선보조인과 그 제도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국선보조인들과 함께 소년부 판사, 소년분류심사관, 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소년사범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선보조인제도 운영 과정의 구체적인 단면들을 좀 더 생생히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들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와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 중에서 비교가 가능한 부분들을 뽑아 서로 비교하고 심층면접 결과를 연계하면서 국선보조인제도 운영의 특성이나 문제점 등에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앞의 장별 주요 내용 소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크게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외국 제도분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설문조사는 크게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 시설에 수용된 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심층면접 조사는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분류심사관, 분류심사원생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6년 국선보조인으로 위촉된 전국 각지의 689명으로 모집단으로 하여 2016년 8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E메일 온라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 249명의 국선보조인이 설문에 응답하여 그 응답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했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국선보조인의 업무 현황과 업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설문의 주요 측정변인은 소년과의 면담 경험과 의견서 작성,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어려움, 개선점, 그리고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설문조사의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제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소년원 등 시설에 수용된 소년들의 의견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소년원에 입소한 소년 전원과 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위탁중인 소년들 중에서 국선보조인 접견 경험이 있는 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해당 되는 인원은 2016년 6월 당시 총 1,54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조사기간 동안 1,35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불성실한 응답 사례들을 제외했을 때 남는 1,227명의 응답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국선보조인의 활동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설문의 주요 측정변인들은 소년의 국선보조인 접견경험과 국선보조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문항내용으로는, 그동안 만난 국선보조인의 수, 국선보조인 배정 상황, 가장 최근의 배정시기, 국선보조인의 성별, 국선보조인 연령대, 국선보조인의 접견횟수, 국선보조인의 접견시간, 국선보조인의 가족상담여부 등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방법에 관해서는 제4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조사연구에서는 국선보조인의 실제 업무와 인식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서울, 광주, 창원, 춘천, 인천 등 전국의 국선보조인 6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그에 덧붙여 분류심사관, 소년분류심사원생, 소년부 판사 등 몇몇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심층면접은 2016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대상은 국선보조인으로,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국선보조인 활동 시작 시기, 활동 기간, 국선보

조인 역할 및 활동 내용, 다른 지역 및 소속기관 국선보조인과의 교류, 국선보조인 활동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절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5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소년 국선보조인제도 관련 국내외 법률 개관

원혜욱

소년 국선보조인제도 관련 국내외 법률 개관

제1절 한국의 제도

1. 국선보조인 제도의 도입과정

국선보조인제도는 2007년 11월 1일 법제사법위원장이 2005년 8월 이근식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안, 2006년 11월 이종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안, 2006년 12월 이계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안, 2006년 12월 김영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4건의 개정안을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11월 22일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법률안을 제안한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점이 반영되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소년법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 ① 소년법에는 소년 보호사건 절차에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소년법의 인권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②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위탁소년에게는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소년이 아니더라도 국선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 보호사건 절차에 의해 심판받는 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¹⁰⁾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국선보조인제도는 2007. 12. 21. 개정소년법 제17조의2에 신설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보조인의 역할

현행 소년법 제55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피고인이 소년이면 구속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규정의 의미가 지켜진다고는 할 수 없다. 소년피의자·피고인의 경우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에 해당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오히려 높다. 왜냐하면 범죄소년의 상당수는 가정과 학교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고는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형사절차에서 구속된 소년이 보호처분절차로 이송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에게 효율적인 처우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전문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여도 소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사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변호인·보조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절차에 보조인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변호인에 해당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준용하도록 한 것(소년법 제17조 제6항¹¹⁾)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은 보호절차가 갖는 행정적·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소년법원에의 협력자의 지위도 아울러 가진다. 이에 보조인은 소년의 변호인으로서 신병처리, 조사, 심리 및 보호처분의 결정과 관련하여 소년의 권익을 옹호함과 동시에 소년법원의 협력자로서 보호절차와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소년과

10) 법제사법위원회가 2007. 11. 22. 제안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7924, 참조

11) 소년법 제17조 제6항 “「형사소송법」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보호자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보조인은 해당 소년의 보호자와 소년의 문제를 의논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소년과 서로 소통하게 하여 정서적 유대를 회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년의 요보호성이 감소되도록 하고,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을 소년법원에 제안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²⁾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해 보조인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즉, 소년사건에서 보조인으로 선임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적 능력을 갖추는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선보조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3. 보조인의 선임

소년보호절차에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이다(소년법 제17조 제1항). 소년에게 보조인선임권을 인정한 것은 소년심판이 비록 처벌이 아닌 보호를 지향한다 해도 그 과정과 결과에 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¹³⁾ 소년의 보조인선임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직접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국선보조인의 선정

소년법은 제17조의2에 국선보조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선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절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①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12) 김다숙, 소년보호재판에서 국선보조인의 역할,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년, 689면

13) 최병각, 전계 논문, 534면

고 있다.

제1항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소년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위축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소년의 인권보장과 조사·심리과정에서 보조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2항 역시 소년이 비행사실을 부인하여 심리절차에서 그 비행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 소년에 대한 적정절차의 보장과 방어력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및 보호자가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및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선보조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고, 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 제항).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①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또는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②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본 규정은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법률전문가 이외에 소년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과 전문적인 교육능력을 갖춘 교육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소년보호절차가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재사회화의 달성이라는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일본의 제도

1. 소년사법절차

일본은 법원선주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범죄(비행)소년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 처리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정재판소에서 소년사건을 처리한다. 가정재판소는 검찰관 등으로부터 송치 받은 소년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가

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 및 그 이외에 필요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가정재판소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호조치의 결정에 의해 소년을 소년감별소에 송치하여 소년의 환경 및 소질 전반에 대한 감별을 요구할 수 있다.

가정재판소는 조사결과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건을 도도부현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에게 송치하여야 하므로 심판에 부할 수 없고, 심판에 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심판불개시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심판을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심판개시결정을 한다.

가정재판소에서의 심판은 통상적으로 단독재판으로 실시되지만 합의제로 심판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제로 처리한다. 소년심판절차에서 소년 및 보호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혹은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이외의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보호자도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이 될 수 있으며 보조인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가정재판소는 범죄소년에 관한 사건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심판절차에 검찰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심판에 검찰관을 출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년에게 변호사인 보조인이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보조인(付添人)제도

가. 의의

일본의 소년심판절차는 가정재판소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조인은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절차에서의 변호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변호인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 및 후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보조인은 변호인적 성격과 아울러 가정재판소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 ① 변호인로서의 역할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② 협력자로서의 역할 :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이 적정하게 실현되기 위하여 소년의 국가적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재판소에 협력하고 원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년과 보호자에게 소년보호사건절차의 취지 및 처우결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여, 소년 등이 조사 및 심판에 있어서 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조인의 유형과 효력

1) 보조인의 유형 및 선임방식

보조인의 유형으로는 ① 소년 또는 보호자가 선임하는 변호사인 보조인(소년법 제10조 제1항), ②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호자인 보조인(제10조 제2항), ③ 검찰관이 심판에 관여하는 경우의 국선보조인(제22조의3)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보조인은 변호사가 보조인이 되는 경우와 보호자와 같이 변호사 이외의 자가 보조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1) 변호사가 보조인이 되는 경우의 선임방식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가 보조인이 되는 변호사와 서명하고 변호사 자격을 표시한 '보조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조인의 선임은 원칙으로서 사건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건번호(사건명)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소년심판규칙 제14조)¹⁴⁾.

가정재판소가 검찰관의 관여하는 형태의 재판을 결정한 경우에 소년에게 변호사인 보조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는 변호사인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2조의3)¹⁵⁾. 이 경우 가정재판소는 지체 없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당해소년에게 보조인의

14) 보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인 보조인은 사건이 검찰관에게 송치되면 당연히 변호사로 보기 때문에 형사소송규칙 제27조와 조정하기 위해 보조인의 수를 3인으로 한 것이다. 변호사 이외의 보조인의 수에는 법률상 제한은 없다. 그러나 본 항과의 균형상 3인을 넘는 경우에는 3인 정도로 한정하게 된다. 그러나 보호사건의 보조인의 2중적인 성격으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3인 이상이 되는 부득이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15) (국선보조인) 제22조의3 가정재판소는 전조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소년에게 변호사인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변호사인 보조인을 부하여야 한다.
2. 가정재판소는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년에 관한 사건에서 전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혹은

선임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없거나 또는 보조인의 선임이 없을 경우에는 재판관은 즉시 당해 가정재판소의 소재지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보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당해 가정재판소의 소재지에 변호사가 없을 때 혹은 그 이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가정재판소의 관할구역 또는 그와 인접하는 다른 가정재판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소년보호규칙 제30조의3).

(2) 변호사 이외의 자가 보조인이 되는 경우의 선임방식

변호사 이외의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와 보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서명을 하고, 소년과 보조인이 되려는 자와의 관계를 고용주 혹은 담임교사 등과 공동으로 기재한 ‘보조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에 보조인선임자 명의의 ‘보조인선임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 이외의 자로서 보조인이 되려는 자는 법률적 지식 및 경험뿐만 아니라 소년의 보호, 교육에 경험이 있는 등 소년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경험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보조인으로 신청한 자의 인격, 식견, 소년과의 관계, 사건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특별히 보조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년에 대해 전조 제1항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소년변호사인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 및 보호자의 유무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소년심판절차에서 변호사인 보조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인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재판소가 부하는 보조인은 최고재판소규칙의 규정에 의해 선임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보조인은 여비, 일당, 숙박료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国選付添人)

第二十二條の三 家庭裁判所は、前條第一項の決定をした場合において、少年に弁護士である付添人がないときは、弁護士である付添人を付きなければならない。

2. 家庭裁判所は、第三條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少年に係る事件であつて前條第一項に規定する罪のもの又は第三條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少年に係る事件であつて前條第一項に規定する罪に係る刑罰法令に触れるものについて、第十七條第一項第二号の措置がとられており、かつ、少年に弁護士である付添人がない場合において、事案の内容、保護者の有無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審判の手續に弁護士である付添人が関与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弁護士である付添人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家庭裁判所が付すべき付添人は、最高裁判所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選任するものとする。
4. 前項(第二十二條の五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付添人は、旅費、日当、宿泊料及び報酬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¹⁶⁾. 이에 보조인으로서 부적당한 사정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14조). 보조인의 선임여부의 결정 및 허가 취소에 대한 결정은 보조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선임허가서에 기재하고 재판관이 날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고지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다.

(3) 보호자가 보조인이 되는 경우의 선임방식

보호자가 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년과의 관계를 기재한 '보조인이 되는 것에 대한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가정재판소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등은 변호사 이외의 자가 보조인이 되는 경우와 동일하다.

2) 선임의 효력

보조인선임의 효력은 원칙으로서 선임된 당해사건에 대해서만 미치는 사건단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소년의 다른 사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국선보조인(国選付添人)제도

가. 국선변호인과의 구별

국선보조인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조력하는 국선변호인과는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 대상소년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선변호인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차이는 아래 <표 2-1>, <표 2-2>와 같다.¹⁷⁾

16) 보조인으로 선임되는 자의 자격에는 제한은 없으나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년보호 및 교육에 경험이 있는 자, 그 외의 소년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17) <http://law.e-gov.go.jp>

〈표 2-1〉 국선변호·국선보조인 제도

수사단계	가정법원 사건 계류	검찰송치 후 공소제기 전	공소제기후
피의자 국선변호인	보조인/국선보조인 ① 참여한 검찰의 결정에 의함 ② 가정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함 ③ 심판절차에 방청이 허락된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함	피의자 국선변호인	피고인 국선변호인

출처: <http://law.e-gov.go.jp>

〈표 2-2〉 국선변호·국선보조 대상사건

		대상사건	기타 요구사항
피의자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37조의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①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 ② 피의자가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③ 피의자의 청구가 있는 때
국선 보조인 제도	검찰 참여결정 (소년법 제22조의3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 ① 고의에 의한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② ①외에도 사형, 무기 또는 단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① 가정법원이 소년심판절차에 검사 를 참여시키는 결정을 한 때 ②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보 조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재량 (소년법 제22조의3 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촉법소년 ① 고의에 의한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 ② ①외에도 사형, 무기 또는 단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① 소년감별소에 송치되어 관호초치 대상인 때 ②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보 조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을 때 ③ 가정법원이 사건의 내용, 보호자 의 유무,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심 판절차에서 변호인이 보조인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
	피해자 등의 의사 (소년법 제22조의5 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촉법소년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생명에 대한 심 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한다) ① 고의에 의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사 상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 형법 제211조의 범죄	① 가정법원이 피해자 등에 대해 심 판에 대한 방청을 허락한 때 ②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보 조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을 때
피고인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36조, 제37조)		제한 없음	제36조의 경우 ①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없을 때 ②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제37조의 경우 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등 법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출처: <http://law.e-gov.go.jp>

나. 국선보조인제도의 연혁 및 운영상황

1) 국선보조인제도의 연혁¹⁸⁾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소년에 대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년을 보조하게 하는 제도를 ‘국선보조인제도’라고 한다. 그동안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소년 감별소에 수용되어 신체적으로 구속된 상태의 소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9년 1월 국선보조인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온 결과 2014년 4월 소년법이 개정되어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건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선보조인제도는 2000년 개정소년법에 신설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행 사실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 결과 본 제도의 활용실적은 연간 10건 이하로 매우 저조하였다. 이후 2007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검찰의 관여 유무에 관계없이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량에 의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개정소년법에도 국선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사건을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아래 <표 2-3>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선보조인이 선임되는 수는 연간 300명에서 50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소년감별소에 관호초치로 수용되는 소년은 연간 약 1만명 이상이었으므로, 국선보조인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2009년 5월 21일 이후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대 적용되게 되었고, 대상범죄도 절도와 상해 등의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한 국선보조인제도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보다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각 지방의 변호사협회들이 소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소년법이 개정되어 국선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즉,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와 동일하게 그 대상범죄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18) JFBA 日本弁護士連合会 홈페이지(<http://www.nichibenren.or.jp>)

징역·금고의 죄에 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소년감별소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의 약 80%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선보조인제도의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받았다.

〈표 2-3〉 소년보호사건 변호사보조인 선임수·원조보조인 이용건수의 추이

	관호조치결정수	변호사보조인선임수	국선보조인선임수	보호자 원조 이용건수
1990		1,872		357
1991		1,967		389
1992		2,154		438
1993		2,270		531
1994		2,074		553
1995		2,116		677
1996		2,477		768
1997		2,968		973
1998		3,131		1,102
1999		3,149		1,274
2000		3,580		1,726
2001	17,803	4,068	3	2,429
2002	17,721	4,347	4	2,695
2003	17,818	4,584	9	2,929
2004	16,736	4,135	1	2,970
2005	15,476	4,358	5	3,593
2006	14,124	4,233	3	3,653
2007	12,391	4,149	47	3,744
2008	11,527	4,765	451	4,739
2009	11,241	6,137	512	6,912
2010	10,639	7,248	342	7,867
2011	10,186	8,055	376	8,742
2012	10,048	8,500	319	8,911

출처: 사법통계연부 및 (재)법률부조협회 사법보고서/일본사법지원센터의 보고 작성

2)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보조인제도 운영상황¹⁹⁾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국선보조인제도의 확대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소

19) JFBA 日本弁護士連合会 홈페이지(<http://www.nichibenren.or.jp>)

년에 대한 조력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선보조인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의 소년에 대해서도 보조인을 선임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수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국선보조인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를 행한 소년이 경제적 곤란 등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전국의 변호사가 부담하는 특별회비를 보조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변호사협회가 보조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변호사의 수를 증원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단계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소년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변호사가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변호사협회에서는 ‘당번보조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제도는 소년감별소에 수용된 소년에 대한 변호의 의뢰가 있는 경우, 1회 무료로 변호사가 면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의자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소년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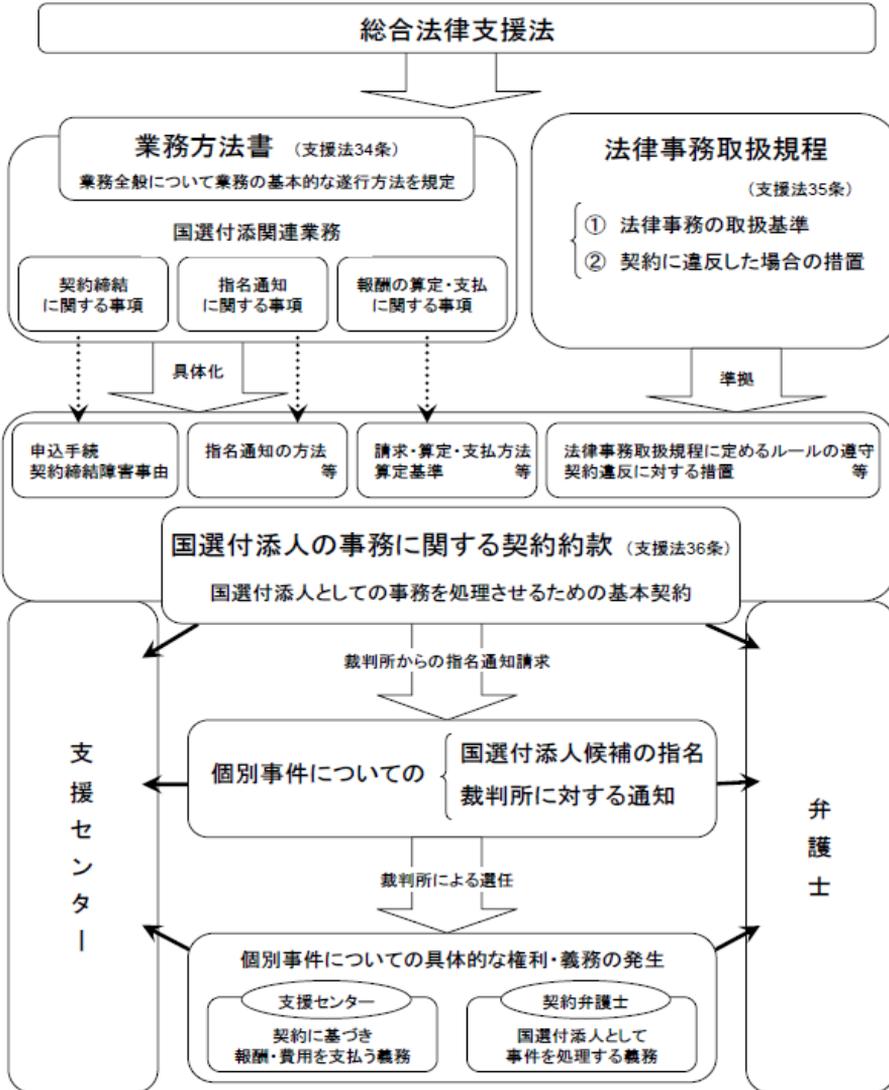
다. 국선보조관련업무에 관한 설명(国選付添関連業務の解説)²⁰⁾

일본에서는 국선보조인의 지명, 통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国選付添関連業務の解説’(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다. 본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규칙의 전체 구조는 아래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종합법률지원법을 중심으로 그 하위에 업무방법서, 법률사무취급규정들을 두고, 그 하위에 국선보조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약관에 따라 개별사건별로 국선보조인 지명과 법원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 근거해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20) 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法テラス) (<http://www.houterasu.or.jp>)

【表 1】 諸規則全体の構造



[그림 2-1] 일본 국선보조인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도 (<http://www.houterasu.or.jp>)

1) 국선보조인의 선임

본 규칙 제2조에는 계약약관과 개별사건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의하면 국선보조인의 계약약관을 계약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사법지원센

터²¹⁾(이하 ‘센터’라고 한다)에서 지명통지를 하면 법원에서 통지된 자 중에서 국선보조인으로 선임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국선보조인 계약약관(=계약) ⇨ 센터의 국선보조인 후보에 대한 지명통보 ⇨ 재판소의 국선보조인 선임 ⇨ 선임된 보조인에게 개별사건에서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발생

본 규칙 제3조는 국선보조인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선보조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그 소속 변호사협회에 대응하는 센터의 지방사무소에 계약신청서 및 소속변호사협회가 발행한 회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혹은 피해자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는 회원등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본 규칙에 의한 계약관계는 국선보조인 이외의 법률사무에 관한 계약, 예를 들어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계약,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사선변호인 혹은 사선보조인 선임에 관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센터가 변호사로부터 국선보조인 신청을 접수 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허락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센터가 지방 사무소, 법원 등으로부터 국선보조인 후보에 대한 지명 통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보조인 계약이 체결된 변호사 중에서 후보를 지명하여 법원 등에게 통지한다. 지명 통지의 방법으로는 작성된 국선보조인 명단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보조인에게 의사를 타진한 후 해당 보조인이 승낙을 한 경우 법원 등에 후보로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규칙 제6조).

규칙 제9조에는 선임된 국선보조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정직, 감봉, 주의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1) 일본 사법 지원 센터는 국선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선보조인 후보 지명 및 법원에 명단을 통지하며, 국선보조인에 대한 보수·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종합 법률 지원법 제30조 제1항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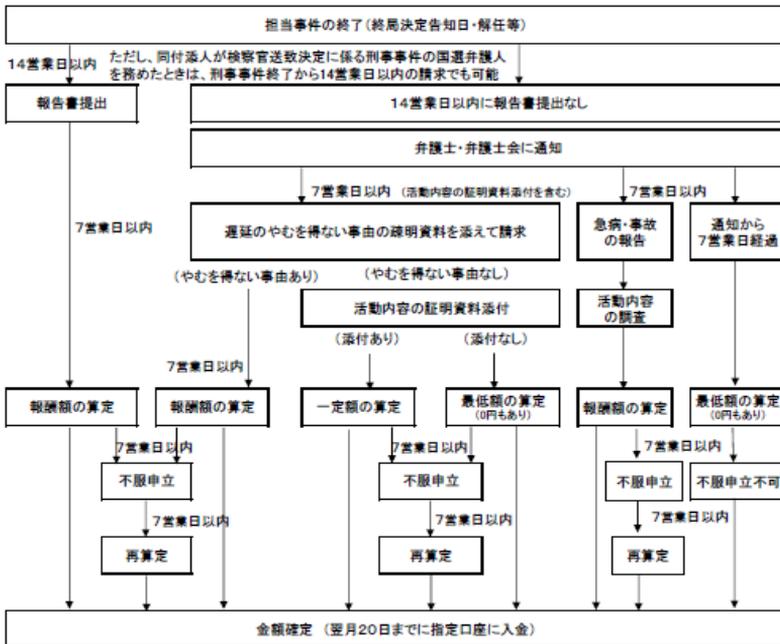
2) 사건의 종료와 보수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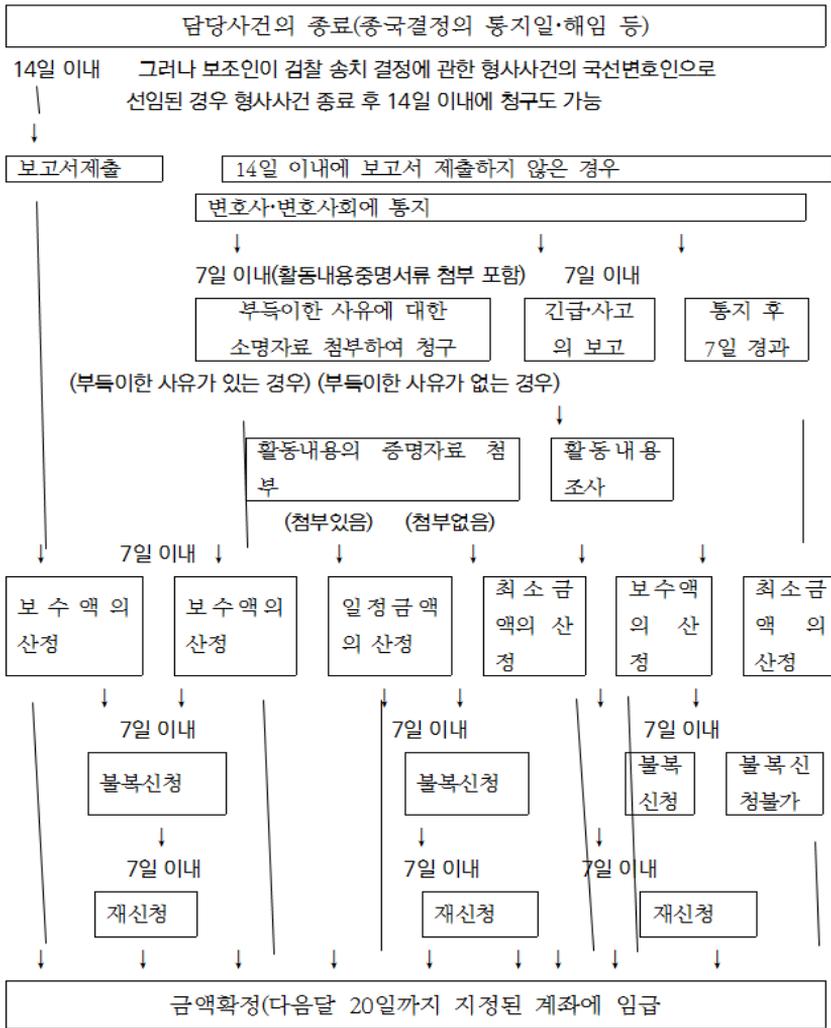
일본의 경우 국선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소년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는 사건의 종결 이후 그 보수와 비용에 대해서도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여 국선보조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규칙 제7조 이하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

국선보조인에 대한 보수 및 비용은 계약약관에 별도로 정한다. 보수 및 비용은 가능한 한 객관적 지표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선보조인은 사건 종료일로부터 14일(토, 일, 공휴일, 1월 2일, 같은 달 3일 및 12월 2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의 날짜를 포함) 이내에 센터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수 및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 받은 센터는 보고서를 참작하여 보수 및 비용을 산정하며, 책정된 보수 및 비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22) [그림 2-2] 참조, [그림 2-2]의 원본(<http://www.houterasu.or.jp>)은 다음과 같다.

【表 3】 事件の終了から報酬及び費用の支払までの流れ





[그림 2-2] 사건종료와 보수 및 비용의 지불 (*원출처: <http://www.houterasu.or.jp>)

이러한 경우 센터는 비용 등에 대해 재산정을 실시한다. 센터는 비용 등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국선보조인이 제출한 보고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선보조인은 조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해당 변호사가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가 해당 변호사 혹은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에 보고서 제출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변호사

는 7일 이내에 소명자료와 함께 비용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지연에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약관에 규정된 최소의 보수 및 비용이 책정된다(규칙 제7조).

보수와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선보조인이 담당하게 된 사건의 경중, 사건의 해결을 위한 노력, 사건해결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규칙 제8조는 국선보조인의 보수 및 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검찰이 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원거리면회 가산, 화해의 성립 등 특별성과 등에 대해 추가로 보상하는 항목을 두어 국선보조인이 소년심판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소년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상소년의 환경을 개선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추가보상을 함으로써 형식적인 변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상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념이 보수 및 비용 사정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래 <표 2-4>는 국선보조인에 대한 개략적인 보상기준이다. 이러한 보상기준에 따라 국선보조인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수 및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보장하고 있다.

〈표 2-4〉 가정재판소에서 선임한 국선보조인에 대한 보상기준(개요)

(* 원출처: <http://www.houterasu.or.jp>)

			검찰관여 없는 사건				검찰참여사건				
			단독사건		재정합의사건						
통상 보수	기초보수		9만엔		9만엔		9만엔				
	계속감산(피의자에서 계속)		-10,000엔								
	심리 가산	실질 심리 기일	심판시간	제1회기일	제2회이후	제1회기일	제2회이후	제1회기일	제2회 이후		
			~45분	0	6,400	0	7,500	0	7,900		
			45분~1.5시간	6,400	9,600	7,500	12,300	7,900	13,200		
			1.5~2.5시간	9,600	16,800	12,300	23,200	13,200	25,300		
			2.5~3.5시간	16,800	25,900	23,200	36,800	25,300	40,400		
			3.5~4.5시간	25,900	37,200	36,800	53,600	40,400	59,000		
			4.5~5.5시간	37,200	52,000	53,600	74,700	59,000	82,200		
	5.5시간~	52,000	61,100	74,700	88,300	82,200	97,400				
진행협의등		7,200엔		8,000엔		8,500엔					
종국결정기일		3,000엔									
시험관찰			30,000엔								
가산 보수	원거리 면회 등 가산		4,000엔								
	특별 가산	특별안건 가산	통상보수의 50%								
		특별 성과 가산	비행사실 없음	통상보수의 100%(상한 50만엔)							
			화해계약 등	전체손해의 50%이상의 손해배상				10,000엔			
	전체손해의 실질적 손해배상				20,000엔						
	전체손해에 대한 합의성립				30000엔						
환경조정 가산			30,000엔								
항고신청서 가산			10,000엔								
비용	기록등사비용		원칙 200매이상 1매 20엔								
	원거리면회 등 교통비		실비 혹은 직선거리킬로수 × 정액								
	출장여비·일당·숙박료		실비 혹은 직선거리킬로수 × 정액								
	통역인비용		청구금액(단 기준액의 범위)								
	심판준비비용		3만엔을 상한으로 하는 실비								

제3절 독일의 제도

1. 소년사법제도 개요

독일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제1조 제1항은 소년법원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를 행한 소년(Jugend)과,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범죄를 행한 청년(Herwachsende)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원법은 범죄를 행하지 않은 우범소년과 14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하고 14세 이상의 소년 및 청년이 범죄를 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인 것이다. 또한 독일의 소년사법절차는 소년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소년법원에 의해 처리되는 단일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소년사건처리절차는 소년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를 행한 소년/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특별법이다. 따라서 독일의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제도이다. 다만,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이 피의자인 소년에게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조인은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으나, 공판과정에서는 변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이에 이하에서는 보조인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보조인의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보조인(Beistand) 제도

가. 보조인의 선임

소년법원법 제(69조²³⁾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에 판사는 소년사건절차의

23) JGG § 69 Beistand

- (1) Der Vorsitzende kann dem Beschuldigten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einen Beistand bestellen, wenn kein Fall der notwendigen Verteidigung vorliegt.
- (2) Der Erziehungsberechtigte und der gesetzliche Vertreter dürfen nicht zum Beistand bestellt werden, wenn hierdurch ein Nachteil für die Erziehung zu erwarten wäre.
- (3) Dem Beistand kann Akteneinsicht gewährt werden. Im übrigen hat er in der Hauptverhandlung die Rechte eines Verteidigers. Zu einer Vertretung des Angeklagten ist er nicht befugt.

모든 단계에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부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양육권자와 법정대리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인에 대한 규정은 소년법원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소년에게만 적용되고 청년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 보조인으로는 친족, 동일한 지역의 연장자인 친구, 지인, 변호사, 선생님, 트레이너 등이 선임될 수 있다. 여기서 친족, 친구, 지인은 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두려움을 없애 줄 수 있고 진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친분관계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국(Jugendamt)에 종사하는 자는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는 소년국 종사자의 소년법원보조(Jungedgerichtshilfe)로서의 역할과 이해관계가 보조인의 역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²⁴⁾ 소년과 보호자는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한 소년사법절차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보조인 선임을 요청하여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소년과 보호자의 보조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조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는 보조인의 여러 상황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교육에 부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

나. 권한과 의무

소년법원법 제69조에 의해 선임된 보조인은 대상소년에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년사법절차에서 조력자로서 소년을 원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즉 보조인은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의 보호·감독자(Betreuung)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소년에게 조언, 위로 그리고 교육적 방안들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보조인은 복지적 임무 이외에 소년사법절차에서 변호사로서의 지위도 수행한다.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수행하기 위해 소년법원법 제69조 제3항에서는 보조인에게 기록열람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판절차에서 변호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규정된 보조인²⁵⁾과는 달리 소년사법절차에서

24) <https://www.uni-due.de/~gvo400/materialien/JGG/JGG.htm>

25)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규정된 보조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보조자로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년에 대한 변호사의 권리를 가진다.²⁶⁾ 다만, 형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은 사법적인 조연자의 역할만 하는 반면에 소년법원법상의 보조인은 개별 사안에서 복지적 임무도 수행하며 소년에게 조언, 격려 및 교육적 대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보조인은 소송절차에서 소송참여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조인의 역할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보조인에게는 증거수집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을 대리할 수도 없고, 보조인의 역할이 소년복지지원법(JGH)상의 대리인(Vertreter)의 역할 혹은 보호관찰관(Bewährungshelfer)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²⁷⁾ 또한 소년담당 변호사 혹은 양육권자가 보조인의 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요적 변호사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보조인을 선임하는 것은 의무재량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이 보조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항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양육권자가 보조인 선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대상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²⁸⁾

독일의 경우 보조인제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국선보조인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및 일본과 비교할 때 독일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인제도로 소년을 원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일은 국선변호인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선보조인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소년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3. 변호인(Verteidiger) 제도

소년법원법은 소년사건에서 특별히 전문화된 변호인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항은 형사피의자는 심판의 각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²⁹⁾, 본 규정에 따라 소년과 청년인 형사피의자

26) Ulrich Eisenberg, Jugendgerichtsgesetz, 16. Auflage(2013), C.H.Beck, §69 Rn. 3

27) Eisenberg, JGG, §69 Rn. 4

28) <http://lexic.de/index.php/g-grundlagen/verfahrensbeteiligte/beistand>

29) § 137 Recht des Beschuldigten auf Hinzuziehung eines Verteidigers

(1) Der Beschuldigte kann sich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des Beistandes eines

도 소년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2항과 소년법원법 제67조 제3항³⁰⁾에 의해 법정대리인 혹은 양육권자는 소년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³¹⁾ 이에 반해 소년판사와 소년검사에 대해서는 소년법원법 제37조에 “소년판사(Jugendrichter)와 소년검사(Jugendstaatsanwalt)는 교육적 능력이 있고 소년교육을 경험한 자이어야 한다.”³²⁾라는 규정을 두어 교육적 능력의 충족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심판이 독립된 소년법원에서 소년판사와 소년검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다. 그러나 소년사건의 변호사에게도 소년판사 및 소년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여할 것이 요구되므로 소년변호사에게도 소년판사, 소년검사와 동일한 정도의 법률적 지식, 능력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 변호인의 선임

소년사법절차에서의 변호인은 소년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권자 혹은 법정 대리인도 소년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년법원법 제68조 및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인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소년사건에서의 변호인에게는 일반 형사절차에서의 변호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나. 소년변호사의 자격 및 역할

소년법원법 제정 당시의 논의에서는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는 대상소년을 위해 가장 적절한 처우를 찾아내야 한다는 임무가 요구되었다. 이에 소년사건을

Verteidigers bedienen.

(2) Hat der Beschuldigte einen gesetzlichen Vertreter, so kann auch dieser selbständig einen Verteidiger wählen.

30) § 67 Stellung des Erziehungsberechtigten und des gesetzlichen Vertreters

(3) Die Rechte des gesetzlichen Vertreters zur Wahl eines Verteidigers und zur Einlegung von Rechtsbehelfen stehen auch dem Erziehungsberechtigten zu.

31) Streng, Franz, Jugendstrafrecht, C.F.Müller Verlag, 2003, S. 69

32) § 37 Auswahl der Jugendrichter und Jugendstaatsanwälte

Die Richter bei den Jugendgerichten und die Jugendstaatsanwälte sollen erzieherisch befähigt und in der Jugenderziehung erfahren sein.

담당하는 변호사에게는 일반형사절차에서 변호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무죄 혹은 감경처벌’에 대한 변론이 아닌,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소년의 교육적 발전을 위해 변론할 것이 요구되었다.³³⁾ 이에 1943년의 소년법원법은 변호인에게 ‘교육자로서의 능력’이 요구된다는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동 법은 제42조 제2항에 “변호인은 교육능력을 가지고, 소년의 교육 및 지도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에게 교육적 자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53년 소년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1953년 개정소년법원법은 변호사에 대한 교육적 자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동 법 제68조에 관한 준칙 제1항에 “제68조에 의해 가능한 한 교육능력이 있고 소년에 대한 교육의 경험을 가진 자가 변호인으로 선임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은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 개정된 소년법원법에서는 이러한 준칙의 내용도 삭제되었다.

법률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소년법원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말부터는 소년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 및 능력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소년사건에서 필요적 변호제도가 중요시되면서 소년변호사에 대한 능력 및 역할도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W. Beulke는 소년형법이 성인형법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동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년사법의 복합적인 특성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년 변호인도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 Köpcke-Duttler도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은 소년의 생활세계를 이해하고, 소년에 대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소년으로 하여금 타인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³⁴⁾ 이러한 주장과 함께 소년법원법에 소년변호사에 대해서는 소년판사, 소년검사와 동일한 정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는 소년법원법의 제정당시의 규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소년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와 대상 소년 사이에 기본적인 이해관계의 형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소년과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소년을

33) Albrecht, Peter-Alexis, Jugendstrafrecht, C.H.Beck München, 2000, S. 339

34) Arnord Köpcke-Duttler, Besitz die Verteidigung im Jugendstrafverfahren eine Erziehungsaufgabe?, DVJJ-Journal 2/2001, S. 133 ff.

둘러싼 여러 상황을 조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소송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변호사는 대상 소년이 교육원칙에 근거한 여러 처우 중에서 소년에게 가장 적절하고 부담이 적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³⁵⁾

다. 필요적 변호제도

소년법원법 제68조³⁶⁾ 및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³⁷⁾은 다음의 경우를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5) Meier/Rössner/Schöch, Jugendstrafrecht, C.H.Beck München, 2003, S. 270 ff.

36) § 68 Notwendige Verteidigung

Der Vorsitzende bestellt dem Beschuldigten einen Verteidiger, wenn

1. einem Erwachsenen ein Verteidiger zu bestellen wäre,
2. dem Erziehungsberechtigten und dem gesetzlichen Vertreter ihre Rechte nach diesem Gesetz entzogen sind,
3. der Erziehungsberechtigte und der gesetzliche Vertreter nach § 51 Abs. 2 von der Verhandlung ausgeschlossen worden sind und die Beeinträchtigung in der Wahrnehmung ihrer Rechte durch eine nachträgliche Unterrichtung (§ 51 Abs. 4 Satz 2) nicht hinreichend ausgeglichen werden kann,
4. zur Vorbereitung eines Gutachtens über den Entwicklungsstand des Beschuldigten (§ 73) seine Unterbringung in einer Anstalt in Frage kommt oder
5. gegen ihn Untersuchungshaft oder einstweilige Unterbringung gemäß § 126a der Strafprozeßordnung vollstreckt wird, solange er das achtzehnte Lebensjahr nicht vollendet hat; der Verteidiger wird unverzüglich bestellt.

37) § 140 Notwendige Verteidigung

(1) Die Mitwirkung eines Verteidigers ist notwendig, wenn

1. die Hauptverhandlung im ersten Rechtszug vor dem Oberlandesgericht oder dem Landgericht stattfindet;
2. dem Beschuldigten ein Verbrechen zur Last gelegt wird;
3. das Verfahren zu einem Berufsverbot führen kann;
4. gegen einen Beschuldigten Untersuchungshaft nach den §§ 112, 112a oder einstweilige Unterbringung nach § 126a oder § 275a Absatz 6 vollstreckt wird;
5. der Beschuldigte sich mindestens drei Monate auf Grund richterlicher Anordnung oder mit richterlicher Genehmigung in einer Anstalt befunden hat und nicht mindestens zwei Wochen vor Beginn der Hauptverhandlung entlassen wird;
6. zur Vorbereitung eines Gutachtens über den psychischen Zustand des Beschuldigten seine Unterbringung nach § 81 in Frage kommt;
7. ein Sicherungsverfahren durchgeführt wird;
8. der bisherige Verteidiger durch eine Entscheidung von der Mitwirkung in dem Verfahren ausgeschlossen ist;
9. dem Verletzten nach den §§ 397a und 406h Absatz 3 und 4 ein Rechtsanwalt beigeordnet worden ist.

- 제1심이 주법원 혹은 고등법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 피고인이 중범죄(Verbrechen)의 죄책을 지는 경우,
- 피고인이 이미 3개월 동안 (예를 들면 조사구금시설과 같이)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
- 보안절차(Sicherungsverfahren ; 형사소송법 제413조 이하)가 진행된 경우,
- 기존의 변호인이 심판절차에서 배제된 경우,
- 법정대리인과 양육권자가 소년법원법 제67조 제4항에 의해 심판절차참여에서 배제된 경우,
- 피고인의 정신상태 혹은 성장상태에 대한 감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정신병원 혹은 그 밖의 시설에의 입원이 고려되는 경우,
- 양육권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 피고인의 성장상태에 관한 감정의 준비를 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
-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이나 일시적 체포 (vorläufige Festnahme)가 집행되는 경우 등이다.

필요적 변호제도의 대상 사건으로 사건의 중함이나 소년의 연령이라는 형식적인 요건과 미결구금에 의한 자유박탈이라는 실질적인 요건이 추가되면서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소년심판 이전의 절차단계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을 확장하는 경향은 1980년대의 입법제안에서 이미 나타났으며, 그 경향은 최근에 더욱 강해지고 있다. 「독일 소년법원과 소년법원보조 연합 (Deutsche Vereinigung für Jugendgerichte und Jugendgerichtshöfen : DVJJ)」이 작성한 ‘쾰른규칙(Kölner Richtlinien)’을 살펴보면, 미결구금이나 시설수용의 집행시점이 아니라 그것을 명한 시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소년참심법원에서 심판이 행해지는 사건이나 소년형(Jugendstrafe)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³⁸⁾

38) Meier/Rössner/Schöch, Jugendstrafrecht, C.H.Beck München, 2003, S. 271

제4절 미국의 제도

1.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소년변호의 필요성

미국의 소년사법제도(Juvenile Justice System)는 검거되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youth)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소년사법제도는 경찰, 법원 및 교정국의 참여를 통해 소년범죄(delinquent behavior)에 개입한다. 소년과 그들의 부모 및 보호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법원, 구금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절차에 접하게 된다. 소년사법제도가 성인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기는 하지만 성인제도와는 달리 소년사법제도의 운영에는 소년범죄행위에 대한 조기개입이 성인이 되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들은 소년법원절차(juvenile court proceedings)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를 포함하여 많은 것을 잃게 되며 범죄(delinquent)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소년법원기록(juvenile court record)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변호인은 이러한 소년들이 적법절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목소리(voice)'를 제공한다. 변호인들은 또한 소년에게 복잡한 소년법원절차에 대해 설명해주며, 특히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소년에 대한 공정한 처우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한다.

미 대법원은 1967년 기념비적인 판결인 *In Re Gault*; 387 U.S. 1³⁹⁾에서, 소년은 소년형사절차에서 변호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성인에게 제공되는 적법절차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에 다수의 주(state)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소년을 위하여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자력(빈곤)소년 변호제도(Indigent defense systems)'를 마련하였다. 무자력(빈곤)변호제도는 국선변호인(public defender) 뿐 아니라 임명변호인 프로그램(assigned

39) *In re Gault*, 387 U.S. 1(1967) : 이 사건은 15세 소년이 이웃 여성에게 음란성 전화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국친 사상(parens patriae)에 기초한 사법절차에 따라 변호인 없이 소년법원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고 20세가 될 때까지 소년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및 처분의 비례성이 문제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이 저질렀다면 5달러 내지 50달러의 벌금 또는 2월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범죄였다(양건수, 미국 소년 사법의 구조적 변화,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2012, 474면 주68) 재인용).

counsel programs) 및 계약변호인(contract attorneys)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제도로 운용된다.

소년범죄사건으로 소년법원에서 심판받는 소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① 소년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소년은 무자력(빈곤)변호제도에 의한 공적 자금(a publicly funded)을 통해 다양한 변호의 유형-국선변호인, 임명변호인(appointed counsel), 계약변호인- 중 어느 하나의 변호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소년은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waive)할 수 있으며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⁴⁰⁾

2. 국가소년변호인센터(National Juvenile Defender Center; NJDC)

가. NJDC의 역할

NJDC는 소년변호의 우수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소년들을 위해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소년을 보호·변론하는 업무에 전념하는 비영리기관이다. NJDC는 커뮤니티 구축(community building)과 훈련(training) 및 정책 개선을 통해 사법제도 하에서 권리가 박탈된 소년(the deprivation of young people's rights)에게 초점을 맞춘 소년변호문제(juvenile defense issues)와 관련하여 국가리더십을 제공한다. 소년들을 위한 긍정적인 사건(재판)결과와 의미 있는 기회들을 창출하기 위해, NJDC는 소년과 그 가족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범위도 전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NJDC는 또한 소년들의 권리 보호-특히 변호권-를 포함하여 소년법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폭 넓게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⁴¹⁾

1) 커뮤니티 구축(Community Building)

현신적인 소년(담당)변호인(juvenile defenders)들에게 강력한 국가공동체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한 공동체(커뮤니티)의 구축 및 지원은 NJDC의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이다.

40) Wachter, Andrew, Indefensible: The Lack of Juvenile Defense Data, JJGPS StateScan,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5. 7, p.1.

41) <http://njdc.info/>

범죄(delinquent behavior)혐의를 받는 무자력(빈곤) 소년(indigent youth)을 조력하는 변호인들은 종종 지방 및 벽지(rural or remote areas)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는 대형 국선변호인사무소(large public defender offices)의 소년(담당)변호인들은 소년의 특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기 어려우며, 소년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성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년사건에 대한 변호가 '틈새변호(niche practice)'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에 NJDC는 소년변호인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훈련), 감독 및 멘토링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소년변호인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NJDC는 국가 소년(담당)변호인 공동체를 확장 및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매진하고 있다.⁴²⁾

- 전문적인 소년변호훈련(교육)
- 리더십 개발
- 리스트서브(특정그룹 전원에게 메시지를 전자우편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 전략적인 정책의 협력

2) 훈련/교육(Training)

NJDC는 전국의 변호사들-요청을 한 경우나 기타 소년사법전문가들-을 위해 다양하고 폭 넓은 주제들에 관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NJDC의 전문발표자(expert presenters)는 크고 작은 그룹들을 위한 상호적이고 실무 중심의 훈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금변호(detention advocacy)나 사법권(competency) 및 청소년 발달(adolescent development)과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하여 강도 높은 소그룹 과정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훈련프로그램(Training programs)은 변호인들의 요구에 따라 몇 시간부터 수일(several days)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은 다양하다. 특히 주 및 지역 단위의 훈련(State and Local Training)을 운영하고 있는데, 훈련은 소년을 위하여 소년사법제도의 우수성을 보장하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인, 법원 관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여부에 관계없이 NJDC는 소년변호와 관련한 사안 및 실무수행에 관한 양질의 트레이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42) <http://njdc.info/our-work/community-building/>

하고 있다. NJDC는 참여자와 주최자 모두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훈련과정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다음은 각 지역에 맞게 조정된 훈련과정의 샘플이다.⁴³⁾

- JTIP (Juvenile Training Immersion Program) : 소년(변호)훈련 집중프로그램으로 JTIP는 높은 수준의 의미 있는 소년변호를 위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활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소년변호훈련에서 ‘황금 기준(gold standard; 가장 우수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JTIP는 모든 사법 권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NJDC와 JTIP 공인훈련교육자들은 현지 지역 참여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40개의 레슨 커리큘럼(40-lesson curriculum)을 만들고, 이를 소년변호훈련에서 사용하기 위해 자치주 및 현지 지역 변호인단체들, 변호사협회,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JTIP 커리큘럼은 각각의 수업이 개별 관할권과 직접 관련지을 수 있도록 주요한 자치주 및 지역 법령(local statutes), 법원규칙, 판례를 쉽게 적용하고 일반법 및 재판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훈련/교육프로그램은 소년변호에만 특화된 것으로, CLE 프로그램인 단과교육부터 강도 높은 며칠간의 교육까지 구성되어 있다.

나. 소년변호기준(Juvenile Defense Standards)의 정립

1) 소년변호기준 정립의 배경

소년변호에 있어서 전문화 및 양질의 훈련/교육은 다수의 사법 이해관계자들 간에 만연하는 ‘소년법원(juvenile court)은 중요도가 덜 하다거나 훈련(교육)기관은 신입 변호사들(young lawyers)이 성인을 변호하기 전에 소년들의 이면에 대해 배우는(learn) 곳’이라는 오해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활동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소년변호 개혁자들(juvenile defense reformers)은 해당(소년 변호) 분야의 지도 및 지원을 위해 소년에 대한 특정 실무기준(juvenile-specific practice standards)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43) <http://njdc.info/our-work/training/>

NJDC는 주 및 지역 관할로 하여금 지침서로써 ‘국가소년변호기준(National Juvenile Defense Standards: NJDS)’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NJDC는 또한 관할지역들이 주 정부 기반의 기준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술적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소년사건 변호인들을 위한 기준(표준)은 효율적인 소년변호를 위한 해결방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소년특정 실무기준’은 판사, 검사 및 보호관찰관을 위해서도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는 각각의 실무분야에서의 관련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년들 역시 소년사법에 대한 지도·지원을 위한 실무상 전문화된 기준을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소년사법분야를 전문화 및 발전시키기 것은 대상소년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을 주게 될 것이므로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제도의 발전 역시 소년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2) 국가소년변호기준(National Juvenile Defense Standards)

2015년 3월 15일, 조지아 주에서 발표한 이해성명서에서 미 법무부장관은 소년변호에 접근하는 방식에 관해 매우 명백한 입장을 취하였고, 소년변호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격을 변호인에게 요구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실제로 소년시기의 특성들은 그들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교육(훈련)과 경험 및 기술을 요구하게 한다”고 하였다. 소년변호에 있어 최고의 실무자로 향하는 길은 조지아 주의 이해성명 뿐만 아니라 소년법원(Delinquency Court)에서의 소년변호인의 역할에 관한 백서와 국가소년변호기준에서 제시된 적법절차원칙(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및 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들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은 지속적인 전문화훈련 및 정책발의를 통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이로써 소년변호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⁴⁴⁾

3) 국가소년변호기준(National Juvenile Defense Standards)⁴⁵⁾

국가소년변호기준은 10개 영역(PART)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준에서는 소년변호인의 역할과 관련한 윤리의무, 의뢰인이 진술한 이익에 대한 변호, 소년변호를 위한 전문교육요건, 변호의 범위, 소년변호인의 사건 및 기록관리의무, 이해충돌의 예방,

44) <http://njdc.info/our-work/juvenile-defense-standards>

45) National Juvenile Defense Standards, National Juvenile Defender Center, 2013.

공판출석(Stand Trial)시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소년변호인은 의뢰인의 비밀과 정보를 지키고, 의뢰인과의 정기적인 접견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준에는 의뢰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며 취약한 의뢰인(Vulnerable Clients)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 대한 이의제기, 구금학대(Custodial Mistreatment)에 대한 변호인의 조사의무가 포함되어 있다.⁴⁶⁾ 특히 각 형사절차의 단계에 따라 소년변호인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소년의 검거(Arrest)부터 최초절차(Initial Proceedings)에 이르기까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데, 소년변호인은 경찰조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비사법적 해결(Non-Adjudicatory Solutions)을 고려한 후, 가능하다면 그러한 해결을 주장하고, 최초신문(Initial Hearing) 이전에 의뢰인을 준비시키고, 타당한 근거에 따라 심리(Arraignment)절차를 준비하며, 재신문(Rehearing)과 구속결정(Detention Decision)에 대하여 항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⁷⁾ 다음으로 공판전(Pre-Trial)에 소년변호인은 증인진술과 의뢰인의 과거경력(Social History)을 확보하고, 증거개시를 요청하며, 의뢰인이 유죄답변(Plea)을 수용한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한다. 판결심문(Adjudicatory Hearings)과 공판, 처분 이후(After Disposition)의 각 절차 단계마다 소년변호인이 행해야 할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⁴⁸⁾

소년의뢰인이 일반(성인)형사사건으로 기소(Adult Prosecution)될 위험에 직면한 경우, 이를 담당할 변호인에게는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과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송절차(Transfer Proceedings)와 가능한 결과에 대해 통지하고, 의뢰인조사를 수행하면서 일반(성인)형사법원(Adult Court)으로 이송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항변할 것과 일반기소결정에 대한 의뢰인의 항소기회를 보전할 것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⁴⁹⁾

46) NJDS, PART I : Role of Juvenile Defense Counsel, p.18-33.

47) NJDS, PART II : Role of Juvenile Defense Counsel in the Attorney-Client Relationship, p.34-51.

48) NJDS, PART III : Role of Juvenile Defense Counsel from Arrest to Initial Proceedings, PART IV : Role of Juvenile Defense Counsel Pre-Trial, PART V : Role of Juvenile Defense Counsel at Adjudicatory Hearings and Trials, PART VI : Role of Juvenile Defense Counsel at Disposition Hearings, PART VII : Role of Juvenile Defense Counsel After Disposition, p.52-133.

4) 소년변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⁵⁰⁾

국가소년사법네트워크(National Juvenile Justice Network: NJJN)는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파트너로서 소년변호인 및 변호기관들에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년변호인들은 소년사건에서 적법절차 및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책수립에 필요한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소년변호기준은 특히 제도적 개선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1) 변호에 대한 조기접근의 보장(ensured early access to counsel): NJDS 10.2 Advocate for Early Access to Counsel

소년을 위한 변호인의 조기임명-1차 신문 이전을 의미-은 소년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몇몇의 관할권에서는 소년의 구금여부에 관한 시기를 결정할 최초신문 이후에 비로소 변호인을 선정하고 있다. 소년의 자유권(liberty interests)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신문에서 변호는 필수적이다. 이에 기준은 변호인들을 조기에 임명하는데 소극적인 현 제도의 결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이 같은 변화는 입법개선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법원제도 및 변호인사무소와의 협력에 의한 정책변화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2) 모든 소년을 위하여 무자력의 추정 확립(establish a presumption of indigence for all youth): NJDS 10.3 Advocate for Presumption of Indigence

소년은 그들의 부모나 친척들의 수입 및 자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 소년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부모나 친척들은 그들의 자산으로 소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소년은 그들 가족들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조사를 두려워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에 본 기준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선임에 대한 재정적 장애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변호인을 임명하여 소년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년의 재정상

49) NJDS, PART VIII : Role of Juvenile Defense Counsel When Client Faces Risk of Adult Prosecution, p.134-143.

50) National Juvenile Justice Network, six policy priorities for juvenile defense, May 2013, p.2-3.

황을 무자력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입법활동, 법원규칙 및 정책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해결책은 변호인임명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무자력 소년에게 균등하게 제공된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The Pennsylvania Supreme Court)은 이러한 무자력 소년의 변호를 위해 「소년법원절차규칙(the Rule of Juvenile Court Procedure) 151」을 “소년은 무자력으로 간주한다”고 개정하였다.⁵¹⁾

(3) 변호인에 대한 무효한 포기 방지(prevent invalid waiver of counsel): NJDS 10.4 Prevent Invalid Waiver of Counsel

변호인에게 최초면담을 받기도 전에 소년이 변호권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화 된 상황이다. 이에 여러 이유가 있다. 소년은 종종 그들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소년 스스로 불안함을 느끼거나 또는 판사, 소년의 부모, 검사로부터의 공공연한 압박에 의해-부담을 갖는다. 또한 소년은 유죄 인정(pleading guilty)과 같이 평생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없이 변호인과 의 상담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에 본 기준은 변호인들에게 “변호권을 포기하기 않는 보호장치를 지원,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자치주에서는 소년의 변호권 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⁵²⁾ 또한 일부 주에서는 소년으로 하여금 변호인의 조력권 포기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변호인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국가변호인제도와 관련한 각 자치주의 소년변호기준⁵³⁾

현재 소년담당 변호인에 대한 전문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전체 20개의 관할지역 중 국선변호인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주요 자치주의 각 가이드라인의

51) Interbranch Commission on Juvenile Justice, report, May, 2010.

52) National Juvenile Defense Standards (citing IOWA CODE ANN. § 232.11(2) (2006) (prohibiting waivers for youth under 16); TEX. FAM. CODE ANN. § 51.10(B) (Supp. 2006) (prohibiting waivers at specified hearings; WIS. STAT. ANN. § 938.23(1) (m)(a) (Supp. 2006) (prohibiting waivers for youth under 15); PA ST. JUV. CT. R. 152 (near absolute prohibition for all youth in juvenile court)).

53) <http://njdc.info/our-work/juvenile-defense-standards/> (Last Updated January 8, 2016)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코네티컷(Connecticut)주 : 소년변호 실무지침서(Performance Guidelines For Counsel In Juvenile Matters)

코네티컷 주의 ‘국선변호인서비스부서(The Division of Public Defender Services)’는 소년형사절차에서의 변호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소년사건의 변호(Counsel in Juvenile Matters)를 위한 수행지침서(Performance Guidelines)를 공표하였다. 이 권고지침서는 변호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수행하는 변호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 유죄담변협상(plea negotiations), 재판준비, 처분(disposition) 및 항소(appeal)를 포함한 여러 사안(쟁점)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⁵⁴⁾

1) 변호인의 역할(ROLE OF COUNSEL)

특히 소년범죄사건(juvenile matters)에서 처분이후(after disposition)의 변호인은 법원의 모든 명령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에 대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⁵⁵⁾ 의뢰인이 장애아동(impaired child)인 경우 변호인은 대체심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동이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아동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변호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아동의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절차를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아동 스스로 변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담당변호인은 소송후견인(guardian ad litem)과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⁵⁶⁾

2) 훈련 및 경험(TRAINING AND EXPERIENCE)

소년범죄, 아동복지(Child Welfare) 및 가정사건(family matters)에서의 변호인은

54) Performance Guidelines For Counsel In Juvenile Matters, State of Connecticut Division of Public Defender Services, 2016. 1. available at http://njdc.info/wp-content/uploads/2016/01/CT-ocpd-Juvenile_Delinquency-Performance_Standards_For_Counsel_In_Juvenile_Delinquency_Matters_FINAL_AS_APPROVED.pdf.

55) Connecticut Guidelines, GUIDELINE 1.6. 소년범죄사건에서의 변호인은 OCPD(Office of Chief Public Defender)의 Post Conviction Unit(유죄선고 후 관리부서)에서 적절한 위탁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보호관찰이나 인도(commitment)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적극적인 변호를 유지하도록 요구된다.

56) Connecticut Guidelines, GUIDELINE 1.7. 6). 아동전담 변호인은 아동에게 있어 최고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아동의 요구(wishes)를 대신하여 변호하며 이를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을 변호하기 위해서 최대 3일 동안의 사전변호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⁵⁷⁾ 신규 채용된 국선변호인들은 국선변호인 서비스부서의 소속변호인으로서 임명된 이후 최소 1년 동안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⁵⁸⁾

3) 소년범죄에서 변호인의 역할(ROLE OF DEFENSE COUNSEL IN JUVENILE MATTERS: DELINQUENCY)

사건의 특성 및 배경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변호인은 소년법원의 정식절차로부터 전환(다이버전)서비스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소년법원절차에서 비사법단계의 개입은 소년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다이버전의 실시를 위해 중요하다. 변호인은 소년절차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사안의 소년을 위하여 적절한 법적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속적부심이 소년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라면, 변호인은 “협약에 있어서의 관할권 충족, 구금장소의 적절성, 구금의 법적 기준에 대한 증거의 충분함, 그리고 법원 또는 구금장소 내 배치 등의 절차 미준수”에 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검토하여야 한다.⁵⁹⁾

4) 최초 의뢰인(소년)의 상담(INITIAL CLIENT INTERVIEWS)

변호인은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양질의 법적 변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리고 의뢰인에게 변호인의 주장과 사건절차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의뢰인과 면담하고 사안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특히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인은 소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57) Connecticut Guidelines, GUIDELINE 2.1. 4). 교육이수분야에는 청소년 및 아동 발달, 의 사결정과 관련하는 청소년 뇌발달, 아동의 진술과 관련하는 특수사안들, 교육적 사안 및 특수 교육, 가정폭력과 그것이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 존속감금의 영향, 청소년 및 성인약물남용 등이 있다.

58) Connecticut Guidelines, GUIDELINE 2.3. 1). 신규 변호인 훈련연수 프로그램은 국선변호인의 의무와 책임, 변호실무윤리, 기초형사연습 및 절차, 무자력(빈곤)변호에 관한 코네티컷 국선변호인 서비스부서의 보고서를 담당하는 OCPD 훈련연수부서에 의해 실시된다.

59) Connecticut Guidelines, GUIDELINE 3.1. 3)~7).

5) 공판 전 석방(PRETRIAL RELEASE)

의뢰인인 소년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은 소년과 함께 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재판 전에 석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분석·논의하고, 석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⁶⁰⁾ 변호인은 석방의 제시조건 또는 구금의 중지명령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부모, 보호자 또는 가족구성원과 접촉해야 한다. 소년이 송환되어 다시 구금된 경우 (remanded and ordered detained)에 변호인은 법원에 최단기간의 복귀를 요청해야 하고, 법정구류기간이 자동적으로 묵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호인은 자기부죄 (self incrimination)의 위험에 소년을 빠지게 할 수 있는 신문, 평가 및 기타 정신건강 검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⁶¹⁾

6) 처분심문(DISPOSITIONAL HEARING)

소년범죄절차의 처분단계에서의 최종적인 처분은 의뢰인의 개인적 요청에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은 소년이 동의한 계획을 주장해야 한다. 법원이 처분결정을 할 시점에 이른 경우, 변호인은 그 처분결정에 대해 특성, 의무 및 처분에 따른 결과를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소년에게 처분명령을 수용하고 이에 협력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7) 항소(APPEAL)

변호인은 소년의뢰인에게 항소권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며 의뢰인의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판 후 유죄판결과 징역의 부과 및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를 포함하는 사건에서, 항소는 의뢰인을 위해 진행된다. 만일 형사피고인이 항소권의 포기를 원한다면, 포기는 공판 전의 기록이나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그 결정이 자발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60) 변호인은 가족과 사회관계, 이민 신분, 학교 및 고용 기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의 참여, 전과나 비행기록, 의뢰인을 감독할 수 있는 친척이나 제3자, 합의의 요청에 대한 가능성과 이익, 그리고 변호인이 의뢰인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개인의 이름이나 기타 출처를 포함하여 의뢰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61) Connecticut Guidelines, GUIDELINE 3.4. 의뢰인이 송환된 경우, 변호인은 법원의 소년 구금시설직원에게 의뢰인의 의료, 정신의학, 또는 보안요청에 대해 알려야 하고, 법원이 그러한 특별한 요구들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합한 담당자에게 지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진술하여야 한다.⁶²⁾

나. 인디애나(Indiana)주: 무자력(빈곤)자 변호기준(Standards for Indigent Defense Services in Non-Capital cases)

인디애나 국선변호인위원회(Indiana Public Defender Commission)는 강력범죄가 아닌(Non-Capital) 사건에서 무자력(빈곤)자 변호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채택하였다. 소년형사사건(juvenile criminal cases)의 경우, 적격의 자치주들은 기준(Standards)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무자력자 형사변호비용을 위해 40%까지 상환(reimbursement) 받을 수 있다. 본 기준은 소년범죄(juvenile delinquency)의 변호를 위한 담당 건수의 한도 및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⁶³⁾

무자력(빈곤)자를 위한 형사변호서비스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은 현재 3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① 국선변호인 프로그램, ② 법원과 변호인 및 법무법인 간의 계약, ③ 임명변호인제도가 그것이다. 종합계획에는 공적 비용으로 변호인을 임명하는 데 있어 적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원칙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소년이 범죄자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대표변호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의 유형(정도)에 따라 형사 및 소년범죄실무의 활동경력(1년~3년)과 배심재판 및 소년재판에서의 대표 또는 공동변호의 사전경험(1건~3건)이 요구된다.⁶⁴⁾

62) Connecticut Guidelines, GUIDELINE 3.14. 1)~5). 항소가 항소부 또는 다른 국선변호인이나 다른 담당변호인에게로 이송되었다 할지라도, 변호인은 공판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

63) Standards For Indigent Defense Services in Non-Capital Cases, Indiana Public Defender Commission, June 19, 2013.

64) Indiana Standards, June 19, 2013. available at <http://njdc.info/wp-content/uploads/2016/01/Indiana-Public-Defender-Commission-Stds-for-Indigent-Defense-Svcs-2013.pdf>. STANDARD E. 4. Juvenile Delinquency.

- a. 소년이 살인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은 최소한 3년 이상 형사 또는 소년범죄 실무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3건 이상 C급 중죄의 배심재판 또는 소년재판에서 대표 또는 공동으로 변호했던 사전경험이 있어야 한다.
- b. 소년이 A급 또는 B급 중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은 최소한 2년 이상 형사 또는 소년범죄 실무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2건 이상 중죄의 배심재판 또는 소년재판에서 대표 또는 공동으로 변호했던 사전경험이 있어야 한다.
- c. 그 외 소년범죄사건(C급 중죄 및 그 이하; 모든 경범죄나 규칙 위반 및 status 사건)에서

다. 루이지애나(Louisiana)주: 소년변호절차를 위한 사실심 실무기준(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for Attorneys Representing Children in Delinquency Proceedings)

루이지애나 국선변호인위원회(Louisiana Public Defender Board)는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을 담당하는 변호인을 위한 사실심(제1심)법원 수행기준서를 공표하였다. 본 기준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변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변호인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최상의 변호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들에게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또는 적합한 변호수행절차를 인식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구금(detention), 판결(adjudication) 및 판결 후 단계(post-adjudication stages)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본 기준은 소년변호인들의 수행 평가 뿐 아니라 변호인들의 훈련 및 감독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⁵⁾

라. 메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소년범죄 및 소년범죄자, 형사사건에서의 무자력 소년의 변호에 관한 실무지침(Performance Standards Governing Representation of Indigent Juveniles in Delinquency, Youthful Offender, and Criminal cases)

소년범죄, 소년범죄자 및 형사사건에서의 무자력(빈곤)소년에 관한 변호를 다루는 수행기준을 개발한 ‘국선변호인서비스위원회(Committee for Public Counsel Services)’는 본 지침을 소년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를 평가, 감독 및 훈련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기준(Standards)은 사전준비단계(the stage of preliminary preparation)부터 시작해서 재판이후의 절차(post-trial proceedings)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의무뿐 아니라 변호에 관한 일반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⁶⁶⁾

대표변호인 역할을 할 자격이 되려면, 변호인은 성인 또는 소년 법원에서 최소한 동일한 정도 또는 그보다 상위의 범죄사건을 1건 이상 대표 또는 공동으로 변호했던 사전경험; 또는 1년 이상 소년범죄절차의 경험; 그러한 사건을 소송할 자격을 갖춘 변호인의 감독 하에 소년법원에서 두 건의 비교 사건을 종료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65)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for Attorneys Representing Children in Delinquency Proceeding, Louisiana Public Defender Board, 2011.

66) Performance Standards Governing Representation of Indigent Juveniles in Delinquency, Youthful Offender, and Criminal cases, Massachusetts Committee for Public Counsel Services, 2016. 2. available at <http://njdc.info/wp-content/uploads/2016/02/Massachusetts-CPCS-Juv-Def-Performance-Stds.pdf>.

마. 오하이오(OHIO)주: 소년범죄사건에서의 의뢰인 변호기준 (STANDARDS of Representation of Clients in Juvenile Delinquency Cases)

오하이오주 국선변호인위원회는 소년형사사건에서 의뢰인 변호기준을 채택했는데, 이는 소년변호인에게 소년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을 위해 적절하고 성실하게 변호하도록 하는 일반 지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Standards)은 특히 변호인의 역할, 요청되는 훈련, 발달 사안들(developmental issues) 및 법원절차에서의 변호(advocacy in court proceedings)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⁶⁷⁾

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 소년범죄 변호실무지침서(Performance Guidelines for Quality and Effective Juvenile Delinquency Representation)

펜실베이니아 소년변호인협회(Juvenile Defenders Association of Pennsylvania)는 구속력은 없지만(non-binding), 실효적인 소년변호를 위한 수행지침을 개발하였다. 본 지침은 국선변호인 뿐 아니라 일반적인 소년변호인들과 계약변호인 및 임명변호인에게 지침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소년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위하여 증거에 기초한 최상의 실무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사전심리단계(pre-adjudicatory phase)부터 항소(appellate) 및 사후처분단계(post-disposition phase)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역할, 훈련 및 변호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⁶⁸⁾

사. 위스콘신(Wisconsin)주: 소년변호실무에 관한 국선변호인원칙(Public Defender Principles of Juvenile Defense Practice)

위스콘신주 국선변호인협회는 소년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소년 변호실무원칙을 제정하였는데, 소년변호인에게 실무기준을 알리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원칙은 의뢰인 중심의 변호에 근거한 변호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

67) STANDARDS of Representation of Clients in Juvenile Delinquency cases, Ohio Public Defender Commission, 2016. 2. available at http://njdc.info/wp-content/uploads/2016/02/Ohio_defender_standards.pdf.

68) Performance Guidelines for Quality and Effective Juvenile Delinquency Representation, Juvenile Defenders Association of Pennsylvania, 2010. 4. 15.

고, 구금(detention)에서 사후처분(post disposition)에 이르기까지 소년범죄실무(juvenile delinquency practice)에서의 모든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변호지침을 제공한다.

소년변호업무는 형사변호의 능력, 자치주의 소년사법규정상 실무지식, 소년발달원칙과 관련한 판례, 지역자료 및 규정에 대한 이해 등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실무분야이다. 소년변호인에게는 소년과 면담을 할 때 대상소년의 연령에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의뢰인인 소년이 구금된 경우라면, 변호인은 소년의 의견과 일치하는 선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제한된 지역사회의 장소에 소년이 석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변호인은 적절한 시기에 소년에게 사법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검토함으로써 대상소년의 법적 능력을 검토하여 변호활동에 참조해야 한다.

소년변호인은 형사변호실무의 기본 의무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소년범죄의 판결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변호인은 변호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들에 대해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기 전에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인은 변경, 수정, 확대 및 제재조치를 위해 처분 이후의 절차에서 소년을 변호할 준비를 해야 하고, 처분 이후 감면에 대해 소년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불리한 결과에 대한 항소를 논의해야 한다.⁶⁹⁾

제5절 소결

이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미국의 소년사건처리절차에서의 보조인/변호인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국선보조인제도가 신설되면서 소년보호절차에서 보조인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69) Wisconsin State Public Defender Principles of Juvenile Defense Practice, 2016. 4. available at <http://njdc.info/wp-content/uploads/2016/04/Wisc-State-PD-juvenile-standards.pdf>.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다른 보조인의 역할과 보조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문제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소년사건에서 보조인 특히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인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 국선보조인의 전문화

소년보호절차에서 소년을 조력하는 보조인은 법률적 조력자의 역할뿐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년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아울러 지식 및 경험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소년변호사의 자격을 소년판사, 소년검사와 동일하게 소년법원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국가소년변호인센터(National Juvenile Defender Center; NJDC)를 설립하여 소년들의 권리 보호(특히 변호권)를 포함하여 소년법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폭 넓게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는 실제로 소년변호인의 전문화를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소년변호인센터는 소년변호기준(Juvenile Defense Standards)을 정립하여 소년을 변호하고자 하는 변호인에 대한 다양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소년을 담당하게 될 변호인들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소년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범죄소년에 대해 무자력 추정 원칙을 수립하여 모든 소년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는 우리나라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조력을 담당하는 보조인의 자격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선보조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우리나라 국선보조인제도는 소년법 및 소년심판규칙의 규정을 제외하고 특별하게 그 업무 혹은 비용과 관련하여 규정된 법률은 없다. 물론 보조인 및 국선보조인에 대한 절차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성인을 위한 형사절차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인제도의

운영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일본은 「国選付添関連業務の解説(국선보조관련업무에 관한 설명)」을 제정하여 국선보조인의 업무 및 그 보수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수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검찰이 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원거리면회 가산, 화해의 성립 등 특별성과 등에 대해 추가로 보상하는 항목 등을 두어 국선보조인이 소년심판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소년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조인의 소극적 활동이 문제로 지적된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보조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은 미국,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서는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국선보조인 인식조사

김지영 · 김지연

제3장

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국선보조인 인식조사

제1절 조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설문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2016년 국선보조인으로 위촉된 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국선보조인들의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명단을 받았다. 법원의 협조를 통해 5월말까지 확인된 국선보조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가정법원 106명, 부산가정법원 26명, 대구가정법원 38명, 광주가정법원 39명, 인천가정법원 131명, 대전가정법원 24명, 울산지방법원 12명, 전주지방법원 43명, 수원지방법원 130명, 창원지방법원 58명, 의정부지방법원 5명, 춘천지방법원 22명, 청주지방법원 36명, 제주지방법원 19명으로 총 689명이 2016년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1〉 전국 각 법원별 국선보조인 현황

지역	인원(명)		
	변호사	전문가	합계
서울가정법원	103	3	106
부산가정법원	18	8	26
대구가정법원	21	17	38
광주가정법원	14	25	39
인천가정법원	108	23	131
대전가정법원	15	9	24
울산지방법원	6	6	12
전주지방법원	43	-	43

지역	인원(명)		
	변호사	전문가	합계
수원지방법원	122	8	130
창원지방법원	44	14	58
의정부지방법원	5	-	5
춘천지방법원	15	7	22
청주지방법원	36	-	36
제주지방법원	15	4	19
계	565	124	689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방법을 이용하였고, 설문조사 실시에 앞서 전화통화를 통해 국선보조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였다.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총 5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8월 셋째주부터 넷째주까지 두차례 실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수거된 설문은 총 249부였고, 이중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실제 사건을 맡지 않은 35명과 사건을 맡아 국선보조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211명에게는 조사 문항에 차이를 두었다.

각 지역별로 수거된 설문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가정법원 70부, 부산가정법원 15부, 대구가정법원 19부, 광주가정법원 8부, 인천가정법원 50부, 대전가정법원 10부, 울산지방법원 4부, 전주지방법원 10부, 수원지방법원 24부, 창원지방법원 18부, 의정부지방법원 1부, 춘천지방법원 2부, 청주지방법원 11부, 제주지방법원 7부로 총 249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표 3-2〉 조사기관 및 설문수거현황

지역	구분대상	배포설문 부수	설문수거 현황	총계
서울가정법원	변호사	97	66	70
	전문가	3	4	
부산가정법원	변호사	18	8	15
	전문가	6	7	
대구가정법원	변호사	18	9	19
	전문가	12	10	
광주가정법원	변호사	15	6	8
	전문가	2	2	

지역	구분대상	배포설문 부수	설문수거 현황	총계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90	37	50
	전문가	16	13	
대전가정법원	변호사	13	3	10
	전문가	8	7	
울산지방법원	변호사	6	-	4
	전문가	4	4	
전주지방법원	변호사	35	10	10
	전문가	-	-	
수원지방법원	변호사	74	23	24
	전문가	2	1	
창원지방법원	변호사	41	13	18
	전문가	6	5	
의정부지방법원	변호사	4	-	1
	전문가	-	1	
춘천지방법원	변호사	-	-	2
	전문가	2	2	
청주지방법원	변호사	32	11	11
	전문가	-	-	
제주지방법원	변호사	14	7	7
	전문가	-	-	
계		518	249	249

2. 측정변인

설문조사는 전국의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업무 현황과 업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따라서 설문의 주요 측정변인은 소년과의 면담 경험과 의견서 작성,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어려움, 개선점, 그리고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에서 가장 먼저 국선보조인으로 위촉된 이후 사건을 한 번도 맡지 않은 경우와 한 번 이상 사건을 맡은 경우를 대담하도록 하여 실제 국선보조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한 경우를 구분하여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가.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전공, 직업, 현재 근무지역, 현재 직업의 총 근무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와 보유 자격증의 종류를 포함한다. 학력은 대학원(박사과정) 졸업, 대학원(박사과정) 재학 및 수료, 대학원(석사과정) 졸업, 대학원(석사과정) 재학 및 수료, 대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및 중퇴,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은 변호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종사자, 공익법무관, 의사, 교사, 교수, 보호관찰관, 종교인, 기타로 구성되었고, 기타는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현재 근무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전주, 수원, 창원, 의정부, 춘천, 청주, 제주로 구성되었다.

자격증의 종류는 변호사,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상담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범죄심리사, 범죄심리전문가, 전문상담교사, 의사면허증, 교원자격증, 기타(직접기입)으로 구성되었다. 직업과 자격증 종류는 복수응답으로 질의하였다.

<표 3-3>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측정 변인

항목	변인	내용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력	대학원(박사과정) 졸업, 대학원(박사과정) 재학 및 수료, 대학원(석사과정) 졸업, 대학원(석사과정) 재학 및 수료, 대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및 중퇴,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직업	변호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종사자, 공익법무관, 의사, 교사, 교수, 보호관찰관, 종교인, 기타
	현재근무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전주, 수원, 창원, 의정부, 춘천, 청주, 제주
	자격증 종류	변호사,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상담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범죄심리사, 범죄심리전문가, 전문상담교사, 의사면허증, 교원자격증, 기타(직접기입)

나. 국선보조인 업무와 관련된 측정 변인

국선보조인의 활동경력에 대한 변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활동 연수, 선발 계기와 국선보조인 시작 동기, 한 해 담당 총 사건 수, 다른 국선보조인들과의 교류 여부와 교류 형태 등을 포함한다.

면담 관련 변인은 다음과 같다.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과 국선보조인이 생각하는 적정 면담시간, 한 소년당 접견을 두 번 이상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접견 형태, 관계인과의 면담 여부와 형태, 면담상황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대상자와의 정서적 공감도, 면담장소에 대한 보조인의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국선보조인 의견서 작성과 관련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의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의견 결정시 참조하는 자료와 의견 결정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소년의 성장환경, 소년의 범죄경력, 재범가능성,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있다. 의견 결정시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는 특별한 범죄유형과 소년의 태도가 처분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보조인 의견 결정시 보조인의 개인차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의견서 작성 형식 방법, 의견서 형식의 통일성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인식에 관한 변인은 다음과 같다. 보조인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지 정도, 업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 업무에 대한 실망, 내 판단에 대한 확신, 보조인 견해와 판사 견해의 일치, 업무에 대한 자신감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소년의 예상처분 질문에 대한 답변,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장래 계획에 대한 질문,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지만, 사회내 처우 제시하려는 경향 등이 포함되었다.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관한 변인은 다음과 같다. 보수 수준의 적절성, 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받은 경험, 교육의 내용, 국선보조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해, 상담기법, 우수사례 소개, 사법처리절차, 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 등이 포함되었다. 국선보조인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업이 보조인 업무에 가지는 강점,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 등을 포함시켰다.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변인으로 운영 및 관리 형태,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의 체계적 운영 정도, 국선보조인

제도의 운영과 관리의 체계화 필요성을 포함시켰다.

향후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면담 소년과의 지속적 교류 여부, 업무에 대한 보람 정도, 보조인 업무의 어려움으로 제도적 한계, 대상자와의 갈등, 보조인간 상호협조 부족, 시간적 여유 부족, 대상자의 개선에 대한 불신, 적은 보수, 관련지식의 부족을 포함시켰다.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완점으로 교육 및 연수의 강화, 예산지원과 역할, 권한의 강화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선보조인의 역할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표 3-4〉 국선보조인업무와 관련된 측정 변인

항목	변인	내용
국선보조인 업무와 관련된 측정 변인	국선보조인의 활동경력	활동 연수, 선발 계기와 국선보조인 시작 동기, 한 해 담당 총 사건 수, 다른 국선보조인들과의 교류 여부와 교류 형태
	국선보조인 의견서 작성	의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의견 결정시 참조하는 자료,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의견 결정시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는 특별한 범죄유형, 소년의 태도가 처분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보조인 의견 결정시 보조인의 개인차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의견서 작성 형식 방법, 의견서 형식의 통일성 여부
	면담실태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과 국선보조인이 생각하는 적정 면담시간, 한 소년당 접견을 두 번 이상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접견 형태, 관계인과의 면담 여부와 형태, 대상자와의 정서적 공감도, 면담장소에 대한 보조인의 만족도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인식	보조인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지 정도,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 업무에 대한 실망, 내 판단에 대한 확신, 보조인 견해와 판사 견해의 일치, 업무에 대한 자신감,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형태
	향후 계획	사후 면담 소년과의 지속적 교류 여부, 업무에 대한 보람 정도, 보조인 업무의 어려움으로 제도적 한계, 대상자와의 갈등, 보조인간 상호협조 부족, 시간적 여유 부족, 대상자의 개선에 대한 불신, 적은 보수, 관련지식의 부족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완점	교육 및 연수의 강화, 예산지원과 역할, 권한의 강화
	국선보조인의 역할정체성	자신의 견해,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

제2절 국선보조인의 특성과 활동 현황

1.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현황

조사대상자의 명수는 총 249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3-5>를 보면, 서울가정법원이 가장 많은 28.1%(70명)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천 가정법원 20.1%(50명), 수원지방법원 9.6%(24명), 대구가정법원 7.6%(19명), 창원지방법원 7.2%(18명), 부산가정법원 6.0%(15명), 청주지방법원 4.4%(11명), 대전가정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이 4.0%(10명), 광주가정법원 3.2%(8명), 제주지방법원 2.8%(7명), 울산지방법원 1.6%(4명), 춘천지방법원 0.8%(2명), 의정부지방법원 0.4%(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지역	빈도	백분율
서울가정법원	70	28.1
부산가정법원	15	6.0
대구가정법원	19	7.6
광주가정법원	8	3.2
인천가정법원	50	20.1
대전가정법원	10	4.0
울산지방법원	4	1.6
전주지방법원	10	4.0
수원지방법원	24	9.6
창원지방법원	18	7.2
의정부지방법원	1	0.4
춘천지방법원	2	0.8
청주지방법원	11	4.4
제주지방법원	7	2.8
합계	249	100.0

2.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성별과 연령

조사대상자가 된 국선보조인들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43명으로 57.4%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106명으로 4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국선보조인의 성별

(단위: 명, %)

성별	빈도	백분율
남자	143	57.4
여자	106	42.6
합계	249	100.0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122명(49.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40대가 86명(34.5%), 50대가 27명(10.8%), 60대가 11명(4.4%), 20대가 3명(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국선보조인의 연령

(단위: 명, %)

연령	빈도	백분율
30대 이하	125	50.2
40대	86	34.5
50대 이상	38	15.3
합계	249	100.0

나. 교육수준과 전공

조사대상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석사과정) 졸업이 각각 동일하게 96명(3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원(박사과정) 재학 및 수료가 30명(12.0%), 대학원(석사과정) 재학 및 수료 15명(6.0%), 대학원(박사과정) 졸업 6명(2.4%), 고등학교 졸업 이하 3명(1.2%), 대학교 재학 및 중퇴 2명(0.8%),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이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국선보조인의 학력

(단위: 명, %)

학력	빈도	백분율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1.2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1	0.4
대학교 재학 및 중퇴	2	0.8
대학교 졸업	96	38.6
대학원(석사과정) 재학 및 수료	15	6.0
대학원(석사과정) 졸업	96	38.6
대학원(박사과정) 재학 및 수료	30	12.0
대학원(박사과정) 졸업	6	2.4
합계	249	100.0

전공을 보면, 법학이 165명(66.3%)로 가장 많았고, 심리상담복지가 34명(13.7%), 기타가 19명(7.6%), 정치행정사회학 12명(4.8%), 경제경영학 10명(4.0%), 신학 5명(2.0%), 교육학이 3명(1.2%), 없음이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국선보조인의 전공

(단위: 명, %)

전공	빈도	백분율
경제경영학	10	4.0
교육학	3	1.2
법학	165	66.3
신학	5	2.0
심리상담복지학	34	13.7
정치행정사회학	12	4.8
기타	19	7.6
없음	1	0.4
합계	249	100.0

다. 직업과 자격증

직업을 보면, 변호사가 195명(7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종사자가 36명(13.5%), 종교인 11명(4.1%), 교사 10명(2.0%), 교수 7명(2.6%), 기타 6명(2.2%), 보호관찰관 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국선보조인의 직업(전직(前職) 포함, 복수응답 가능)

(단위: 명, %)

직업	빈도	백분율
변호사	195	73.0
청소년상담지원센터종사자	36	13.5
종교인	11	4.1
교사	10	2.0
교수	7	2.6
기타	6	2.2
보호관찰관	2	0.7
합계	267	100.0

직업경력을 보면, 1년 이상-5년 이하가 149명(59.8%)로 가장 높고, 6년 이상-10년 이하 51명(20.5%), 11년 이상-20년 이하 37명(14.9%), 31년 이상이 6명(2.4%), 21년 이상-30년 이하 5명(2.0%), 1년 미만이 1명(0.4%)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3-11〉 국선보조인의 직업경력

(단위: 명, %)

경력	빈도	백분율
1년 미만	1	0.4
1년 이상-5년 이하	149	59.8
6년 이상-10년 이하	51	20.5
11년 이상-20년 이하	37	14.9
21년 이상-30년 이하	5	2.0
31년 이상	6	2.4
합계	249	100.0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보면, 변호사 자격증이 191명(61.4%)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33명(10.6%), 기타 30명(9.6%), 상담심리사(상담심리전문가) 24명(7.7%), 교원자격증 20명(6.4%), 전문상담교사와 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전문가)가 각각 6명(1.9%) 순으로 나타났다. 1명(0.3%)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복수응답 가능)

(단위: 명, %)

자격증	빈도	백분율
변호사	191	61.4
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전문가)	6	1.9
상담심리사(상담심리전문가)	24	7.7
사회복지사	33	10.6
전문상담교사	6	1.9
교원자격증	20	6.4
기타	30	9.6
없음	1	0.3
합계	311	100.0

제3절 국선보조인 업무 경험

1. 활동 경력

가. 활동 기간과 실제 사건 담당 여부

조사대상자들이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3년 이상-4년 미만은 21.8%(46명)으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3년 미만 20.9%(44명), 5년 이상 17.1%(36명), 1년 미만과 1년 이상-2년 미만은 각각 14.2%(30명), 4년 이상-5년 미만 11.8%(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3〉 국선보조인 활동 기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1년 미만	30	14.2
1년 이상-2년 미만	30	14.2
2년 이상-3년 미만	44	20.9
3년 이상-4년 미만	46	21.8
4년 이상-5년 미만	25	11.8
5년 이상	36	17.1
합계	211	100.0

조사대상자들이 국선보조인으로 위촉된 이후 실제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국선보조인으로 위촉된 이후 실제 사건을 한번 이상 맡은 경우는 84.7%(211명)이고, 국선보조인으로 위촉은 되었지만 실제 사건을 한 번도 맡지 못한 경우는 15.3%(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국선보조인 업무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네	211	84.7
아니오	38	15.3
합계	249	100.0

나. 국선보조인 선발 계기와 시작 동기

조사대상자들이 국선보조인에 어떻게 선발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법원의 위촉공고를 보고 선발된 경우가 48.2%(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찾은 경우가 25.9%(85명), 관계 공무원이 권유를 한 경우가 12.2%(40명), 기존 국선보조인의 권유가 9.8%(32명), 기타 4.0%(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위탁보호위원 활동, 변호사회 공문, 센터의 권유 등의 내용들이 있다.

〈표 3-15〉 국선보조인 선발 계기(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찾음	85	25.9
법원의 위촉 공고를 보고	158	48.2
기존 국선보조인의 권유	32	9.8
관계 공무원의 권유	40	12.2
기타	13	4.0
합계	328	100.0

처음 국선보조인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비행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라는 답이 35.7%(89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6.1%(65명), 사명감 16.1%(40명), 관련 기관의 권유 6.8%(17명), 주위 지인의 권유나 요청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5.2%(13명), 기타 3.2%(8명), 경제적 동기 1.6%(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처음 국선보조인을 시작하게 된 주된 동기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사명감	40	16.1
비행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89	35.7
관련기관의 권유	17	6.8
주위 지인의 권유나 요청	13	5.2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13	5.2
현재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65	26.1
경제적 동기	4	1.6
기타	8	3.2
합계	249	100.0

기타의 내용을 보면, 가정법원 시보를 하면서 하게 됨, 법원에 국선변호인으로 신청했다가 국선보조인으로 지정됨, 변호사 사무실 개소 후 국선변호인과 국선보조인으로 모두 신청해서 지정됨, 자녀가 크면서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다. 담당 사건 수

평균 한 해 담당하는 총 사건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10건 미만이 47.9%(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건 이상-20건 미만 31.8%(67명), 20건 이상-30건 미만 7.1%(15명), 30건 이상-40건 미만 4.7%(10명), 60건 이상 4.3%(9명), 50건 이상-60건 미만 2.4%(5명), 40건 이상-50건 미만 1.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평균 한 해 담당하는 총 사건 수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10건 미만	101	47.9
10건 이상-20건 미만	67	31.8
20건 이상-30건 미만	15	7.1
30건 이상-40건 미만	10	4.7
40건 이상-50건 미만	4	1.9
50건 이상-60건 미만	5	2.4
60건 이상	9	4.3
합계	211	100.0

라. 다른 보조인과의 교류

다른 보조인과의 교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3.0%(132명)이 교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7.0%(117명)은 교류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표 3-18〉 다른 보조인과의 교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네	132	53.0
아니오	117	47.0
합계	249	100.0

구체적인 교류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가 78.5%(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워크숍 14.0%(22명), 기타 7.6%(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SNS, 소년재판 당일 만남, 판사님과의 회의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3-19〉 다른 보조인과의 교류 형태(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개별적 연락	124	78.5
워크숍	22	14.0
기타	12	7.6
합계	158	100.0

2. 면담(접견) 경험

가. 면담 소요 시간

개별 소년별로 면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43.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36.0%(76명),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9.5%(2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분 미만과 3시간 이상은 각각 5.7%(1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소년별로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30분 미만	12	5.7
30분이상-1시간 미만	91	43.1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76	36.0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20	9.5
3시간 이상	12	5.7
합계	211	100.0

국선보조인인 생각하는 적정 면담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47.4%(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분이상-1시간 미만이 26.5%(56명),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4.2%(30명), 3시간 이상 8.5%(18명), 30분 미만 3.3%(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 국선보조인이 생각하는 적정 면담시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30분 미만	7	3.3
30분이상-1시간 미만	56	26.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00	47.4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0	14.2
3시간 이상	18	8.5
합계	211	100.0

나. 의견서 작성 소요 시간

한 소년당 의견서 작성을 끝날때까지 총 소요시간을 보면, 10시간 이상이 30.3%(64명)으로 가장 많았고,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27.5%(58명),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20.4%(43명), 6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4.7%(31명), 2시간 미만 7.1%(15명)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3-22〉 한 소년당 의견서 작성을 끝낼 때 까지 총 소요시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2시간 미만	15	7.1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58	27.5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43	20.4
6시간 이상-10시간 미만	31	14.7
10시간 이상	64	30.3
합계	211	100.0

다. 접견 횟수와 형태 및 관계인과의 접견

한 소년당 접견을 두 번 이상 한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59.2%(125명),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8%(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두 번 이상 접견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두 번이상 접견한 적이 있다	125	59.2
두 번이상 접견한 적이 없다	86	40.8
합계	211	100.0

소년접견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분류심사원(소년원) 방문이 52%(207명)로 가장 높았고, 전화 21.1%(84명), 국선보조인 사무실에서 접견 20.1%(80명), 편지 및 전자메일 3.5%(14명), 기타 3.3%(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견해에는 가정방문, 법원에서 재판때 보거나, 기타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만남 등의 내용이 있었다.

〈표 3-24〉 소년접견의 형태(복수응답 가능)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분류심사원(소년원) 방문	207	52
국선보조인 사무실	80	20.1
전화	84	21.1
편지 및 전자메일	14	3.5
기타	13	3.3
합계	398	100.0

소년의 관계인과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관계인과 만난 적이 있는 경우는 91.9%(194명), 만난 적이 없는 경우는 8.1%(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관계인 접견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만난 적이 있다	194	91.9
만난 적이 없다	17	8.1
합계	211	100.0

국선보조인이 접견한 소년의 관계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부모가 37.2%(1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 21.9%(114명), 형제 17.1%(89명), 학교선생님 12.7%(66명), 기타 5.8%(30명), 친구 또는 선후배 5.4%(2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친척, 고용주, 교회나 소년보호기관 종사자, 이웃 그리고 피해자 등이 있었다.

〈표 3-26〉 면담 관계인(복수응답 가능)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부모	194	37.2
형제	89	17.1
학교선생님	66	12.7
친구 또는 선후배	28	5.4
조부모	114	21.9
기타	30	5.8
합계	521	100.0

관계인 면담 형태에 대한 질문은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전화가 40.9%(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선보조인 사무실이 35.7%(158명), 편지 및 전자메일 14.2%(63명), 기타 9.3%(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분류심사원 면회실이나 법원 방문, 가정방문, 관계인 거주지나 사무실, 커피숍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3-27〉 관계인 면담의 형태(복수응답 가능)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화	181	40.9
국선보조인 사무실	158	35.7
편지 및 전자메일	63	14.2
기타	41	9.3
합계	443	100.0

라. 면담상황에 대한 만족도

면담장소가 보호소년과 면담자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가 46.9%(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별로 그렇지 않다 33.2%(70명), 매우 그렇다 17.5%(37명), 전혀 그렇지 않다 2.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8〉 면담장소의 안정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2.4
별로 그렇지 않다	70	33.2
약간 그렇다	99	46.9
매우 그렇다	37	17.5
합계	211	100.0

직원들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가 57.3%(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가 30.8%(65명), 별로 그렇지 않다 10.4%(22명), 전혀 그렇지 않다 1.4%(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9〉 직원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1.4
별로 그렇지 않다	22	10.4
약간 그렇다	121	57.3
매우 그렇다	65	30.8
합계	211	100.0

별도의 상담실이나 관련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가 39.4%(98명), 매우 그렇다 23.3%(58명), 별로 그렇지 않다 17.3%(43명), 전혀 그렇지 않다 4.8%(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0〉 시설에 대한 만족도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2	4.8
별로 그렇지 않다	43	17.3
약간 그렇다	98	39.4
매우 그렇다	58	23.3
합계	211	100.0

면담자와 보호소년의 정서적 공감 형성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5.5%(117명), 매우 그렇다 27.0%(57명), 별로 그렇지 않다 17.5%(3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 정서적 공감 형성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37	17.5
약간 그렇다	117	55.5
매우 그렇다	57	27.0
합계	211	100.0

소년과 면담시 소년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인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63.0%(133명), 약간 그렇다 36.5%(77명), 별로 그렇지 않다 0.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2〉 면담시 소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1	0.4
약간 그렇다	77	36.5
매우 그렇다	133	63.0
합계	211	100.0

면담시 부모가 잘 협조해 주는 편인가라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61.1%(129명), 매우 그렇다 25.1%(53명), 별로 그렇지 않다 13.7%(2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3〉 부모의 협조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29	13.7
약간 그렇다	129	61.1
매우 그렇다	53	25.1
합계	211	100.0

면담시 소년들이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인가라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49.8%(105명), 매우 그렇다 44.1%(93명), 별로 그렇지 않다 5.7%(12명), 전혀 그렇지 않다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4〉 소년의 협조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별로 그렇지 않다	12	5.7
약간 그렇다	105	49.8
매우 그렇다	93	44.1
합계	211	100.0

면담시 소년들의 반성이나 참회 정도가 높은 편인가라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7.8%(122명), 매우 그렇다 31.3%(66명), 별로 그렇지 않다 10.4%(22명), 전혀 그렇지 않다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5〉 소년의 반성과 참회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별로 그렇지 않다	22	10.4
약간 그렇다	122	57.8
매우 그렇다	66	31.3
합계	211	100.0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가. 참고하는 기관 자료

보조인 의견 결정시 참조하는 자료를 묻는 질문에는, 피의자신문조서(범죄소년)/진술조서(촉법 및 우범소년)가 18.5%(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의 결정전 조사서 13.8%(113명), 경찰의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13.0%(106명), 분류심사서 12.9%(105명), 사건송치서 12.6%(103명), 경찰의견서 7.3%(60명), 판결전 조사서 7.0%(57명), 검사의 결정전 조사서 5.9%(48명), 경찰의 비행성예측자료표 5.4%(44명), 기타 3.7%(3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보조인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사항, 개별상담 환경조사서, 보호관찰일지, 소년과 면담이나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 보호자 제출 자료 및 탄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자료, 교사 의견, 보관조사서 등의 내용이 있었다.

〈표 3-36〉 보조인 의견 결정시 참조 자료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사건송치서	103	12.6
경찰의견서	60	7.3
피의자신문조서(범죄소년)/진술조서(촉법우범소년)	151	18.5
경찰의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106	13.0
경찰의 비행성예측자료표	44	5.4
검사의 결정전 조사서	48	5.9
법원의 결정전 조사서	113	13.8
판결전 조사서	57	7.0
분류심사서	105	12.9
기타	30	3.7
합계	817	100.0

나.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조인 의견 결정시 고려하게 되는 사항에 관해 질문하였다. 범죄관련 사항의 경우 약간 중요하다가 59.7%(126명), 매우 중요하다 33.6%(71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6.6%(1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7〉 범죄관련사항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14	6.6
약간 중요하다	126	59.7
매우 중요하다	71	33.6
합계	211	100.0

범죄경력에의 경우 약간 중요하다 56.4%(119명), 매우 중요하다 37.9%(80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5.7%(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8〉 범죄경력에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12	5.7
약간 중요하다	119	56.4
매우 중요하다	80	37.9
합계	211	10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74.4%(157명), 약간 중요하다 24.2%(51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1.4%(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9〉 생활환경에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3	1.4
약간 중요하다	51	24.2
매우 중요하다	157	74.4
합계	211	100.0

성장과정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56.9%(120명), 약간 중요하다 38.4%(81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4.7%(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0〉 성장과정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10	4.7
약간 중요하다	81	38.4
매우 중요하다	120	56.9
합계	211	100.0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의 경우 약간 중요하다 52.1%(110명), 매우 중요하다 36.0%(76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11.4%(24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1〉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0.5
별로 중요하지 않다	24	11.4
약간 중요하다	110	52.1
매우 중요하다	76	36.0
합계	211	100.0

학력 및 학교생활의 경우 약간 중요하다 54.0%(114명), 매우 중요하다 37.9%(80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8.1%(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2〉 학력 및 학교생활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17	8.1
약간 중요하다	114	54.0
매우 중요하다	80	37.9
합계	211	100.0

교우관계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52.6%(111명), 약간 중요하다 39.3%(83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8.1%(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3〉 교우관계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17	8.1
약간 중요하다	83	39.3
매우 중요하다	111	52.6
합계	211	100.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90.0%(190명), 약간 중요하다 10.0%(21명)으로 나타났다.

〈표 3-44〉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 능력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0	0.0
약간 중요하다	21	10.0
매우 중요하다	190	90.0
합계	211	100.0

진술태도의 경우 약간 중요하다 47.9%(101명), 매우 중요하다 45.0%(95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6.6%(14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5〉 진술태도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0.5
별로 중요하지 않다	14	6.6
약간 중요하다	101	47.9
매우 중요하다	95	45.0
합계	211	100.0

향후 생활계획의 경우 약간 중요하다 46.4%(98명), 매우 중요하다 45.5%(96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8.1%(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6〉 향후 생활계획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17	8.1
약간 중요하다	98	46.4
매우 중요하다	96	45.5
합계	211	100.0

소년에 대한 이전 조사 자료들의 경우 약간 중요하다 72.0%(152명), 매우 중요하다 14.2%(30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13.3%(28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7〉 소년에 대한 이전 조사자료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0.5
별로 중요하지 않다	28	13.3
약간 중요하다	152	72.0
매우 중요하다	30	14.2
합계	211	100.0

재범 가능성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64.0%(135명), 약간 중요하다 33.6%(71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2.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8〉 재범 가능성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5	2.4
약간 중요하다	71	33.6
매우 중요하다	135	64.0
합계	211	100.0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의 경우 약간 중요하다 52.6%(111명), 매우 중요하다 25.6%(54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20.9%(44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0.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9〉 피해자와 합의 노력 여부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0.9
별로 중요하지 않다	44	20.9
약간 중요하다	111	52.6
매우 중요하다	54	25.6
합계	211	100.0

다. 처분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

보조인 의견을 결정할 때 특히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는 범죄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성폭력 범죄가 56.9%(12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폭력/상해(폭처범위반 등 폭력범죄) 8.5%(18명), 유해화학 물질 흡입(마약, 분드, 락카 등) 6.6%(14명), 기타가 3.8%(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절도와 교통, 풍속범죄(도박 및 윤락행위 등)의 경우 모두 0.9%(2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1.3%(45명)은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는 특별한 범죄유형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표 3-50〉 의견 결정시 영향을 주는 범죄유형의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폭행/상해(폭처범위반 등 폭력범죄)	18	8.5
절도범죄	2	0.9
성폭력범죄	120	56.9
교통범죄	2	0.9
풍속범죄(도박,윤락행위등)	2	0.9
유해화학 물질 흡입(마약,분드, 락카등)	14	6.6
공문서 위조 및 사기	0	0.0
기타	8	3.8
없음	45	21.3
합계	211	100.0

라. 소년의 태도

면담시 소년의 태도(용모, 언행, 후회 및 참회의 정도)가 처분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영향을 준다는 답이 60.2%(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영향을 준다 34.6%(73명),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5.2%(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1〉 면담시 소년의 태도가 처분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0	0.0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	5.2
약간 영향을 준다	127	60.2
매우 영향을 준다	73	34.6
합계	211	100.0

마. 국선보조인의 개인차와 의견 결정

보조인 의견 결정에 있어 국선보조인의 개인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영향을 준다가 68.7%(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6%(35명), 매우 영향을 준다 14.2%(30명),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2〉 국선보조인의 개인차가 의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0.5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35	16.6
약간 영향을 준다	145	68.7
매우 영향을 준다	30	14.2
합계	211	100.0

바. 의견서 형식

보조인 의견서의 형식은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질문에는 내 나름의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이 79.6%(168명)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의 권유(판사가 권하는 양식)가 10.4%(22명), 정형화된 양식이 없음(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 작성) 10.0%(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3〉 보조인의 의견서 형식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판사의 권유(판사가 권하는 양식)	22	10.4
내 나름의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	168	79.6
정형화된 양식이 없음(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작성)	21	10.0
합계	211	100.0

보조인 의견서의 형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55.9%(118명), 그렇다 44.1%(93명)으로 나타났다.

〈표 3-54〉 의견서 형식 통일의 필요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93	44.1
아니다	118	55.9
합계	211	100.0

4.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인식

가.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지도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국선보조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약간 알고 있었다 61.6%(130명), 전혀 몰랐다 32.2%(68명), 매우 잘 알고 있었다 6.2%(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5〉 국선보조인 활동 이전 국선보조인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몰랐다	68	32.2
약간 알고 있었다	130	61.6
매우 잘 알고 있었다	13	6.2
합계	211	100.0

나.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

평소 국선보조인과 관련된 업무 분야에 대한 자료나 기사, 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는 약간 그렇다 58.3%(123명), 매우 그렇다 23.2%(49명), 별로 그렇지 않다 17.5%(37명), 전혀 그렇지 않다 0.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6〉 관련 분야 자료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9
별로 그렇지 않다	37	17.5
약간 그렇다	123	58.3
매우 그렇다	49	23.2
합계	211	100.0

내가 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52.6%(111명), 약간 그렇다 43.1%(91명), 별로 그렇지 않다 3.3%(7명), 전혀 그렇지 않다 0.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7〉 활동에 대한 소명의식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9
별로 그렇지 않다	7	3.3
약간 그렇다	91	43.1
매우 그렇다	111	52.6
합계	211	100.0

다른 보조인들과의 정보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가 48.8%(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별로 그렇지 않다 34.1%(72명), 매우 그렇다 14.7%(31명), 전혀 그렇지 않다 2.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8〉 다른 보조인들과의 교류에 대한 중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2.4
별로 그렇지 않다	72	34.1
약간 그렇다	103	48.8
매우 그렇다	31	14.7
합계	211	100.0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라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46.4%(98명), 전혀 그렇지 않다 28.9%(61명), 약간 그렇다 19.9%(42명), 매우 그렇다 4.7%(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9〉 업무에 열의를 가지기 어려운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1	28.9
별로 그렇지 않다	98	46.4
약간 그렇다	42	19.9
매우 그렇다	10	4.7
합계	211	100.0

내 자신의 판단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51.7%(109명), 약간 그렇다 34.6%(73명), 전혀 그렇지 않다 10.4%(22명), 매우 그렇다 3.3%(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0〉 내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성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2	10.4
별로 그렇지 않다	109	51.7
약간 그렇다	73	34.6
매우 그렇다	7	3.3
합계	211	100.0

판사의 최종결정에 심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49.8%(105명), 별로 그렇지 않다 40.8%(86명), 전혀 그렇지 않다 6.2%(13명), 매우 그렇다 3.3%(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1〉 판사의 결정에 심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험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3	6.2
별로 그렇지 않다	86	40.8
약간 그렇다	105	49.8
매우 그렇다	7	3.3
합계	211	100.0

내가 하는 일은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5.0%(116명), 매우 그렇다 37.0%(78명), 별로 그렇지 않다 7.6%(16명), 전혀 그렇지 않다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2〉 업무의 사회 공헌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별로 그렇지 않다	16	7.6
약간 그렇다	116	55.0
매우 그렇다	78	37.0
합계	211	100.0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직무에 비해 더 엄격한 윤리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46.9%(99명), 매우 그렇다 31.8%(67명), 별로 그렇지 않다 21.3%(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3〉 직무에 있어 엄격한 윤리기준의 필요성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45	21.3
약간 그렇다	99	46.9
매우 그렇다	67	31.8
합계	211	100.0

나의 의견이 판사의 최종결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8.8%(124명), 별로 그렇지 않다 22.3%(47명), 매우 그렇다 18.0%(38명), 전혀 그렇지 않다 0.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4〉 판사결정에 보조인 견해 반영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9
별로 그렇지 않다	47	22.3
약간 그렇다	124	58.8
매우 그렇다	38	18.0
합계	211	100.0

다.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

나는 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가 61.1%(129명), 매우 그렇다 35.5%(75명), 별로 그렇지 않다 3.3%(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5〉 소년의 입장 공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7	3.3
약간 그렇다	129	61.1
매우 그렇다	75	35.5
합계	211	100.0

나는 관련법에서 보장하는 소년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7.3%(121명), 매우 그렇다 39.3%(83명), 별로 그렇지 않다 2.8%(6명), 전혀 그렇지 않다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6〉 소년에게 보장된 권리에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별로 그렇지 않다	6	2.8
약간 그렇다	121	57.3
매우 그렇다	83	39.3
합계	211	100.0

나는 업무와 관련된 문헌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9.7%(126명), 매우 그렇다 34.6%(73명), 별로 그렇지 않다 5.7%(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7〉 업무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12	5.7
약간 그렇다	126	59.7
매우 그렇다	73	34.6
합계	211	100.0

나는 소년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2.6%(111명), 매우 그렇다 44.5%(94명), 별로 그렇지 않다 2.4%(5명), 전혀 그렇지 않다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8〉 소년에게 신뢰감 줄 수 있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별로 그렇지 않다	5	2.4
약간 그렇다	111	52.6
매우 그렇다	94	44.5
합계	211	100.0

라. 예상 처분에 대한 대처

소년이 예상처분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준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35.1%(74명), 약간 그렇다 32.2%(68명), 전혀 그렇지 않다 25.1%(53명), 매우 그렇다 7.6%(1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9〉 소년의 예상처분 질문에 대한 답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3	25.1
별로 그렇지 않다	74	35.1
약간 그렇다	68	32.2
매우 그렇다	16	7.6
합계	211	100.0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면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장래희망을 물어본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41.2%(87명), 매우 그렇다 39.8%(84명), 별로 그렇지 않다 15.6%(33명), 전혀 그렇지 않다 3.3%(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0〉 시설내 처분 예상될 경우 장래 계획 질문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	3.3
별로 그렇지 않다	33	15.6
약간 그렇다	87	41.2
매우 그렇다	84	39.8
합계	211	100.0

시설내 처분이 적합한 아이이지만, 사회내 처우로 의견을 제시하려는 편이라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44.1%(93명), 별로 그렇지 않다 38.9%(82명), 매우 그렇다 9.0%(19명), 전혀 그렇지 않다 8.1%(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1〉 사회내 처우로 결정 경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7	8.1
별로 그렇지 않다	82	38.9
약간 그렇다	93	44.1
매우 그렇다	19	9.0
합계	211	100.0

마. 직업이 국선보조인 업무에 가지는 강점

내 직업이 국선보조인 활동에 특별한 강점이 있다고 본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97.2%(205명), 아니다 2.8%(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2〉 직업이 보조인 업무에 특별한 강점을 가진다는 인식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205	97.2
아니다	6	2.8
합계	211	100.0

내 직업의 어떠한 점이 국선보조인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법률적 지식이 57.1%(117명), 청소년에 대한 이해 28.3%(58명), 심리 및 상담기술에 대한 이해 10.7%(22명), 기타 3.9%(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견해에는 범죄의 위험성 교육, 사회복지학적 지식과 임상경험, 청소년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3-73〉 보조인 활동에 강점이 되는 직업관련 지식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법률적 지식	117	57.1
청소년에 대한 이해	58	28.3
심리 및 상담기술에 대한 이해	22	10.7
기타	8	3.9
합계	205	100.0

5.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가. 보수 수준

보수 수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가 50.2%(106명), 적절하다 29.9%(63명), 전혀 적절하지 않다 18.0%(38명), 매우 적절하다 1.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4〉 국선보조인 보수 수준의 적절성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적절하지 않다	38	18.0
별로 적절하지 않다	106	50.2
적절하다	63	29.9
매우 적절하다	4	1.9
합계	211	100.0

나. 관련 교육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조금 필요하다 62.7%(156명), 매우 필요하다 28.9%(72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8.0%(20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0.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5〉 정기적인 보조인 교육의 필요성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4
별로 필요하지 않다	20	8.0
조금 필요하다	156	62.7
매우 필요하다	72	28.9
합계	211	100.0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있다 57.4%(143명), 없다 42.6%(10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6〉 보조인 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143	57.4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	106	42.6
합계	249	100.0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교육 프로그램이 충실하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는 충실한 편이다 69.2%(99명), 별로 충실하지 않다 25.9%(37명), 매우 충실하다 4.9%(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7〉 교육 내용의 충실성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충실하지 않다	0	0.0
별로 충실하지 않다	37	25.9
충실한 편이다	99	69.2
매우 충실하다	7	4.9
합계	143	100.0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73.6%(78명),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17.0%(18명), 기타 5.7%(6명), 필요성이 없어서 3.8%(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교육사실을 몰랐음, 교육 일정이 기관행사 일정과 겹치거나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등의 견해들이 포함되었다.

〈표 3-78〉 교육을 받지 못한 사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78	73.6
필요성이 없어서	4	3.8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18	17.0
기타	6	5.7
합계	106	100.0

다. 보완되어야 할 교육 내용

청소년 심리, 비행의 원인 및 실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 49.4%(123명), 약간 필요하다 43.4%(108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6.4%(16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0.8%(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9〉 청소년비행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0.8
별로 필요하지 않다	16	6.4
약간 필요하다	108	43.4
매우 필요하다	123	49.4
합계	249	100.0

대상자와의 상담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는 약간 필요하다 47.4%(118명), 매우 필요하다 42.6%(106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9.6%(24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0.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0〉 상담기법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4
별로 필요하지 않다	24	9.6
약간 필요하다	118	47.4
매우 필요하다	106	42.6
합계	249	100.0

국선보조인 활동사례 발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약간 필요하다 46.6%(116명), 매우 필요하다 36.5%(91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16.1%(40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0.8%(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1〉 우수 사례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0.8
별로 필요하지 않다	40	16.1
약간 필요하다	116	46.6
매우 필요하다	91	36.5
합계	249	100.0

비행청소년 사법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약간 필요하다 45.8%(114명), 매우 필요하다 35.7%(89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17.7%(44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0.8%(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2〉 사법제도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0.8
별로 필요하지 않다	44	17.7
약간 필요하다	114	45.8
매우 필요하다	89	35.7
합계	249	100.0

국선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약간 필요하다 54.6%(136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22.5%(56명), 매우 필요하다 21.3%(53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1.6%(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3〉 국선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6
별로 필요하지 않다	56	22.5
약간 필요하다	136	54.6
매우 필요하다	53	21.3
합계	249	100.0

라.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

국선보조인에서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변호사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답이 42.2%(105명),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이 비슷해야 함 34.5%(86명), 상관없다 14.9%(37명), 전문가의 비율이 높아야 함 8.4%(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4〉 국선보조인의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이 비슷해야 함	86	34.5
변호사의 비율이 높아야 함	105	42.2
전문가의 비율이 높아야 함	21	8.4
상관없다	37	14.9
합계	249	100.0

마. 보조인 제도의 운영 및 관리 형태

국선보조인의 운영 및 관리 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답이 44.2%(110명),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42.6%(106명),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12.9%(32명), 기타 0.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5〉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의 형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운영	110	44.2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106	42.6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32	12.9
기타	1	0.4
합계	249	100.0

현행 국선보조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5.5%(96명), 아니다 54.5%(1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6〉 현행 국선보조인 관리의 체계적 운영 여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96	45.5
아니다	115	54.5
합계	211	100.0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가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95.7%(110명), 아니다 4.3%(5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3-87〉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 체계화의 필요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110	95.7
아니다	5	4.3
합계	115	100.0

6. 향후 계획

가. 면담자와의 사후 교류

면담 소년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연락하고 있지 않다 56.4%(119명), 가끔 연락하고 있다 41.7%(88명), 자주 연락하고 있다 1.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8〉 면담소년과 지속적인 사후 교류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연락하지 않고 있다	119	56.4
가끔 연락하고 있다	88	41.7
자주 연락하고 있다	4	1.9
합계	211	100.0

나.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보람

참여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60.2%(127명), 약간 그렇다 38.4%(81명), 전혀 그렇지 않다 0.9%(2명), 별로 그렇지 않다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9〉 업무에 대한 보람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9
별로 그렇지 않다	1	0.5
약간 그렇다	81	38.4
매우 그렇다	127	60.2
합계	211	100.0

앞으로 계속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61.6%(130명), 약간 그렇다 33.2%(70명), 별로 그렇지 않다 4.3%(9명), 전혀 그렇지 않다 0.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0〉 향후 보조인 업무 지속할 의향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9
별로 그렇지 않다	9	4.3
약간 그렇다	70	33.2
매우 그렇다	130	61.6
합계	211	100.0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1.2%(108명), 매우 그렇다 37.4%(79명), 별로 그렇지 않다 9.5%(20명), 전혀 그렇지 않다 1.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1〉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1.9
별로 그렇지 않다	20	9.5
약간 그렇다	108	51.2
매우 그렇다	79	37.4
합계	211	100.0

비행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7.9%(101명), 약간 그렇다 44.1%(93명), 별로 그렇지 않다 6.2%(13명), 전혀 그렇지 않다 1.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2〉 비행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1.9
별로 그렇지 않다	13	6.2
약간 그렇다	93	44.1
매우 그렇다	101	47.9
합계	211	100.0

다. 업무에 있어 어려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8.8%(124명), 별로 그렇지 않다 25.1%(53명), 매우 그렇다 13.3%(28명), 전혀 그렇지 않다 2.8%(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3〉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2.8
별로 그렇지 않다	53	25.1
약간 그렇다	124	58.8
매우 그렇다	28	13.3
합계	211	100.0

보수가 적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49.3%(104명), 매우 그렇다 24.6%(52명), 별로 그렇지 않다 20.4%(43명), 전혀 그렇지 않다 5.7%(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4〉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2	5.7
별로 그렇지 않다	43	20.4
약간 그렇다	104	49.3
매우 그렇다	52	24.6
합계	211	100.0

관련지식이 부족하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58.3%(123명), 약간 그렇다 28.0%(59명), 전혀 그렇지 않다 11.8%(25명), 매우 그렇다 1.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5〉 관련지식의 부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5	11.8
별로 그렇지 않다	123	58.3
약간 그렇다	59	28.0
매우 그렇다	4	1.9
합계	211	100.0

면담시 대상자들이 비협조적이라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58.3%(123명), 전혀 그렇지 않다 24.6%(52명), 약간 그렇다 16.1%(34명), 매우 그렇다 0.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6〉 대상자들이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2	24.6
별로 그렇지 않다	123	58.3
약간 그렇다	34	16.1
매우 그렇다	2	0.9
합계	211	100.0

남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52.1%(110명), 전혀 그렇지 않다 34.1%(72명), 약간 그렇다 12.8%(27명), 매우 그렇다 0.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7〉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2	34.1
별로 그렇지 않다	110	52.1
약간 그렇다	27	12.8
매우 그렇다	2	0.9
합계	211	100.0

국선보조인 간에 상호협조가 부족하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46.9%(99명), 약간 그렇다 35.1%(74명), 전혀 그렇지 않다 11.8%(25명), 매우 그렇다 6.2%(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8〉 국선보조인간 상호협조의 부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5	11.8
별로 그렇지 않다	99	46.9
약간 그렇다	74	35.1
매우 그렇다	13	6.2
합계	211	100.0

처분유형과 시설이 다양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44.5%(94명), 매우 그렇다 27.5%(58명), 별로 그렇지 않다 24.2%(51명), 전혀 그렇지 않다 3.8%(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9〉 처분유형과 시설의 다양성 한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	3.8
별로 그렇지 않다	51	24.2
약간 그렇다	94	44.5
매우 그렇다	58	27.5
합계	211	100.0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라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0.7%(107명), 별로 그렇지 않다 26.5%(56명), 매우 그렇다 20.9%(44명), 전혀 그렇지 않다 1.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0〉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1.9
별로 그렇지 않다	56	26.5
약간 그렇다	107	50.7
매우 그렇다	44	20.9
합계	211	100.0

국선보조인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라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46.0%(97명), 별로 그렇지 않다 33.6%(71명), 매우 그렇다 17.1%(36명), 전혀 그렇지 않다 3.3%(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1〉 국선보조인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	3.3
별로 그렇지 않다	71	33.6
약간 그렇다	97	46.0
매우 그렇다	36	17.1
합계	211	100.0

대상자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43.6%(92명), 약간 그렇다 40.8%(86명), 매우 그렇다 8.1%(17명), 전혀 그렇지 않다 7.6%(1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2〉 대상자의 개선가능성에 대한 신념의 부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6	7.6
별로 그렇지 않다	92	43.6
약간 그렇다	86	40.8
매우 그렇다	17	8.1
합계	211	100.0

대상자가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50.7%(107명), 별로 그렇지 않다 40.8%(86명), 약간 그렇다 7.6%(16명), 매우 그렇다 0.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3〉 대상자의 해코지 가능성에 대한 염려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07	50.7
별로 그렇지 않다	86	40.8
약간 그렇다	16	7.6
매우 그렇다	2	0.9
합계	211	100.0

라.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완점

활동사례집 및 회보 발간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4.0%(114명), 별로 그렇지 않다 27.0%(57명), 매우 그렇다 16.6%(35명), 전혀 그렇지 않다 2.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4〉 활동사례집 및 회보 발간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2.4
별로 그렇지 않다	57	27.0
약간 그렇다	114	54.0
매우 그렇다	35	16.6
합계	211	100.0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6.4%(119명), 별로 그렇지 않다 22.3%(47명), 매우 그렇다 19.0%(40명), 전혀 그렇지 않다 2.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5〉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확대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2.4
별로 그렇지 않다	47	22.3
약간 그렇다	119	56.4
매우 그렇다	40	19.0
합계	211	100.0

국선보조인 워크숍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1.2%(108명), 별로 그렇지 않다 27.0%(57명), 매우 그렇다 19.4%(41명), 전혀 그렇지 않다 2.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6〉 국선보조인 워크숍 활성화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2.4
별로 그렇지 않다	57	27.0
약간 그렇다	108	51.2
매우 그렇다	41	19.4
합계	211	100.0

교육 및 연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56.9%(120명), 매우 그렇다 23.7%(50명), 별로 그렇지 않다 18.0%(38명), 전혀 그렇지 않다 1.4%(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7〉 교육 및 연수 강화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1.4
별로 그렇지 않다	38	18.0
약간 그렇다	120	56.9
매우 그렇다	50	23.7
합계	211	100.0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44.1%(93명), 별로 그렇지 않다 29.4%(62명), 매우 그렇다 25.6%(54명), 전혀 그렇지 않다 0.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8〉 보조인의 역할 및 권한 강화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9
별로 그렇지 않다	62	29.4
약간 그렇다	93	44.1
매우 그렇다	54	25.6
합계	211	100.0

법원의 감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51.7%(109명), 약간 그렇다 37.0%(78명), 매우 그렇다 8.5%(18명), 전혀 그렇지 않다 2.8%(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9〉 법원의 감독 강화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2.8
별로 그렇지 않다	109	51.7
약간 그렇다	78	37.0
매우 그렇다	18	8.5
합계	211	100.0

법원의 예산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45.5%(96명), 매우 그렇다 44.1%(93명), 별로 그렇지 않다 10.0%(21명), 전혀 그렇지 않다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0〉 법원의 예산지원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별로 그렇지 않다	21	10.0
약간 그렇다	96	45.5
매우 그렇다	93	44.1
합계	211	100.0

국선보조인에 대한 포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 40.3%(85명), 매우 그렇다 29.4%(62명), 별로 그렇지 않다 28.0%(59명), 전혀 그렇지 않다 2.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1〉 국선보조인에 대한 포상의 확대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2.4
별로 그렇지 않다	59	28.0
약간 그렇다	85	40.3
매우 그렇다	62	29.4
합계	211	100.0

제3절 성별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 성별과 면담업무

성별에 따라 면담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남성의 평균은 2.53(SD=0.794), 여성의 평균은 2.70(SD=0.827)로 나타나서 여성이 남성보다 면담시간이 좀 더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2〉 성별 면담시간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면담시간	남성	117	2.53	.794	-1.53
	여성	94	2.70	.827	

성별에 따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면담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남성의 평균은 2.81(SD=0.776), 여성의 평균은 3.00(SD=0.790)로 나타나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면담시간이 좀 더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3〉 성별 면담시간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적정 면담시간	남성	117	2.81	.776	-1.736
	여성	94	3.00	.790	

성별에 따른 접견횟수의 차이를 보면, 남성은 두 번 이상 접견한 경우가 56.4%(66명)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62.8%(59명)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보조인이 남성들보다 두 번 이상 접견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114〉 성별 접견횟수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두 번 이상	66	56.4	59	62.8	125	59.2
두 번 미만	51	43.6	35	37.2	86	40.8
합계	117	100.0	94	100.0	211	100.0

$\chi^2=.872$, $df=1$, n.s.

성별에 따라 소년의 관계인을 만났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관계인과 만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105명, 89.7%), 여성(89명, 94.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5〉 성별 관계인과의 접견 여부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예	105	89.7	89	94.7	194	91.9
아니오	12	10.3	5	5.3	17	8.1
합계	117	100.0	94	100.0	211	100.0

$\chi^2=1.715$, $df=1$, n.s.

성별에 따른 면담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상자와의 정서적 공감정도는 남성(M=3.24, SD=0.408), 여성(M=3.34, SD=0.42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면담장소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남성(M=3.05, SD=0.610), 여성(M=2.88, SD=0.630)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039$, $p<.05$). 이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 보조인들이 면담장소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추론된다.

〈표 3-116〉 성별 면담상황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대상자와의 정서적 공감도	남성	117	3.24	.408	-1.714
	여성	94	3.34	.424	
면담장소에 대한 만족도	남성	117	3.05	.610	2.039*
	여성	94	2.88	.630	

* $p < .05$

2. 성별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의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남성($M=2.80$, $SD=1.052$), 여성($M=3.32$, $SD=0.87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896$, $p < .001$).

〈표 3-117〉 성별 의견서 작성 소요시간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의견서 작성 소요시간	남성	117	2.80	1.052	-3.896***
	여성	94	3.32	.870	

*** $p < .001$

성별에 따라 국선보조인이 처분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소년의 성장환경의 경우 남성($M=3.38$, $SD=0.434$), 여성($M=3.53$, $SD=0.388$)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소년의 성장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88$, $p < .05$).

소년의 범죄경력에의 경우 남성($M=3.32$, $SD=0.519$), 여성($M=3.27$, $SD=0.506$)으로 남성보조인들이 소년의 범죄경력을 더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범가능성의 경우 남성($M=3.29$, $SD=0.446$), 여성($M=3.33$, $SD=0.449$)으로 여성보조인들이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의 경우 남성($M=3.51$, $SD=0.373$), 여성($M=3.60$, $SD=0.367$)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보조인들이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노력의 경우 남성(M=3.08, SD=0.745), 여성(M=2.97, SD=0.663)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조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여부를 더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보조인 의견서의 처분 결정을 하는데 있어 남성보조인들은 소년의 범죄경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여부를 더 고려하고 있는 반면, 여성보조인의 경우 소년의 성장환경, 재범가능성,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남성 보조인들은 처분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소년을 둘러싼 주변 상황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표 3-118〉 성별 의견결정시 고려 사항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소년의 성장환경	남성	117	3.38	.434	-2.488*
	여성	94	3.53	.388	
소년의 범죄경력	남성	117	3.32	.519	.632
	여자	94	3.27	.506	
재범가능성	남성	117	3.29	.446	-.632
	여성	94	3.33	.449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	남성	117	3.51	.373	-1.867
	여자	94	3.60	.367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남성	117	3.08	.745	1.122
	여자	94	2.97	.663	

*p<.05

보조인 의견서의 형식을 작성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 내 나름의 양식이 78.7%(92명)으로 가장 높았고, 판사가 원하는 양식(12.0%, 14명), 양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9.4%, 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내 나름의 양식을 정해두는 경우가 80.9%(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우에 따라 작성 10.6%(10명), 판사가 원하는 양식 8.5%(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9〉 성별 의견서 형식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판사의 권유 (판사가 권하는 양식)	14	12.0	8	8.5	22	10.4
내 나름의 양식	92	78.6	76	80.9	168	79.6
양식이 따로 없음 (경우에 따라 작성)	11	9.4	10	10.6	21	10.0
합계	117	100.0	94	100.0	211	100.0

 $\chi^2=.709$, $df=2$, n.s.

의견서의 형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필요하다는 대답보다 높았는데, 남성의 경우 57.3%(67명), 여성의 경우 54.3%(51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국선보조인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정형화된 형식을 따르는 것 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획일화된 형식의 의견서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표 3-120〉 성별 의견서 형식의 통일성 필요 여부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50	42.7	43	45.7	93	44.1
필요하지 않다	67	57.3	51	54.3	118	55.9
합계	117	100.0	94	100.0	211	100.0

 $\chi^2=.192$, $df=1$, n.s.

3. 성별과 업무에 대한 인식

다음은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M=3.04, SD=0.454), 여성(M=3.24, SD=0.444)으로 여성이 업무에 대한 관심정도가 남성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고,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272, p<.01).

성별에 따른 업무에 있어 실망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남성(M=2.31, SD=0.601), 여성(M=2.18, SD=0.543)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보조인 업무에 대해 더 실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M=2.34, SD=0.709), 여성(M=2.27, SD=0.691)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인의 견해와 판사의 견해의 일치정도에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M=2.85, SD=0.702), 여성(M=3.05, SD=0.593)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조인이 남성보조인보다 보조인 의견이 판사의 최종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320, p<.05).

〈표 3-121〉 성별 업무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	남성	117	3.04	.454	-3.272**
	여성	94	3.24	.444	
업무에 대한 실망	남성	117	2.31	.601	1.644
	여성	94	2.18	.543	
내 판단에 대한 확신	남성	117	2.34	.709	.782
	여성	94	2.27	.691	
보조인 견해와 판사 견해의 일치	남성	117	2.85	.702	-2.320*
	여성	94	3.05	.593	

*p<.05, **p<.01

성별에 따른 업무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M=3.28, SD=0.414), 여성(M=3.43, SD=0.420)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보조인 업무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520$, $p<.05$).

〈표 3-122〉 성별 업무의 자신감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업무에 대한 자신감	남성	117	3.28	.414	-2.520*
	여성	94	3.43	.420	

* $p<.05$

4. 성별과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소년이 예상처분을 물어오는 경우 답변을 해 주는 데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M=2.36, SD=0.895), 여성(M=2.05, SD=0.908)인 것으로 나타나 예상되는 소년의 처분결과를 여성보조인보다는 남성보조인이 소년에게 더 많이 대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450$, $p<.05$).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면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장래희망 등 소년의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M=2.98, SD=0.851), 여성(M=3.41, SD=0.694)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보조인이 대상자의 장래계획에 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973$, $p<.001$).

시설내 처분이 적합한 아이이지만, 사회내 처우로 의견을 제시하려는 정도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M=2.67, SD=0.799), 여성(M=2.38, SD=0.705)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다는 남성이 시설내 처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내 처우를 제시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701$, $p<.01$).

〈표 3-123〉 성별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소년의 예상처분 질문에 대한 답변	남성	117	2.36	.895	2.450*
	여성	94	2.05	.908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장래 계획에 대한 질문	남성	117	2.98	.851	-3.973***
	여성	94	3.41	.694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지만, 사회내처우 제시	남성	117	2.67	.799	2.701**
	여성	94	2.38	.705	

*p<.05, **p<.01, ***p<.001

5. 성별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보수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남성(M=2.17, SD=0.769), 여성(M=2.14, SD=0.682)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적절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4〉 성별 보수수준의 적절성 인식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보수 수준의 적절성	남성	117	2.17	.769	.322
	여성	94	2.14	.682	

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M=3.17, SD=0.632), 여성(M=3.24, SD=0.526)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는 정기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5〉 성별에 따른 정기적 교육의 필요성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남성	143	3.17	.632	-.808
	여성	106	3.24	.526	

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비행에 대한 이해의 경우 남성(M=3.37, SD=0.668), 여성(M=3.47, SD=0.620), 상담기법의 경우 남성(M=3.31, SD=0.642), 여성(M=3.34, SD=0.689), 우수사례 소개의 경우 남성(M=3.13, SD=0.724), 여성(M=3.26, SD=0.721), 사법처리절차의 경우 남성(M=3.11, SD=0.723), 여성(M=3.24, SD=0.750), 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의 경우 남성(M=2.95, SD=0.705), 여성(M=2.96, SD=0.7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완되어야 할 교육내용의 전반에 있어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126〉 성별 교육의 보완 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청소년비행에 대한 이해	남성	143	3.37	.668	-1.217
	여성	106	3.47	.620	
상담기법	남성	143	3.31	.642	-3.376
	여성	106	3.34	.689	
우수사례 소개	남성	143	3.13	.724	-1.417
	여성	106	3.26	.721	
사법처리절차	남성	143	3.11	.723	-1.316
	여성	106	3.24	.750	
보조인이 갖추어야할 소양	남성	143	2.95	.705	-.123
	여성	106	2.96	.716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변호사 비율이 높아야 한다가 41.3%(59명), 비슷해야 한다가 35.7%(51명), 상관없다 14.7%(21명), 전문가 비율이 높아야 한다 8.4%(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변호사 비율이 높아야 한다 43.4%(46명), 비슷해야 한다 33.0%(35명), 상관없다 15.1%(16명), 전문가 비율이 높아야 한다 8.5%(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 국선보조인의 직업에 있어 변호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7〉 성별 보조인 자격에 있어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에 대한 인식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비슷해야 한다	51	35.7	35	33.0	86	34.5
변호사 비율이 높아야 한다	59	41.3	46	43.4	105	42.2
전문가 비율이 높아야 한다	12	8.4	9	8.5	21	8.4
상관없다	21	14.7	16	15.1	37	14.9
합계	143	100.0	106	100.0	249	100.0

$\chi^2=.197, df=3, n.s.$

국선보조인의 운영과 관리 형태에 대해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45.5%(65명),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 42.0%(60명),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12.6%(18명)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47.2%(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38.7%(41명),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13.2%(14명), 기타 0.9%(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보조인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남성보조인의 경우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과 관리 형태를 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28〉 성별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 형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	60	42.0	50	47.2	110	44.2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65	45.5	41	38.7	106	42.6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18	12.6	14	13.2	32	12.9
기타	-	-	1	0.9	1	0.4
합계	143	100.0	106	100.0	249	100.0

$\chi^2=2.398, df=3, n.s.$

현행 국선보조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다가 51.3%(60명), 여성 58.5%(55명)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현행 국선보조인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129〉 성별 보조인 관리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차이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그렇다	57	48.7	39	41.5	96	45.5
아니다	60	51.3	55	58.5	115	54.5
합계	117	100.0	94	100.0	211	100.0

$\chi^2=1.098$, $df=1$, n.s.

다음으로 국선보조인 활동의 어려움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도적 한계의 경우 남성($M=2.73$, $SD=0.648$), 여성($M=3.06$, $SD=0.612$)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국선보조인의 제도적 한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779$, $p<.001$).

대상자와의 갈등의 경우 남성($M=1.79$, $SD=0.527$), 여성($M=1.75$, $SD=0.486$)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는 대상자와 갈등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인간 상호협조의 부족에 대해서는 남성($M=2.27$, $SD=0.750$), 여성($M=2.46$, $SD=0.785$)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보조인간 상호협조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M=2.90$, $SD=0.687$), 여성($M=2.73$, $SD=0.675$)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보조인 활동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개선에 대한 신념의 부족에 있어서는 남성($M=2.44$, $SD=0.674$)보다는

여성(M=2.56, SD=0.837)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인 보수의 부족에 대해서는 남성(M=2.92, SD=0.800), 여성(M=2.94, SD=0.853)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보조인의 보수가 더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지식의 부족에 대해서는 남성(M=2.21, SD=0.689), 여성(M=2.19, SD=0.627)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관련지식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0〉 성별 보조인 활동 어려움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제도적 한계	남성	117	2.73	.648	-3.779***
	여성	94	3.06	.612	
대상자와의 갈등	남성	117	1.79	.527	.611
	여성	94	1.75	.486	
보조인간 상호협조 부족	남성	117	2.27	.750	-1.734
	여성	94	2.46	.785	
시간적 여유 부족	남성	117	2.90	.687	1.730
	여성	94	2.73	.675	
대상자의 개선에 대한 신념의 부족	남성	117	2.44	.674	-1.202
	여성	94	2.56	.837	
적은 보수	남성	117	2.92	.800	-.115
	여성	94	2.94	.853	
관련지식의 부족	남성	117	2.21	.689	.149
	여성	94	2.19	.627	

***p<.001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완점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교육 및 연수의 강화에 있어서는 남성(M=2.82, SD=0.487), 여성(M=2.86, SD=0.508)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예산의 지원과 보조인의 역할 및 권한의 강화에 대해서는 남성(M=3.09, SD=0.618), 여성(M=3.07, SD=0.592)으로 분석되어 남성이 여성보다 보조인에 대해 역할 및 권한의 강화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1〉 성별 보조인 제도의 보완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교육 및 연수의 강화	남성	117	2.82	.487	-.481
	여성	94	2.86	.508	
예산지원과 역할 및 권한의 강화	남성	117	3.09	.618	.207
	여자	94	3.07	.592	

6. 성별과 향후 계획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M=1.39, SD=0.525), 여성(M=1.53, SD=0.543)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조인이 남성보조인보다는 사후에도 소년들과 교류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2〉 성별 대상자와의 지속적 교류정도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대상자와의 사후 교류	남성	117	1.39	.525	-1.880
	여성	94	1.53	.543	

업무에 대한 보람과 앞으로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M=3.38, SD=0.554), 여성(M=3.51, SD=0.520)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조인이 남성보조인보다는 업무에 대한 보람이 더 크고 앞으로도 계속할 의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3〉 성별 업무에 대한 보람과 지속 의향의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업무에 대한 보람과 지속의향	남성	117	3.38	.554	-1.681
	여성	94	3.51	.520	

제4절 직업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 직업과 면담업무

직업에 따라 면담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변호사의 평균은 2.39(SD=0.730), 전문가의 평균은 3.25(SD=0.705)로 나타나서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실제 면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7.424, p<.001$).

〈표 3-134〉 직업별 면담시간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면담시간	변호사	158	2.39	.730	-7.424***
	전문가	53	3.25	.705	

*** $p<.001$

직업에 따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면담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변호사의 평균은 2.75(SD=0.748), 전문가의 평균은 3.34(SD=0.732)로 나타나서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면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5.018, p<.001$).

〈표 3-135〉 직업별 적정 면담시간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적정 면담시간	변호사	158	2.75	.748	-5.018***
	전문가	53	3.34	.732	

*** $p<.001$

직업에 따른 접견횟수의 차이를 보면, 변호사는 두 번이상이 54.4%(86명)인 것에 비해 전문가의 경우 두 번 이상은 73.6%(39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대상자와 접견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6〉 직업별 접견횟수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직업				전체	
	변호사		전문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두번이상	86	54.4	39	73.6	125	59.2
두번미만	72	45.6	14	26.4	86	40.8
합계	158	100.0	53	100.0	211	100.0

 $\chi^2=6.030$, $df=1$, $p<.05$

직업에 따라 소년의 관계인을 만났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관계인과 만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91.1%, 144명), 전문가(94.3%, 50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7〉 직업별 관계인과의 접견 여부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직업				전체	
	변호사		전문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예	144	91.1	50	94.3	194	91.9
아니오	14	8.9	3	5.7	17	8.1
합계	158	100.0	53	100.0	211	100.0

 $\chi^2=.549$, $df=1$, n.s.

직업에 따른 면담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상자와의 정서적 공감정도는 변호사($M=3.21$, $SD=0.403$), 전문가($M=3.49$, $SD=0.388$)로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장소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변호사($M=3.00$, $SD=0.567$), 전문가($M=2.92$, $SD=0.770$)로 변호사가 전문가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8〉 직업별 면담상황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대상자와의 정서적 공감	변호사	158	3.21	.403	-4.485***
	전문가	53	3.49	.388	
면담장소에 대한 만족도	변호사	158	3.00	.567	.674
	전문가	53	2.92	.770	

***p<.001

2. 직업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의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변호사(M=2.87, SD=1.035), 전문가(M=3.53, SD=0.723)로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5.124, p<.001).

〈표 3-139〉 직업별 의견서 작성 소요시간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의견서 작성 소요시간	변호사	158	2.87	1.035	-5.124***
	전문가	53	3.53	.723	

***p<.001

직업에 따라 국선보조인이 처분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소년의 성장환경의 경우 변호사(M=3.40, SD=0.436), 여성(M=3.58, SD=0.334)으로 나타나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소년의 성장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38, p<.01).

소년의 범죄경력에의 경우 변호사(M=3.32, SD=0.499), 전문가(M=3.22, SD=0.550)로 변호사들이 소년의 범죄경력을 더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범가능성의 경우 변호사(M=3.30, SD=0.444), 전문가(M=3.33, SD=0.459)로 전문가들이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의 경우 변호사(M=3.53, SD=0.378), 여성(M=3.60,

SD=0.352)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노력의 경우 변호사(M=2.97, SD=0.731), 전문가(M=3.19, SD=0.622)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여부를 더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보조인 의견서의 처분 결정을 하는데 있어 소년의 범죄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있어 전문가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들은 과거 소년의 범죄사실 관련 사항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의견서를 작성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향후 개선 가능성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3-140〉 직업별 처분 결정시 고려 사항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소년의 성장환경	변호사	158	3.40	.436	-3.038**
	전문가	53	3.58	.334	
소년의 범죄경력	변호사	158	3.32	.499	1.302
	전문가	53	3.22	.550	
재범가능성	변호사	158	3.30	.444	-.416
	전문가	53	3.33	.459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	변호사	158	3.53	.378	-1.222
	전문가	53	3.60	.352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변호사	158	2.97	.731	-1.911
	전문가	53	3.19	.622	

**p<.01

보조인 의견서의 형식을 작성하는데 있어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변호사의 경우 내 나름의 양식이 81.0%(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양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10.8%, 17명), 판사가 원하는 양식(8.2%, 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내 나름의 양식을 정해두는 경우가 75.5%(40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가 원하는 양식 17.0%(9명), 경우에 따라 작성 7.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41〉 직업별 의견서 형식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직업				전체	
	변호사		전문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판사의 권유 (판사가 원하는 양식)	13	8.2	9	17.0	22	10.4
내 나름의 양식	128	81.0	40	75.5	168	79.6
양식이 따로 없음 (경우에 따라 작성)	17	10.8	4	7.5	21	10.0
합계	158	100.0	53	100.0	211	100.0

$\chi^2=3.481$, $df=2$, $n.s.$

의견서의 형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직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가 62.0%(98명)인 것에 반해, 전문가의 경우 필요하다가 62.3%(33명)인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변호사의 경우 실제 의견서를 작성할 때도 내 나름의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의견서의 형식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반면, 전문가들의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현재 통일된 형태의 의견서 양식이 없음으로 나름의 방법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판사가 원하는 방식도 꽤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수가 의견서의 양식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표 3-142〉 직업별 의견서 형식의 통일성 필요 여부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직업				전체	
	변호사		전문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60	38.0	33	62.3	93	44.1
필요하지 않다	98	62.0	20	37.7	118	55.9
합계	158	100.0	53	100.0	211	100.0

$\chi^2=9.499$, $df=1$, $p<.01$

3. 직업과 업무에 대한 인식

다음은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에 있어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M=3.03, SD=0.447), 전문가(M=3.43, SD=0.358)로 전문가가 업무에 대한 관심정도가 변호사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고, 집단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6.564$, $p<.001$).

직업에 따른 업무에 있어 실망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변호사(M=2.31, SD=0.537), 전문가(M=2.08, SD=0.663)로 나타나 전문가보다 변호사가 보조인 업무에 대해 더 실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484$, $p<.05$).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에 있어 직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M=2.19, SD=0.679), 전문가(M=2.66, SD=0.649)로 나타나,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415$, $p<.001$).

보조인의 견해와 판사의 견해의 일치정도에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M=2.82, SD=0.647), 전문가(M=3.30, SD=0.575)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보조인 의견이 판사의 최종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857$, $p<.001$).

이를 종합해보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전문가들이 변호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보조인들이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높고 판사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잘 반영한다는 분석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표 3-143〉 직업별 업무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	변호사	158	3.03	.447	-6.564***
	전문가	53	3.43	.358	
업무에 대한 실망	변호사	158	2.31	.537	2.484*
	전문가	53	2.08	.663	
내 판단에 대한 확신	변호사	158	2.19	.679	-4.415***
	전문가	53	2.66	.649	
보조인 견해와 판사 견해의 일치	변호사	158	2.82	.647	-4.857***
	전문가	53	3.30	.575	

*p<.05, ***p<.001

직업에 따른 업무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M=3.28, SD=0.405), 전문가(M=3.55, SD=0.413)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보조인 업무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186, p<.001).

이러한 결과는 위 〈표 3-143〉의 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3-144〉 직업별 업무의 자신감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업무에 대한 자신감	변호사	158	3.28	.405	-4.186***
	전문가	53	3.55	.413	

***p<.001

4. 직업과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소년이 예상처분을 물어오는 경우 답변을 해 주는 데 있어 직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M=2.30, SD=0.914), 전문가(M=2.00, SD=0.877)인 것으로 나타나 예상되는 소년의 처분결과를 전문가보다는 변호사들이 소년에게 더 많이 대담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114, p<.05).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면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장래희망 등 소년의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있어 직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M=3.15, SD=0.820), 전문가(M=3.26, SD=0.788)인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보다는 전문가들이 대상자의 장래계획에 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내 처분이 적합한 아이이지만, 사회내 처우로 의견을 제시하려는 정도에 있어 직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M=2.56, SD=0.752), 전문가(M=2.47, SD=0.823)인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가 전문가보다 시설내 처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내 처우를 제시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45〉 직업별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소년의 예상처분 질문에 대한 답변	변호사	158	2.30	.914	2.114*
	전문가	53	2.00	.877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장래 계획에 대한 질문	변호사	158	3.15	.820	-.919
	전문가	53	3.26	.788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지만, 사회내 처우 제시	변호사	158	2.56	.752	.749
	전문가	53	2.47	.823	

*p<.05

5. 직업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보수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변호사(M=2.03, SD=0.672), 전문가(M=2.53, SD=0.775)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적절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171, p<.001).

〈표 3-146〉 직업별 보수수준의 적절성 인식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보수수준의 적절성	변호사	158	2.03	.672	-4.171***
	전문가	53	2.53	.775	

***p<.001

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직업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M=3.19, SD=0.618), 전문가(M=3.24, SD=0.473)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가 변호사보다는 정기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7〉 직업별 정기적 교육의 필요성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변호사	158	3.19	.618	-.563
	전문가	53	3.24	.473	

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직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비행에 대한 이해의 경우 변호사(M=3.36, SD=0.661), 전문가(M=3.61, SD=0.564), 상담기법의 경우 변호사(M=3.30, SD=0.661), 전문가(M=3.41, SD=0.659), 우수사례 소개의 경우 변호사(M=3.13, SD=0.738), 전문가(M=3.41, SD=0.630), 사법처리절차의 경우 변호사(M=3.13, SD=0.741), 전문가(M=3.28, SD=0.712), 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의 경우 변호사(M=2.85, SD=0.694), 전문가(M=3.35, SD=0.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완되어야 할 교육내용의 전반에 있어 전문가들이 변호사들보다는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이해(t=-2.555, p<.05), 우수사례 소개(t=-2.534, p<.05), 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t=-4.847, p<.001)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8〉 직업별 교육의 보완 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청소년비행에 대한 이해	변호사	195	3.36	.661	-2.555*
	전문가	54	3.61	.564	
상담기법	변호사	195	3.30	.661	-1.083
	전문가	54	3.41	.659	
우수사례 소개	변호사	195	3.13	.738	-2.534*
	전문가	54	3.41	.630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사법처리절차	변호사	195	3.13	.741	-1.278
	전문가	54	3.28	.712	
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	변호사	195	2.85	.694	-4.847***
	전문가	54	3.35	.619	

* $p < .05$, *** $p < .001$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에 있어 직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비율이 높아야 한다가 53.3%(104명), 비슷해야 한다가 32.3%(63명), 상관없다 12.3%(24명), 전문가 비율이 높아야 한다 2.1%(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비슷해야 한다 42.6%(23명), 전문가 비율이 높아야 한다 31.5%(17명), 상관없다 24.1%(13명), 변호사 비율이 높아야 한다 1.9%(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대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의 경우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높았고, 둘 중 어떤 직업의 비율이 더 높아도 상관없다는 대답도 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9〉 직업별 보조인 자격에 있어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에 대한 인식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직업				전체	
	변호사		전문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비슷해야 한다	63	32.3	23	42.6	86	34.5
변호사 비율이 높아야 한다	104	53.3	1	1.9	105	42.2
전문가 비율이 높아야 한다	4	2.1	17	31.5	21	8.4
상관없다	24	12.3	13	24.1	37	14.9
합계	195	100.0	54	100.0	249	100.0

$\chi^2=75.245$, $df=3$, $p < .001$

국선보조인의 운영과 관리 형태에 대해 직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변호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 48.7%(95명),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36.9%(72명),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13.8%(27명), 기타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63.0%(34명),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 27.8%(15명),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9.3%(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보조인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전문가의 경우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는 반면, 변호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과 관리 형태를 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0> 직업별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 형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직업				전체	
	변호사		전문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	95	48.7	15	27.8	110	44.2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72	36.9	34	63.0	106	42.6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27	13.8	5	9.3	32	12.9
기타	1	0.5	-	-	1	0.4
합계	195	100.0	54	100.0	249	100.0

$\chi^2=11.903$, $df=3$, $p<.01$

현행 국선보조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변호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가 54.4%(86명), 전문가의 경우 54.7%(29명)인 것으로 나타나 직업에 관계없이 현행 국선보조인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151〉 직업별 보조인 관리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차이

(단위: 명, %)

구분	직업				전체	
	변호사		전문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그렇다	72	45.6	24	45.3	96	45.5
아니다	86	54.4	29	54.7	115	54.5
합계	158	100.0	53	100.0	211	100.0

 $\chi^2=.001$, $df=1$, n.s.

다음으로 국선보조인 활동의 어려움에 있어 직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도적 한계의 경우 변호사(M=2.88, SD=0.673), 전문가(M=2.87, SD=0.589)인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가 전문가보다 국선보조인의 제도적 한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와의 갈등의 경우 변호사(M=1.81, SD=0.510), 전문가(M=1.67, SD=0.494)인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가 전문가보다는 대상자와 갈등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인간 상호협조의 부족에 대해서는 변호사(M=2.36, SD=0.742), 전문가(M=2.34, SD=0.854)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보다는 변호사가 보조인간 상호협조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M=2.92, SD=0.638), 전문가(M=2.55, SD=0.748)인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가 전문가보다 보조인 활동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232$, $p<.01$).

대상자의 개선에 대한 신념의 부족에 있어서는 변호사(M=2.51, SD=0.755)가 전문가(M=2.45, SD=0.748) 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인 보수의 부족에 대해서는 변호사(M=3.06, SD=0.763), 전문가(M=2.53, SD=0.868)인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가 전문가보다는 보조인의 보수가 더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998$, $p<.001$).

관련지식의 부족에 대해서는 변호사(M=2.20, SD=0.700), 전문가(M=2.21, SD=

0.532)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관련지식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2〉 직업별 보조인 활동 어려움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제도적 한계	변호사	158	2.88	.673	.033
	전문가	53	2.87	.589	
대상자와의 갈등	변호사	158	1.81	.510	1.814
	전문가	53	1.67	.494	
보조인간 상호협조 부족	변호사	158	2.36	.742	.173
	전문가	53	2.34	.854	
시간적 여유 부족	변호사	158	2.92	.638	3.232**
	전문가	53	2.55	.748	
대상자의 개선에 대한 신념의 부족	변호사	158	2.51	.755	.447
	전문가	53	2.45	.748	
적은 보수	변호사	158	3.06	.763	3.998***
	전문가	53	2.53	.868	
관련지식의 부족	변호사	158	2.20	.700	-.123
	전문가	53	2.21	.532	

p<.01, *p<.001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완점에 대한 직업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교육 및 연수의 강화에 있어서는 변호사(M=2.83, SD=0.490), 전문가(M=2.87, SD=0.516)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가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예산의 지원과 보조인의 역할 및 권한의 강화에 대해서는 변호사(M=3.12, SD=0.611), 전문가(M=2.97, SD=0.578)로 분석되어 변호사가 전문가보다 보조인에 대해 역할 및 권한의 강화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3〉 직업별 보조인 제도의 보완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교육 및 연수의 강화	변호사	158	2.83	.490	-.525
	전문가	53	2.87	.516	
예산지원과 역할 및 권한의 강화	변호사	158	3.12	.611	1.562
	전문가	53	2.97	.578	

6. 직업과 향후 계획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M=1.34, SD=0.487), 전문가(M=1.81, SD=0.521)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사후에도 소년들과 교류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6.049$, $p<.001$).

〈표 3-154〉 직업별 대상자와의 지속적 교류정도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대상자와의 교류	변호사	158	1.34	.487	-6.049***
	전문가	53	1.81	.521	

*** $p<.001$

업무에 대한 보람과 앞으로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직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변호사(M=3.35, SD=0.564), 전문가(M=3.69, SD=0.370)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업무에 대한 보람이 더 크고 앞으로도 계속할 의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집단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929$, $p<.001$).

〈표 3-155〉 직업별 업무에 대한 보람과 지속 의향의 차이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t
업무에 대한 보람과 지속의향	변호사	158	3.35	.564	-4.929***
	전문가	53	3.69	.370	

*** $p<.001$

제5절 지역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

1. 지역과 면담업무

지역에 따라 면담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부산·경남권(M=3.22, SD=0.801), 대전(M=3.10, SD=0.994) 지역이 면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M=2.14, SD=0.690), 전주(M=2.00, SD=0)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면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858, df=8). 사후검정 결과 부산·경남권 지역이 서울·수도권 지역, 대구지역, 전주지역, 청주지역, 제주지역과 각각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6〉 지역별 면담시간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면담시간	서울·수도권	124	2.54	.769	3.858***
	부산·경남권	27	3.22	.801	
	대구	19	2.47	.841	
	광주	8	2.50	.535	
	대전	10	3.10	.994	
	전주	5	2.00	.000	
	춘천	2	2.50	.707	
	청주	9	2.22	.667	
	제주	7	2.14	.690	
	합계	211	2.61	.812	

***p<.001, df=8

지역에 따라 보조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면담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대전(M=3.40, SD=0.843), 부산·경남권(M=3.26, SD=0.712) 지역이 높게 나왔고, 광주(M=2.50, SD=0.535), 춘천(M=2.50, SD=0.707) 지역이 낮게 나왔다.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F=2.197, df=8), 사후검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157〉 지역별 적정 면담시간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적정 면담시간	서울·수도권	124	2.89	.788	2.197*
	부산·경남권	27	3.26	.712	
	대구	19	2.74	.806	
	광주	8	2.50	.535	
	대전	10	3.40	.843	
	전주	5	2.60	.548	
	춘천	2	2.50	.707	
	청주	9	2.56	.726	
	제주	7	2.57	.787	
	합계	211	2.90	.786	

* $p < .05$, $df=8$

지역에 따른 접견횟수의 차이를 보면, 두 번이상 접견하는 지역이 부산·경남(81.5%, 22명), 대전(80.0%, 8명), 전주(80.0%, 4명), 제주(71.4%, 5명)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36.8%, 7명), 청주(22.2%, 2명) 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8〉 지역별 접견횟수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지역									전체
	서울 수도권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청주	제주	
두번 이상	72 (58.1)	22 (81.5)	7 (36.8)	5 (62.5)	8 (80.0)	4 (80.0)	-	2 (22.2)	5 (71.4)	125 (59.2)
두번 미만	52 (41.9)	5 (18.5)	12 (63.2)	3 (37.5)	2 (20.0)	1 (20.0)	2 (100.0)	7 (77.8)	2 (28.6)	86 (40.8)
합계	124 (100.0)	27 (100.0)	19 (100.0)	8 (100.0)	10 (100.0)	5 (100.0)	2 (100.0)	9 (100.0)	7 (100.0)	211 (100.0)

 $\chi^2=20.708$, $df=8$, $p < 0.01$

지역에 따라 소년의 관계인을 만났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춘천(50.0%, 1명)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관계인과 만난 적이 있다는 대답이 과반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광주, 대전, 전주지역의 경우 보조인

전원이 관계인들과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9〉 지역별 관계인과의 접견 여부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지역									전체
	서울 수도권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청주	제주	
예	115 (92.7)	26 (96.3)	17 (89.5)	8 (100.0)	10 (100.0)	5 (100.0)	1 (50.0)	6 (66.7)	6 (85.7)	194 (91.9)
아니오	9 (7.3)	1 (3.7)	2 (10.5)	-	-	-	1 (50.0)	3 (33.3)	1 (14.3)	17 (8.1)
합계	124 (100.0)	27 (100.0)	19 (100.0)	8 (100.0)	10 (100.0)	5 (100.0)	2 (100.0)	9 (100.0)	7 (100.0)	211 (100.0)

$\chi^2=15.848, df=8, p<0.05$

지역에 따른 면담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상자와의 정서적 공감정도는 춘천(M=3.90, SD=0.141) 지역이 특히 높게 나타났고, 대구(M=3.41, SD=0.374) 지역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주(M=3.09, SD=0.437)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160〉 지역별 대상자와의 정서적 공감정도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대상자와의 정서적 공감	서울·수도권	124	3.26	.423	1.269
	부산·경남권	27	3.32	.448	
	대구	19	3.41	.374	
	광주	8	3.33	.301	
	대전	10	3.16	.430	
	전주	5	3.32	.303	
	춘천	2	3.90	.141	
	청주	9	3.09	.437	
	제주	7	3.37	.373	
	합계	211	3.28	.417	

면담장소에 대한 만족도(표는 생략함)는 춘천(M=3.83, SD=0.236) 지역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경남권(M=2.72, SD=0.732)과 대전(M=2.90, SD=0.802)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지역과 보조인 의견서 작성

의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대전(M=3.40, SD=0.966), 전주(M=3.20, SD=0.837) 지역이 길게 나타났고, 제주(M=2.57, SD=0.976), 대구(M=2.63, SD=1.165), 광주(M=2.63, SD=0.916)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161〉 지역별 의견서 작성 소요시간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의견서 작성 소요시간	서울·수도권	124	3.12	.984	1.207
	부산·경남권	27	3.11	.974	
	대구	19	2.63	1.165	
	광주	8	2.63	.916	
	대전	10	3.40	.966	
	전주	5	3.20	.837	
	춘천	2	3.00	.000	
	청주	9	2.67	1.225	
	제주	7	2.57	.976	
	합계	211	3.03	1.007	

지역에 따라 국선보조인이 처분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소년의 성장환경의 경우 전주(M=3.68, SD=0.303)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M=3.26, SD=0.389)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3-162〉 지역별 소년의 성장환경 고려정도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소년의 성장환경	서울·수도권	124	3.43	.437	1.097
	부산·경남권	27	3.55	.362	
	대구	19	3.26	.389	
	광주	8	3.53	.369	
	대전	10	3.58	.290	
	전주	5	3.68	.303	
	춘천	2	3.40	.283	
	청주	9	3.38	.561	
	제주	7	3.51	.414	
	합계	211	3.45	.419	

소년의 범죄경력의 경우 춘천(M=3.50, SD=0.707)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M=3.15, SD=0.412)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3-163〉 지역별 소년의 범죄경력 고려정도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소년의 범죄경력	서울·수도권	124	3.29	.511	.282
	부산·경남권	27	3.35	.515	
	대구	19	3.29	.608	
	광주	8	3.25	.655	
	대전	10	3.15	.412	
	전주	5	3.30	.447	
	춘천	2	3.50	.707	
	청주	9	3.44	.527	
	제주	7	3.29	.393	
	합계	211	3.30	.513	

소년의 재범가능성은 전주(M=3.50, SD=0.354), 춘천(M=3.50, SD=0)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M=3.07, SD=0.345)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3-164〉 지역별 소년의 재범가능성 고려정도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소년의 재범가능성	서울·수도권	124	3.32	.452	.964
	부산·경남권	27	3.43	.409	
	대구	19	3.18	.478	
	광주	8	3.31	.372	
	대전	10	3.25	.635	
	전주	5	3.50	.354	
	춘천	2	3.50	.000	
	청주	9	3.17	.354	
	제주	7	3.07	.345	
	합계	211	3.31	.447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은 춘천(M=4.00, SD=0)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주(M=3.30, SD=0.389)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3-165〉 지역별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 고려정도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노력	서울·수도권	124	3.55	.360	1.218
	부산·경남권	27	3.54	.425	
	대구	19	3.49	.489	
	광주	8	3.63	.214	
	대전	10	3.70	.189	
	전주	5	3.60	.365	
	춘천	2	4.00	.000	
	청주	9	3.30	.389	
	제주	7	3.52	.262	
	합계	211	3.55	.372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여부는 춘천(M=3.50, SD=0.707)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M=2.70, SD=0.483), 서울·수도권(M=2.90, SD=0.703) 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3-166〉 지역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고려정도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여부	서울·수도권	124	2.90	.703	2.455
	부산·경남권	27	3.44	.577	
	대구	19	3.21	.787	
	광주	8	3.25	.886	
	대전	10	2.70	.483	
	전주	5	3.20	.447	
	춘천	2	3.50	.707	
	청주	9	3.11	.782	
	제주	7	3.00	.577	
	합계	211	3.03	.710	

보조인 의견서의 형식을 작성하는데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내 나름의 양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판사의 권유가 50%(4명)로 가장 높았고, 내 나름의 양식은 37.5%(3명), 양식이 따로 없음 12.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내 나름의 양식이 63.2%(12명)로 가장 높긴 했지만, 양식이 따로 없음도 31.6%(6명)의 비율을 보였다. 전주와 춘천, 청주, 제주 지역은 판사의 권유에 따른다는 대답은 전혀 없었다. 반면 대전과 춘천, 제주의 경우 양식이 따로 없다는 대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들의 경우 어떠한 형태이든 형식을 정해두고 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7〉 지역별 의견서의 형식

(단위: 명, %)

구분	지역									전체
	서울 수도권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청주	제주	
판사의 권유	10 (8.1)	6 (22.2)	1 (5.3)	4 (50.0)	1 (10.0)	-	-	-	-	22 (10.4)
내 나름의 양식	104 (83.9)	19 (70.4)	12 (63.2)	3 (37.5)	9 (90.0)	4 (80.0)	2 (100.0)	8 (88.9)	7 (100.0)	168 (100.0)
양식이 따로 없음	10 (8.1)	2 (7.4)	6 (31.6)	1 (12.5)	-	1 (20.0)	-	1 (11.1)	-	21 (10.0)
합계	124 (100.0)	27 (100.0)	19 (100.0)	8 (100.0)	10 (100.0)	5 (100.0)	2 (100.0)	9 (100.0)	7 (100.0)	211 (100.0)

$\chi^2=34.882, df=16, p<0.01$

의견서의 형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광주(75.0%, 6명), 제주(71.4%, 5명), 부산·경남(66.7%, 18명) 지역의 경우 의견형식의 통일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주(20.0%, 1명), 대전(30.0%, 3명), 대구(36.8%, 7명), 서울·수도권(38.7%, 48명), 청주(44.4%, 4명) 지역의 경우 필요하다는 대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8〉 지역별 의견서 형식의 통일성 필요 여부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지역									전체
	서울 수도권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청주	제주	
필요하다	48 (38.7)	18 (66.7)	7 (36.8)	6 (75.0)	3 (30.0)	1 (20.0)	1 (50.0)	4 (44.4)	5 (71.4)	93 (44.1)
필요하지 않다	76 (61.3)	9 (33.3)	12 (63.2)	2 (25.0)	7 (70.0)	4 (80.0)	1 (50.0)	5 (55.6)	2 (28.6)	118 (55.9)
합계	124 (100.0)	27 (100.0)	19 (100.0)	8 (100.0)	10 (100.0)	5 (100.0)	2 (100.0)	9 (100.0)	7 (100.0)	211 (100.0)

$\chi^2=14.679$, $df=8$, n.s.

3. 지역과 업무에 대한 인식

다음은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에 있어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대구(M=3.29, SD=0.487), 부산·경남(M=3.28, SD=0.481), 대전(M=3.26, SD=0.366) 지역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주(M=2.69, SD=0.625)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024, df=8), 사후검정 결과 부산·경남과 청주지역, 청주와 대구지역이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9〉 지역별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	서울·수도권	124	3.09	.435	2.024*
	부산·경남권	27	3.28	.481	
	대구	19	3.29	.487	
	광주	8	3.18	.406	
	대전	10	3.26	.366	
	전주	5	3.20	.600	
	춘천	2	3.10	.141	
	청주	9	2.69	.625	
	제주	7	3.14	.321	
	합계	211	3.13	.460	

*p<0.05, df=8

지역에 따른 업무에 있어 실망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청주(M=2.39, SD=0.333), 대구(M=2.37, SD=0.620), 제주(M=2.36, SD=0.748) 지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춘천(M=1.50, SD=0)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0〉 지역별 업무에 대한 실망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업무에 대한 실망	서울·수도권	124	2.24	.589	.633
	부산·경남권	27	2.22	.625	
	대구	19	2.37	.620	
	광주	8	2.19	.594	
	대전	10	2.25	.425	
	전주	5	2.30	.274	
	춘천	2	1.50	.000	
	청주	9	2.39	.333	
	제주	7	2.36	.748	
	합계	211	2.25	.578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에 있어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주(M=3.00, SD=0)와 춘천(M=3.00, SD=0)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제주

(M=1.86, SD=0.690)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F=2.162, df=8), 사후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1〉 지역별 내 판단에 대한 확신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내 판단에 대한 확신	서울·수도권	124	2.24	.679	2.162*
	부산·경남권	27	2.22	.801	
	대구	19	2.58	.692	
	광주	8	2.50	.535	
	대전	10	2.60	.699	
	전주	5	3.00	.000	
	춘천	2	3.00	.000	
	청주	9	2.22	.667	
	제주	7	1.86	.690	
	합계	211	2.31	.700	

*p<0.05, df=8

보조인의 견해와 판사의 견해의 일치정도에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춘천(M=3.50, SD=0.707)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주(M=2.44, SD=0.527)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2〉 지역별 보조인 견해와 판사 견해의 일치 정도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보조인 견해와 판사 견해의 일치	서울·수도권	124	2.96	.643	1.141
	부산·경남권	27	2.96	.808	
	대구	19	2.84	.602	
	광주	8	3.13	.641	
	대전	10	3.10	.738	
	전주	5	3.00	.707	
	춘천	2	3.50	.707	
	청주	9	2.44	.527	
	제주	7	2.71	.488	
	합계	211	2.94	.663	

지역에 따른 업무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주(M=3.65, SD=0.285)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M=3.11, SD= 0.197), 청주(M=3.14, SD=0.309)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3-173〉 지역별 업무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업무에 대한 자신감	서울·수도권	124	3.36	.410	1.301
	부산·경남권	27	3.30	.528	
	대구	19	3.49	.412	
	광주	8	3.22	.339	
	대전	10	3.35	.503	
	전주	5	3.65	.285	
	춘천	2	3.38	.530	
	청주	9	3.14	.309	
	제주	7	3.11	.197	
	합계	211	3.34	.422	

4. 예상처분에 대한 대처

소년이 예상처분을 물어오는 경우 답변을 해 주는 데 있어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주(M=3.20, SD=0.447)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춘천(M=1.50, SD=0.707)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F=2.505, df=8), 사후검정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174〉 지역별 소년의 예상처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소년의 예상처분 질문에 대한 답변	서울·수도권	124	2.08	.898	2.505*
	부산·경남권	27	2.19	.879	
	대구	19	2.37	.955	
	광주	8	2.63	.744	
	대전	10	2.20	1.033	
	전주	5	3.20	.447	
	춘천	2	1.50	.707	
	청주	9	2.89	.601	
	제주	7	2.71	.951	
	합계	211	2.22	.912	

*p<0.05, df=8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면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장래희망 등 소년의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있어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주(M=3.40, SD=0.548), 청주(M=3.33, SD=0.866), 부산·경남권(M=3.30, SD=0.724) 지역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광주(M=2.88, SD=0.991)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5〉 지역별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장래계획 질문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장래 계획에 대한 질문	서울·수도권	124	3.14	.830	.393
	부산·경남권	27	3.30	.724	
	대구	19	3.26	.733	
	광주	8	2.88	.991	
	대전	10	3.10	.876	
	전주	5	3.40	.548	
	춘천	2	3.00	1.414	
	청주	9	3.33	.866	
	제주	7	3.29	.951	
	합계	211	3.18	.812	

시설내 처분이 적합한 아이이지만, 사회내 처우로 의견을 제시하려는 정도에 있어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제주(M=2.86, SD=1.069), 전주(M=2.80, SD=0.447)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서울·수도권(M=2.49, SD=0.749), 춘천(M=2.50, SD=0.707), 광주(M=2.50, SD=1.195) 지역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6〉 지역별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지만 사회내 처우 제시 경향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지만, 사회내처우 제시	서울·수도권	124	2.49	.749	.321
	부산·경남권	27	2.56	.847	
	대구	19	2.58	.607	
	광주	8	2.50	1.195	
	대전	10	2.60	.843	
	전주	5	2.80	.447	
	춘천	2	2.50	.707	
	청주	9	2.67	.707	
	제주	7	2.86	1.069	
	합계	211	2.54	.770	

5. 지역과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보수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대구(M=2.68, SD=0.582), 제주(M=2.43, SD=0.535)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춘천(M=1.50, SD=0.707)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853, df=8), 사후 검정 결과 서울·수도권과 대구 지역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M=2.02(SD=0.698)이고, 대구는 M=2.68(SD=0.582)로 분석되었다.

〈표 3-177〉 지역별 보수수준의 적절성 인식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보수 수준의 적절성	서울·수도권	124	2.02	.698	2.853**
	부산·경남권	27	2.37	.688	
	대구	19	2.68	.582	
	광주	8	2.25	.886	
	대전	10	2.40	.966	
	전주	5	2.00	.707	
	춘천	2	1.50	.707	
	청주	9	2.00	.707	
	제주	7	2.43	.535	
	합계	211	2.16	.730	

**p<0.01, df=8

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대구(M=3.32, SD=0.582), 전주(M=3.30, SD=0.823)이 높게 나타났고, 광주(M=3.13, SD=0.835)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8〉 지역별 정기적 교육의 필요성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서울·수도권	124	3.19	.569	.353
	부산·경남권	27	3.19	.569	
	대구	19	3.32	.582	
	광주	8	3.13	.835	
	대전	10	3.00	.471	
	전주	5	3.30	.823	
	춘천	2	3.00	.000	
	청주	9	3.27	.647	
	제주	7	3.29	.756	
	합계	211	3.20	.589	

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비행에 대한 이해의 경우 대구(M=3.53, SD=0.513), 춘천(M=3.50, SD=0.707) 지역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제주(M=3.29, SD=0.756)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9〉 지역별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청소년비행에 대한 이해	서울·수도권	145	3.41	.630	.160
	부산·경남권	37	3.43	.801	
	대구	19	3.53	.513	
	광주	8	3.38	.518	
	대전	10	3.40	.699	
	전주	10	3.30	.675	
	춘천	2	3.50	.707	
	청주	11	3.36	.674	
	제주	7	3.29	.756	
합계	249	3.41	.649		

상담기법의 경우 춘천(M=4.00, SD=0)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경남(M=3.46, SD=0.650) 지역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제주(M=3.14, SD=0.690)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 지역에 걸쳐 상담기법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표 3-180〉 지역별 상담기법 필요성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상담기법	서울·수도권	145	3.3	.660	.913
	부산·경남권	37	3.46	.650	
	대구	19	3.32	.671	
	광주	8	3.25	.707	
	대전	10	3.40	.699	
	전주	10	3.40	.699	
	춘천	2	4.00	.000	
	청주	11	3.00	.632	
	제주	7	3.14	.690	
합계	249	3.32	.661		

우수사례 소개의 경우 대전(M=3.50, SD=0.707)과 전주(M=3.50, SD=0.707)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주(M=2.55, SD=0.688), 제주(M=2.57, SD=0.787) 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360, df=8). 그러나 사후검정 결과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1〉 지역별 우수사례의 소개 필요성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우수사례의 소개	서울·수도권	145	3.2	.723	2.360*
	부산·경남권	37	3.24	.723	
	대구	19	3.26	.653	
	광주	8	3.25	.463	
	대전	10	3.50	.707	
	전주	10	3.50	.707	
	춘천	2	3.00	.000	
	청주	11	2.55	.688	
	제주	7	2.57	.787	
	합계	249	3.19	.724	

* $p < 0.05$, $df=8$

사법처리절차의 경우 광주($M=3.38$, $SD=0.744$)와 전주($M=3.30$, $SD=0.823$)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M=2.80$, $SD=0.632$)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2〉 지역별 사법처리 절차 필요성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사법처리절차	서울·수도권	145	3.17	.749	.856
	부산·경남권	37	3.24	.683	
	대구	19	3.26	.653	
	광주	8	3.38	.744	
	대전	10	2.80	.632	
	전주	10	3.30	.823	
	춘천	2	3.00	1.414	
	청주	11	2.91	.831	
	제주	7	2.86	.690	
	합계	249	3.16	.736	

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의 경우 광주($M=3.50$, $SD=0.535$), 전주($M=3.40$, $SD=0.843$)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주($M=2.45$, $SD=0.820$), 제주($M=2.57$, $SD=0.787$) 지역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626, df=8). 사후검정 결과 광주와 청주지역, 전주와 청주 지역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보완되어야 할 교육의 내용 중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해와 상담기법에 대한 선호도가 전 지역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우수사례 소개의 경우도 청주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3〉 지역별 국선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 필요성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국선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	서울·수도권	145	2.89	.647	2.626**
	부산·경남권	37	3.11	.737	
	대구	19	3.05	.780	
	광주	8	3.5	.535	
	대전	10	3.10	.738	
	전주	10	3.40	.843	
	춘천	2	3.00	.000	
	청주	11	2.45	.820	
	제주	7	2.57	.787	
	합계	249	2.96	.709	

**p<0.01, df=8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에 있어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청주(72.7%, 8명), 전주(60.0%, 6명) 지역은 변호사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대답이 매우 높았고, 서울·수도권도 50.3%(73명) 비율을 보였다. 반면, 대구(63.2%, 12명)와 대전(60.0%, 6명)의 경우 비슷해야 한다는 대답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과 광주 지역의 경우 비슷해야 한다는 대답이 지역 내에서는 각각 32.4%(12명), 37.5%(3명)의 비율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의 경우 비슷해야 한다는 대답과 변호사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대답이 각각 42.9%(3명)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4〉 지역별 보조인 자격에 있어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에 대한 인식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지역									전체
	서울 수도권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청주	제주	
비슷해야 한다	46 (31.7)	12 (32.4)	12 (63.2)	3 (37.5)	6 (60.0)	3 (30.0)	-	1 (9.1)	3 (42.9)	86 (34.5)
변호사 비율이 높아야 한다	73 (50.3)	7 (18.9)	5 (26.3)	2 (25.0)	1 (10.0)	6 (60.0)	-	8 (72.7)	3 (42.9)	105 (42.2)
전문가 비율이 높아야 한다	6 (4.1)	8 (21.6)	2 (10.5)	1 (12.5)	-	-	2 (100.0)	1 (9.1)	1 (14.3)	21 (8.4)
상관없다	20 (13.8)	10 (27.0)	-	2 (25.0)	3 (30.0)	1 (10.0)	-	1 (9.1)	-	37 (14.9)
합계	124 (100.0)	27 (100.0)	19 (100.0)	8 (100.0)	10 (100.0)	5 (100.0)	2 (100.0)	9 (100.0)	7 (100.0)	211 (100.0)

 $\chi^2=68.335$, $df=24$, $p<0.001$

국선보조인의 운영과 관리 형태에 대해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춘천(100%, 2명)과 광주(75.0%, 6명), 대구(63.2%, 12명), 부산·경남권(59.5%, 22명)의 경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 형태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71.4%(5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울·수도권(50.3%, 73명), 청주(45.5%, 5명)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모두 40.0%(4명)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185〉 지역별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 형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지역									전체
	서울 수도권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청주	제주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	73 (50.3)	12 (32.4)	7 (36.8)	1 (12.5)	4 (40.0)	3 (30.0)	-	5 (45.5)	5 (71.4)	110 (44.2)
각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49 (33.8)	22 (59.5)	12 (63.2)	6 (75.0)	4 (40.0)	5 (50.0)	2 (100.0)	4 (36.4)	2 (28.6)	106 (42.6)
상관없다	22 (15.2)	3 (8.1)	-	1 (12.5)	2 (20.0)	2 (20.0)	-	2 (18.2)	-	32 (12.9)
기타	1 (0.7)	-	-	-	-	-	-	-	-	1 (0.4)
합계	124 (100.0)	27 (100.0)	19 (100.0)	8 (100.0)	10 (100.0)	5 (100.0)	2 (100.0)	9 (100.0)	7 (100.0)	211 (100.0)

$\chi^2=24.710$, $df=24$, n.s.

현행 국선보조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역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청주(66.7%, 6명), 부산·경남권(59.3%, 16명), 제주(57.1%, 4명), 대구(52.6%, 10명) 지역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다른 지역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한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6〉 지역별 국선보조인 제도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차이

(단위: 명, %)

구분	지역									전체
	서울 수도권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청주	제주	
그렇다	52 (41.9)	16 (59.3)	10 (52.6)	4 (50.0)	2 (20.0)	1 (20.0)	1 (50.0)	6 (66.7)	4 (57.1)	96 (45.5)
아니다	72 (58.1)	11 (40.7)	9 (47.4)	4 (50.0)	8 (80.0)	4 (80.0)	1 (50.0)	3 (33.3)	3 (42.9)	115 (54.5)
합계	124 (100.0)	27 (100.0)	19 (100.0)	8 (100.0)	10 (100.0)	5 (100.0)	2 (100.0)	9 (100.0)	7 (100.0)	211 (100.0)

$\chi^2=9.110$, $df=8$, n.s.

다음으로 국선보조인 활동의 어려움에 있어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도적 한계의 경우 전주(M=3.20, SD=0.506), 부산·경남권(M=3.01, SD=0.603) 지

역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춘천(M=1.83, SD=0.23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7〉 지역별 제도적 한계 인식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제도적 한계	서울·수도권	124	2.88	.646	1.256
	부산·경남권	27	3.01	.603	
	대구	19	2.93	.690	
	광주	8	2.67	.642	
	대전	10	2.70	.745	
	전주	5	3.20	.506	
	춘천	2	1.83	.236	
	청주	9	2.89	.577	
	제주	7	2.67	.816	
	합계	211	2.88	.652	

대상자와의 갈등의 경우 대전(M=2.07, SD=0.644) 지역이 가장 높고, 춘천(M=1.00, SD=0)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석결과를 보면 전 지역에서 대상자와의 갈등은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88〉 지역별 대상자와의 갈등 인식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대상자와의 갈등	서울·수도권	124	1.76	.509	1.155
	부산·경남권	27	1.77	.488	
	대구	19	1.72	.434	
	광주	8	1.92	.611	
	대전	10	2.07	.644	
	전주	5	1.87	.558	
	춘천	2	1.00	.000	
	청주	9	1.81	.503	
	제주	7	1.81	.378	
	합계	211	1.78	.508	

보조인간 상호협조의 부족에 대해서는 전주(M=2.60, SD=0.894) 지역이 가장 높고, 춘천(M=1.50, SD=0.707)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89〉 지역별 보조인간 상호협조 부족 인식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보조인간 상호협조 부족	서울·수도권	124	2.46	.737	1.489
	부산·경남권	27	2.00	.620	
	대구	19	2.32	.820	
	광주	8	2.25	1.282	
	대전	10	2.20	.632	
	전주	5	2.60	.894	
	춘천	2	1.50	.707	
	청주	9	2.33	.707	
	제주	7	2.43	.976	
	합계	211	2.36	.769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주(M=3.20, SD=0.447)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M=2.43, SD=0.787)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404, df=8). 사후 검정 결과를 보면, 서울·수도권과 대전지역의 지역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서울·수도권의 경우 M=2.91(SD=0.650)이고, 대전은 M=2.20(0.63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90〉 지역별 시간적 여유 부족 인식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시간적 여유 부족	서울·수도권	124	2.91	.650	2.404*
	부산·경남권	27	2.70	.823	
	대구	19	2.89	.658	
	광주	8	2.75	.707	
	대전	10	2.20	.632	
	전주	5	3.20	.447	
	춘천	2	2.00	.000	
	청주	9	2.89	.333	
	제주	7	2.43	.787	
	합계	211	2.82	.685	

*p<0.05, df=8

대상자의 개선에 대한 신념의 부족은 전주(M=3.40, SD=0.548)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경남권(M=2.33, SD=0.78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1〉 지역별 대상자의 개선에 대한 신념 부족 인식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대상자의 개선에 대한 신념 부족	서울·수도권	124	2.48	.727	1.487
	부산·경남권	27	2.33	.784	
	대구	19	2.42	.769	
	광주	8	2.38	.916	
	대전	10	2.60	.843	
	전주	5	3.40	.548	
	춘천	2	2.50	.707	
	청주	9	2.89	.782	
	제주	7	2.43	.535	
	합계	211	2.49	.752	

보조인 보수의 부족에 대해서는 전주(M=3.20, SD=0.837)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구(M=2.42, SD=0.838)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043, df=8), 사후검정 결과 서울·수도권과 대구 지역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수도권의 경우 M=3.06(SD=0.824), 대구(M=2.42, SD=0.83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92〉 지역별 보수의 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보수의 부족	서울·수도권	124	3.06	.824	2.043*
	부산·경남권	27	2.81	.681	
	대구	19	2.42	.838	
	광주	8	2.75	.707	
	대전	10	2.50	.972	
	전주	5	3.20	.837	
	춘천	2	3.00	.000	
	청주	9	3.11	.928	
	제주	7	2.71	.488	
	합계	211	2.93	.822	

*p<0.05, df=8

관련지식의 부족에 대해서는 전주(M=2.60, SD=0.548), 대전(M=2.50, SD=0.527)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제주(M=1.86, SD=0.690)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93〉 지역별 관련지식의 부족 인식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관련지식의 부족	서울·수도권	124	2.15	.695	1.773
	부산·경남권	27	2.37	.492	
	대구	19	2.11	.567	
	광주	8	2.13	.835	
	대전	10	2.50	.527	
	전주	5	2.60	.548	
	춘천	2	1.50	.707	
	청주	9	2.56	.527	
	제주	7	1.86	.690	
	합계	211	2.20	.661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완점에 대한 지역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교육 및 연수의 강화에 있어서는 전주(M=3.32, SD=0.559)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경남권(M=2.93, SD=0.444) 지역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춘천(M=2.40, SD=0)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제주(M=2.57, SD=0.390) 지역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3-194〉 지역별 교육 및 연수의 강화 필요성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교육 및 연수의 강화	서울·수도권	124	2.84	.515	1.487
	부산·경남권	27	2.93	.444	
	대구	19	2.85	.446	
	광주	8	2.73	.534	
	대전	10	2.84	.280	
	전주	5	3.32	.559	
	춘천	2	2.40	.000	
	청주	9	2.60	.557	
	제주	7	2.57	.390	
	합계	211	2.84	.496	

예산의 지원과 보조인의 역할 및 권한의 강화에 있어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면, 전주(M=3.27, SD=0.548), 서울·수도권(M=3.17, SD=0.584) 지역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광주(M=2.67, SD=0.667)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5〉 지역별 예산지원과 역할 및 권한의 강화 필요성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예산지원과 역할 및 권한의 강화	서울·수도권	124	3.17	.584	1.245
	부산·경남권	27	2.94	.547	
	대구	19	3.00	.694	
	광주	8	2.67	.667	
	대전	10	3.00	.588	
	전주	5	3.27	.548	
	춘천	2	2.83	.236	
	청주	9	2.96	.676	
	제주	7	2.95	.803	
	합계	211	3.08	.605	

6. 지역별 향후 계획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춘천(M=2.00, SD=0)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주와 전주는 M=1.00(SD=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3.096, df=8), 사후검정 결과 부산·경남권과 청주지역간 지역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권의 경우 M=1.74(SD=0.594), 청주 M=1.00(SD=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96〉 지역별 대상자와의 지속적 교류정도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대상자와의 사후교류	서울·수도권	124	1.46	.516	3.096**
	부산·경남권	27	1.74	.594	
	대구	19	1.37	.597	
	광주	8	1.25	.463	
	대전	10	1.60	.516	
	전주	5	1.00	.000	
	춘천	2	2.00	.000	
	청주	9	1.00	.000	
	제주	7	1.29	.488	
	합계	211	1.45	.536	

**p<0.01, df=8

업무에 대한 보람과 앞으로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춘천(M=3.88, SD=0.177), 제주(M=3.71, SD=0.366) 지역은 높게 나타났고, 청주(M=3.17, SD=0.280)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7〉 지역별 업무에 대한 보람의 차이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업무에 대한 보람	서울·수도권	124	3.42	.555	.776
	부산·경남권	27	3.46	.664	
	대구	19	3.53	.448	
	광주	8	3.47	.452	
	대전	10	3.43	.514	
	전주	5	3.35	.602	
	춘천	2	3.88	.177	
	청주	9	3.17	.280	
	제주	7	3.71	.366	
	합계	211	3.44	.541	

제6절 소결

1. 전국 국선보조인의 활동 현황에 대한 소결

국선보조인들의 활동 실태 조사는 8월에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은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의 협조를 통해 확보된 국선보조인 명부를 가지고 전화통화로 확인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6년 국선보조인으로 위촉된 689명 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518명에게 2주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249명이었다. 서울이 국선보조인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응답한 설문자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수원, 대구, 창원, 부산, 청주, 대전과 전주, 광주, 제주, 울산, 춘천, 의정부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30-4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변호사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위촉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위촉된 경우가 다수였으며, 비행청소년을 돕고 자신의 업무에 도움도 될 것 같아 시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1년 평균 담당 사건 수가 20건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실태를 보면, 개별 소년별로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상-2시간 미만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 소년당 2번 이상 접견하는 경우가 6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년접견은 주로 분류심사원을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인 면담은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담장소에 대한 만족도와 안정감 정도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대답이 대다수였다. 부모나 소년의 협조도 양호한 편이라고 조사되었다.

보조인 의견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소년의 생활환경, 성장환경, 교우관계, 부모의 관심 및 보호능력, 재범가능성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부모의 관심 및 보호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으로 성폭력범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나름의 양식을 만들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인 업무에 대한 인식을 보면, 보조인 활동 이전에는 국선보조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다는 대답이 과반수 이상이었고, 전혀 몰랐다는 대답도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에 대한 사명감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지만, 예상 처분에 대한 의견 결정에 있어 판단에 대한 자신감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보조인 업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양호한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가 보조인의 현재 직업이 보조인 업무에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선보조인 제도의 어려움으로 보수수준이 적고 시간이 부족하며, 운영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답이 많았다. 국선보조인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답이 다수였고, 국선보조인의 자격에 있어 변호사의 비율이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답이 많았다.

면담 사후에도 대상 소년들과 연락을 하는 경우가 40% 이상정도 되었고, 업무에 대한 보람도 크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는 대답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현재 국선보조인 활동에 있어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처분종류와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현행 사법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답이 많았다. 또한 보조인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답이 많았고, 법원의 감독은 약화되어야 한다는 답이 다수였으며, 법원의 예산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답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성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결

이 조사에서 특히 중점을 둔 관계는 성별과 직업, 지역에 따른 업무활동의 차이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에 따라 업무 활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성별과 업무활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업무 활동에 있어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보면, 면담장소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면담장소의 물리적 환경이나 직원들의 협조 정도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장소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의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의견서 작성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견 결정에 고려하는 사항 중 소년의 성장환경의 경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처분 종류를 결정하는데 있어 초점을 두는 변인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남성들이 범죠큐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여성들은 재범가능성이나 소년과 보호자의 개선 노력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의견 결정시 여성들은 주로 부모와의 관계나 정서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반면, 남성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업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면,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 실제 보조인 견해와 판사 견해의 일치 정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 또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장래 계획을 질문한다는 답도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내 처우가 예상되긴 하지만 사회내 처우를 하려는 경향도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남성보조인들보다 여성보조인들이 업무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고, 실제 판사의 견해와 일치 정도도 여성들이 더 높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들이 아이들의 장래 계획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더 한다는 점도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여성이 더 높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국선보조인 업무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보조인 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보조인 보다는 여성 보조인들이 업무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 높고, 아이들의 처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서적 요소와 같은 주관적 변인들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조인들이 남성보다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업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궀

국선보조인 제도의 현황 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변수가 보조인이 갖고 있는 직업이었다. 현재 보조인들의 대다수가 변호사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실제 보조

인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청소년 전문가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업무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직업과 보조인 업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중 의미 있는 변수들을 보면, 우선 면담시간에 있어 변호사보다 청소년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면담시간에 있어서도 청소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변호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견횟수도 전문가들이 변호사들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변호사보다 청소년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변호사들보다 실제 면담에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담에 있어서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상자와의 정서적 공감이 변호사보다 청소년 전문가들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결정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으로 소년의 성장환경의 경우 변호사보다 청소년 전문가들이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지만, 고려사항 중 소년의 범죄경력 제외의 모든 변수들에 있어 전문가의 비율이 더 높았지만, 범죄경력의 경우만 변호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호사들이 처분 종류를 결정하는데 있어 특히 객관적 사실은 범죄경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견서 작성에 있어서 형식적 통일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전문가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특히 변호사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을 전문가보다 더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호사보다 전문가들이 업무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 보람, 판단에 대한 확신, 실제 판사와의 견해 일치에 있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업무에 대한 관심의 경우 앞서 살펴본 면담시간과 의견서 작성에 소요 시간이 전문가가 더 길다는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예상 처분에 대한 소년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 준다는 경우가 변호사가 전문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보조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중 소년들에게 나쁜 결과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좌절감을 주지 않도록 예상되는 처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이 변호사들보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상담기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점에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보수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직업적 차이를 보면 변호사보다 전문가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보면 모든 영역에 걸쳐 변호사보다 전문가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은 변호사와 전문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선보조인의 직업에 있어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대답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소년 전문가들의 대답을 보면 변호사와 전문가의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인 업무에 있어 변호사는 물론이고 청소년 전문가들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국선보조인의 운영 및 관리 형태에 있어서는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높은 반면, 청소년 전문가들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과반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보조인 업무의 어려움에 있어 보수수준이 낮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답이 변호사보다 전문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수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서 전문가가 변호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전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사후 대상자와의 교류 여부를 보면 전문가의 비율이 변호사보다 더 높는데, 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답이 변호사가 더 많다는 분석결과와도 관련됨을 알 수 있고, 업무에 대한 보람과 지속하고 싶다는 생각 또한 변호사보다 전문가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 지역별 보조인 업무의 차이에 대한 소결

국선보조인과 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운영 형태에 판사의 재량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보조인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가 아닌 법원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보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보조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국선보조인의 운영과 관리 실태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지역 변수를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간주하여 지역별로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지역과 국선보조인 활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시간의 경우 부산·경남권이 서울·수도권, 대구, 전주, 청주, 제주지역과 비교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보조인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면담시간 또한 부산·경남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접견횟수도 부산·경남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산·경남권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실제 소년들과의 면담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고, 보조인들이 면담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견서 작성 형식에 있어 지역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내 나름의 양식을 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한다는 답이 대다수였고, 광주의 경우 판사가 원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는 답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견서 형식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가 가장 많았다는 분석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긍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산·경남권과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청주가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단에 대한 확신의 경우 전주와 춘천이 높았고 제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인 견해와 판사 견해의 일치정도 그리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 모두 청주와 제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제주와 청주지역의 경우 실제 보조인의 의견 결정이 판사의 최종 결정과 차이가 가장 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판단에 대한 확신,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에 있어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분석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수수준의 적절성 문항의 경우 대구지역과 서울·수도권의 집단간 차이가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의 경우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수도권은 전체 평균보다

도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보수수준의 적절성을 분석한 이전 결과를 보면 변호사가 청소년 전문가들보다 보수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울·수도권의 경우 보조인 대다수가 변호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보조인 교육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우수사례의 소개와 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 등이 제주와 청주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주와 전주, 서울·수도권의 경우 변호사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대답이 많았고, 대구와 대전은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춘천의 경우 응답자 모두가 전문가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와 전주의 경우 조사대상 전원이 변호사였고, 서울·수도권의 경우도 조사대상 대다수가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변호사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대전과 대구의 경우 조사대상자 중 변호사보다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는 점에서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대답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대답이 100%로 나온 춘천의 경우 조사대상자 전원이 전문가였다. 이전 분석에서 보조인 활동에 있어 내 직업이 가지는 강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선보조인 대다수가 그렇다고 대답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보조인 자격으로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자신의 현재 직업이 분명 보조인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보조인들의 생각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보조인 업무에 있어 어려움을 측정한 문항 중 시간이 부족하다는 대답은 서울·수도권과 전주, 청주지역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춘천과 대전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과 전주, 청주지역의 경우 변호사가 대다수인 지역이고, 춘천과 대전지역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과 관련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사후 소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 측정한 문항을 보면, 부산·경남권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앞서 면담시간과 면담횟수 등에서도 부산·경남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다는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의 보조인들이 소년들과 교류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소년에 대한 관심도 더 많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소년들의 평가

김 지 영

제4장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소년들의 평가

제1절 조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시설 내 소년들의 의견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연구기간과 예산 등의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설문지가 우송되는 7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의 소년원에 입소한 소년 전원과 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위탁중인 소년들 중에서 국선보조인 접견 경험이 있는 소년으로 한정하였다.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6월 27일까지 확인된 보호 및 위탁 소년의 수는 총 1,548명이었다. 여름에는 특히 입소하는 소년들이 많은 관계로 7월까지 일주일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각 기관마다 6월에 파악된 정원 외 10부 정도의 설문을 더하여 총 1,658부의 설문을 우송하였다. 설문을 우송하기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와 협조하여 전국 소년원과 분류심사원에 설문조사협조공문을 사전에 하달하고 인쇄된 설문지와 설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동봉하여 우송하였다.

설문은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의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으로 우송되어 2주의 기간을 거친 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각 기관에서 연구진에게 반송하는 방식으로 수거되었다. 설문은 각 기관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설문 전에 반드시 소년들이 설문의 취지와 설문 시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담당자들에게 주지시켰다. 담당자들은 또한 설문현황을 파악하여 설문과 더불어 연구진에게 우송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소년들에게는 소정의 사례품이 지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7월 29일까지 수거된 설문은 총 1,351부

였는데 이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1,227부였다.

〈표 4-1〉 조사기관 및 설문수거현황

	기관명	배포설문부수	구분 대상	설문수거현황	총계
1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252	보호	212	212
2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	230	보호	121	182
			위탁	61	
3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	199	보호	149	170
			위탁	21	
4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	183	보호	103	136
			위탁	33	
5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	95	보호	92	92
6	대산학교(대전)	164	보호	47	79
			위탁	32	
7	미평여자학교(청주,여)	40	보호	36	36
8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여)	156	보호	135	135
9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	95	보호	68	83
			위탁	15	
10	한길정보통신학교(제주)	55	보호	40	41
			위탁	1	
11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	189	위탁	185	185
보호총계				956	
위탁총계				395	
총계		1658		1351	1351

각 기관의 설문수거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소년원의 경우는 보호 소년만 수용되어 있는데 총 212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는 보호소년 121부, 위탁소년 61부 총 182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대구 읍내정보통신학교는 보호소년 149부, 위탁소년 21부 총 170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광주 고룡정보산업학교는 보호소년 103부, 위탁소년 33부 총 136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전주 송천정보통신학교는 보호소년 92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는데, 전주지역은 위탁소년이 적은 관계로 분류심사입소를 위해서는 광주 고룡정보산업학교로 가야 한다. 대전 대산학교는 보호소년 47부, 위탁소년 32부, 총 79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청주의 미평여자학교는 여자보호소년만 수용된 기관으로 총 36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안양의 정심여자정보

산업학교도 여자보호소년만 수용된 기관으로 총 135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는 보호소년 68부, 위탁소년 15부 총 83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제주 한길정보통신학교는 보호소년 40부, 위탁소년 1부 총 41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안양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만 수용된 기관으로 총 185부의 설문 수거되었다.

2. 측정 변인

본 설문조사는 전국의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의 활동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때문에 설문의 주요 측정변인들은 소년의 국선보조인 접견경험과 국선보조인 평가이고 그 외 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비행경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선보조인 접견경험에 관한 문항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들이 만난 국선보조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작성되었다. 물론 2016년 위촉된 국선보조인에 대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2016년에 위촉된 국선보조인에 한정된 자료이고 이나마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법원도 있어 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의 성별과 연령을 질문하였다. 둘째, 복수의 국선보조인을 만난 소년의 비율이 적지 않고, 국선보조인을 만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에 대한 기억을 점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국선보조인에 관한 문항들은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을 염두에 두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국선보조인이 얼마나 성실히 활동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소년들의 만족도나 태도평가 등은 주관적인 인식이지만 국선보조인의 접견 횟수, 국선보조인의 접견 시간 등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로서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을 가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그동안 만난 국선보조인의 수, 국선보조인 배정 상황, 가장 최근 배정시기, 국선보조인의 성별, 국선보조인 연령대, 국선보조인의 접견횟수, 국선보조인의 접견시간, 국선보조인의 가족상담여부 등이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소년들의 평가는 국선보조인의 성실성 평가,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의 4가지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국선보조인의 성실성 평가는 국선보조인이 다양한 차원에서 소년을 파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보기로 작성한 문항으로 사건 내용, 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 가족력, 교우관계, 과거비행, 향후 생활계획 등의 항목에서 국선보조인과 소년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질문하였다. 11개 문항의 평균은 2.79이며 표준편차는 .677이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뢰도는 .913(Cronbach's α =.913)로 비교적 높다.

<표 4-2>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문항	요인부하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이번사건내용	.663	1	4	3.11	.805
나의 과거비행	.698	1	4	2.80	.857
나의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765	1	4	3.07	.849
나의 성장과정	.798	1	4	2.62	.972
나의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745	1	4	2.39	.956
나의 학력 및 학교생활	.765	1	4	2.75	.898
나의 교우관계	.807	1	4	2.56	.955
내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790	1	4	2.99	.910
향후 생활계획	.734	1	4	3.00	.924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668	1	4	2.61	1.020
이번 비행의 처분에 관한 이야기	.624	1	4	2.74	1.027

Cronbach's α =.913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는 대화의 내용이 아닌 대화중에 드러나는 국선보조인의 태도를 소년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소년을 형식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였는지, 소년에 대한 신뢰를 보였는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5개문항의 평균은 2.65, 표준편차는 .784, 신뢰도는 .707(Cronbach's α =.707)로 양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1번, 2번, 4번은 역코딩 문항이다.

〈표 4-3〉 국선보조인 태도평가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문항	요인부하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724	1	4	2.35	.849
비행소년이나 범죄자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835	1	4	2.83	.832
내 이야기를 많이 듣고자 노력하는 것 같았다	.909	1	4	2.75	.875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의심했다	.753	1	4	2.98	.832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910	1	4	2.81	.862

Cronbach's α = .707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국선보조인의 능력과 태도 모두에 있어서 소년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조사하고자 작성하였다. 국선보조인의 법률적 지식이 풍부했는지, 소년의 환경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는지, 소년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했는지, 변론이 성실했는지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문항의 평균은 2.65, 표준편차는 .784, 신뢰도는 .883(Cronbach's α = .883)으로 양호한 편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4〉 국선보조인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문항	요인부하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심리(재판)과정과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였다	.862	1	4	2.66	.838
나의 가족 및 또래관계, 성장과정, 학교생활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887	1	4	2.73	.855
나의 장애와 재비행 방지 등에 대하여 진심어린 조언을 하였다	.887	1	4	2.64	.929
심리(재판)에서 성실하게 변론하였다	.819	1	4	2.56	1.013

Cronbach's α = .883

국선보조인에 대한 소년의 신뢰정도는 국선보조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사법기관과의 접촉경험, 그로 인한 사법기관전반에 대한 신뢰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국선보조인의 활동과 성실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3개문항의 평균은 2.97, 표준편차는 .657, 신뢰도는 .664로 높지 않은 편이다. 3번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5〉 국선보조인 신뢰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문항	요인부하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의지했다	.831	1	4	2.71	.906
사건내용과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	.811	1	4	3.20	.734
국선보조인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무성의하게 말했다	.660	1	4	2.99	.924

Cronbach's α =.644

비행경력 변인은 최초로 경찰서에 잡혀간 나이, 지금까지 경찰서에 잡혀간 횟수, 지금까지의 보호처분 횟수, 본건의 비행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월가구 수입, 현재 동거가족, 부모의 결혼상태, 성별, 연령, 신분, 학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별 및 신분, 연령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자가 994명(81.5%), 여자가 226명(1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조사대상자의 성별

성별	빈도	%
남자	994	81.5
여자	226	18.5
합계	1220	100.0

조사대상자가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입소할 당시의 신분을 보면 학생이었다는 응답이 559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를 그만둔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았다는 응답이 400명(33.0%)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검정고시나 기타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는 응답이 129명(10.7%),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이 123명(10.2%)으로 나타났다.

〈표 4-7〉 조사대상자의 신분

신분	빈도	%
학생	559	46.2
학원생(검정고시 준비생 등)	129	10.7
학교를 그만둔 후 직업을 가지고 있음(아르바이트 포함)	123	10.2
학교를 그만둔 후 특별한 직업 없음	400	33.0
합계	1211	100.0

응답자의 연령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5세 이하는 84명, 7.1%, 16세 이상 17세 미만은 220명, 18.5%, 17세 이상 18세 미만은 313명, 26.4%, 18세 이상 19세 미만은 292명, 24.6%, 19세 이상 20세 미만은 200명, 16.8% 20세 이상 78명, 6.6%로 나타났다.

〈표 4-8〉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연령	빈도(명)	%
15세 이하	84	7.1
16세 이상 ~17세 미만	220	18.5
17세 이상~18세 미만	313	26.4
18세 이상~19세 미만	292	24.6
19세 이상 ~20세 미만	200	16.8
20세 이상	78	6.6
총계	1187	100.0

2. 교육수준과 지역분포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417명(3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고등학교 중퇴가 255명(20.9%)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재학 187명(15.3%), 중학교 졸업 154명(12.6%), 중학교 재학 96명(7.9%), 중학교 유예 77명(6.3%) 대학교 이상(재학, 휴학 포함) 17명(1.4%) 초등학교 졸업 12명(1.0%)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에 재학 및 유예 중인 응답자도 4명(0.3%)으로 나타났다.

〈표 4-9〉 조사대상자의 교육 수준

교육수준	빈도	%
초등학교 재학 및 유예	4	0.3
초등학교 졸업	12	1.0
중학교 재학	96	7.9
중학교 유예	77	6.3
중학교 졸업	154	12.6
고등학교 재학	187	15.3
고등학교 중퇴	255	20.9
고등학교 졸업	417	34.2
대학교 이상(재학, 휴학)	17	1.4
합계	1219	100.0

조사대상자의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은 총 421(34.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서울·경기 지역의 보호 및 위탁시설은 서울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다. 이 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는 여자청소년만 수용되어 있다. 부산이 184명(15.2%)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구(159명, 13.2%), 광주(129명, 10.7%), 전주(89명, 7.4%), 대전(77명, 6.4%), 춘천(76명, 6.3%), 청주(41명 3.4%)의 비율로 각각 결과 되었으며 제주가 32명(2.6%)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경기지역 및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보호기관과 위탁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충청도 미평여자학교로 여자청소년만 수용된 보호시설이다.

〈표 4-10〉 조사대상자 지역분포

지역	빈도	퍼센트
서울·경기	421	34.9
부산	184	15.2
대구	159	13.2
광주	129	10.7
전주	89	7.4
대전	77	6.4
청주	41	3.4
춘천	76	6.3
제주	32	2.6
총계	1208	100.0

조사대상자의 가구 월수입을 살펴보았다. 300만원~399만원이 309명(26.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00만원~299만원이 287명(24.6%)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400만원 이상(283명, 24.3%), 100만원~199만원(190명, 16.3%), 100만원 미만(97명, 8.3%)의 순서로 결과되었다.

〈표 4-11〉 조사대상자의 가구 월수입

가구 월수입	빈도	%
100만원 미만	97	8.3
100만원~199만원	190	16.3
200만원~299만원	287	24.6
300만원~399만원	309	26.5
400만원 이상	283	24.3
합계	1166	100.0

3. 가족관계

부모님의 혼인상태에 관해 조사하였다. 부모님이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년들이 495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따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소년이 416명(34.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나머지는 부모님이 재혼한 상태라는 응답이 141명(11.6%),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77명(6.3%), 두분 모두 돌아가신 경우는 11명(0.9%)의 순서로 결과 되었다.

〈표 4-12〉 조사대상자 부모님의 혼인상태

부모님 혼인상태	빈도	%
같이 살고 있음	495	40.7
따로 살고 있음	416	34.2
두분 중 한분 돌아가심	77	6.3
재혼	141	11.6
두분 모두 돌아가심	11	0.9
기타	76	6.3
합계	1216	100.0

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조사하였다. 거주하는 가족 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았다(아버지 836명 27.5%, 어머니 807명 26.5%). 두번째로 누나(혹은 언니)가 298명, 9.8%로 많았다. 다음으로 형(혹은 오빠)(284명, 9.3%), 할머니(252명, 8.3%), 남동생(223명, 7.3%), 여동생 (217명, 7.1%), 할아버지(99명, 3.3%)의 순으로 결과 되었고, 혼자 살고 있다는 응답도 28명 0.9%로 나타났다.

〈표 4-13〉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가족(복수응답)

현재 거주가족	빈도	%
할아버지	99	3.3
할머니	252	8.3
아버지	836	27.5
어머니	807	26.5
형(오빠)	284	9.3
누나(언니)	298	9.8
남동생	223	7.3
여동생	217	7.1
혼자 살고 있음	28	0.9
합계	3044	100.0

제3절 조사대상자의 비행경력과 국선보조인 접견경험

1. 조사대상자의 비행경력과 현재 처분

조사대상자가 비행을 저질러 처음으로 경찰서에 잡혀간 나이를 13세 이하, 14세에서 18세 사이, 19세 이상의 세범주로 분류하였다. 13세 이하는 195명, 16.2%로 나타났으며 14세에서 18세 사이는 980명, 81.3%로 가장 많았다. 19세 이상은 30명, 2.5%를 차지하였다.

〈표 4-14〉 경찰서에 처음 잡혀간 나이

경찰서에 처음 잡혀간 나이	빈도	%
13세 이하	195	16.2
14세에서 18세	980	81.3
19세 이상	30	2.5
합계	1205	100.0

조사대상자가 경찰서에 잡혀간 횟수를 조사하였다. 4회 이하라고 응답한 소년이 412명, 34.3%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5회에서 9회가 342명, 28.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0회에서 19회(288명, 24%), 20회 이상(158명, 13.2%) 순으로 결과되었다.

〈표 4-15〉 경찰서에 잡혀간 횟수

경찰서 잡혀간 횟수	빈도	%
4회 이하	412	34.3
5회에서 9회	342	28.5
10회에서 19회	288	24.0
20회 이상	158	13.2
합계	1200	100.0

보호처분을 받은 횟수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번이 처음인 소년들은 290명(23.7%)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을 받은 횟수가 2~3회인 소년들이 612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응답들을 보면 4~5회가 254명(20.8%), 6회 이상이 67명(5.5%)으로 가장 적었다.

〈표 4-16〉 보호처분을 받은 횟수

보호처분횟수	빈도	%
1회(이번처음)	290	23.7
2~3회	612	50.0
4~5회	254	20.8
6회 이상	67	5.5
합계	1223	100.0

조사대상자의 현재처분 비행에 대해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를 저지른 소년이 532명, 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호관찰 위반(512명, 24%), 폭력범죄(폭행, 상해 등)(325명, 15.3%), 도로교통법 위반(250명, 11.7%), 사기/위조 범죄(154명, 7.2%), 성폭력범죄(142명, 6.7%),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등)(68명 3.2%), 유해화학물질(32명, 1.5%)의 순으로 결과 되었다.

〈표 4-17〉 현재처분 비행범주별 빈도(복수응답)

비행범주	빈도	%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	532	25.0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등)	68	3.2
폭력범죄(폭행, 상해 등)	325	15.3
성폭력범죄	142	6.7
도로교통법 위반	250	11.7
보호관찰 위반	512	24.0
사기/위조 범죄	154	7.2
유해화학물질	32	1.5
기타	115	5.4
합계	2130	100.0

2. 국선보조인 접견경험

조사대상자들이 그동안 몇 명의 국선보조인을 만났는지 조사하였다.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38명으로, 44.9%의 소년들이 1명의 국선보조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동안 2명 이상의 국선보조인을 만났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661명(55.1%)으로 나타났다. 즉 절반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이 복수의 국선보조인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표 4-18〉 접견한 국선 보조인의 수

국선보조인 수	빈도	%
1명	538	44.9
2명 이상	661	55.1
합계	1199	100.0

소년들이 언제 국선보조인을 만났는지 조사하였다. 소년들은 대부분 소년분류심사

원이나 소년원 위탁중에 법원 심리를 앞두고 국선보조인을 만나지만, 소년원에 있는 보호소년중에서도 추가사건으로 국선보조인을 만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소년도 49명(4.1%)이 있었다.

〈표 4-19〉 국선보조인 배정 상황(복수응답)

배정상황	N	%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위탁소년 생활 중 법원 심리를 앞두고	1153	95.9
소년원 보호소년 생활 중 추가사건 조사를 위해	49	4.1
합계	1202	100

복수의 국선보조인을 만난 조사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가장 최근에 배정된 국선보조인을 접견한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4주 이내에 만났다는 응답이 354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는 국선보조인을 만난 기간이 6개월 이내라는 응답이었다(337명, 28.2%). 다음으로 1년 이내(322명, 26.9%), 2년 이내(182명 15.2%)로 각각 결과 되었다.

〈표 4-20〉 가장 최근 국선보조인 배정시기

배정시기	빈도	%
이번사건으로(4주 이내)	354	29.6
6개월 이내	337	28.2
1년 이내	322	26.9
2년 이내	182	15.2
합계	1195	100.0

복수의 국선보조인을 만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의 기억에 가장 생생한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자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가장 최근에 배정된 국선보조인을 떠올려 보도록 하였다. 향후 질문들은 모두 가장 최근에 조사대상자에게 배정된 국선보조인을 염두에 두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소년들이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802명(67.3%)으로 여성보다 더 많았다(390명 32.7%).

〈표 4-21〉 가장 최근 배정된 국선보조인의 성별

성별	빈도	%
남성	802	67.3
여성	390	32.7
합계	1192	100.0

국선보조인의 연령대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자신이 가장 최근에 배정된 국선보조인의 연령이 30대라고 응답한 소년들이 438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두번째로 40대라는 응답이 411명(34.5%)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50대가 211명(17.7%), 20대가 111명(9.3%), 60대 이상이 21명(1.8%)으로 각각 결과되었다.

〈표 4-22〉 가장 최근 배정된 국선보조인 연령

연령대	빈도	%
20대	111	9.3
30대	438	36.7
40대	411	34.5
50대	211	17.7
60대 이상	21	1.8
합계	1192	100.0

가장 최근에 배정된 국선보조인이 몇 번이나 소년을 접견하러 왔는지 조사하였다.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국선보조인과의 접견횟수가 1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868명, 73.4%). 두 번째로 2회에서 3회 사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77명(23.4%)으로 결과 되었으며 4회 이상은 37명(3.1%)에 지나지 않았다.

〈표 4-23〉 국선보조인 접견횟수

접견횟수	빈도	%
1회	868	73.4
2회~3회	277	23.4
4회 이상	37	3.1
합계	1182	100.0

국선보조인이 위탁소년이나 보호소년을 만나러 와서 어느 정도의 접견시간을 가지는지 조사하였다. 접견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802명, 67.5%). 30분 이상에서 1시간 미만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337명, 28.3%). 다음으로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40명, 3.4%), 2시간 이상(10명, 0.8%)의 순으로 각각 결과되었다.

〈표 4-24〉 국선보조인 접견시간

접견시간	빈도	%
30분 미만	802	67.5
30분이상~1시간 미만	337	28.3
1시간이상~2시간 미만	40	3.4
2시간 이상	10	0.8
합계	1189	100.0

가장 최근에 배정된 국선보조인이 가족을 만났거나 전화로 가족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544명(44.9%)의 소년들이 배정된 국선보조인이 가족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소년도 17.1%(207명)나 되었다.

〈표 4-25〉 국선보조인과 가족의 상담여부

상담여부	빈도	%
상담한적 있다	544	44.9
상담한적 없다	207	17.1
모르겠다	460	38.0
합계	1211	100.0

제4절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1.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국선보조인과 이번 사건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 했는지 질문하였다. ‘약간 이야기 하였다’는 응답이 560명, 46.6%, ‘많이 이야기하였다’는 응답은 408명, 34.0%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 내용에 대해 별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79명, 14.9%, ‘이번 사건내용에 대해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4명 4.5%나 되었다. 약 70% 가량의 국선보조인들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 소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1: 사건의 내용

	빈도	%
전혀 하지않았다	54	4.5
별로 하지않았다	179	14.9
약간 이야기하였다	560	46.6
많이 이야기하였다	408	34.0
합계	1201	100.0

국선보조인과 소년들과 접견시 소년의 과거 비행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질문하였다. ‘과거 비행에 대해 약간 이야기하였다’는 응답이 585명 48.7%로 나타났으며 ‘많이 이야기하였다’는 응답은 239명 19.9%이었다. 반면 ‘과거 비행에 대해 별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70명, 22.5%로 나타났으며 ‘과거 비행에 대해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07명 8.9%였다.

〈표 4-27〉 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2: 과거비행

	빈도	%
전혀 하지않았다	107	8.9
별로 하지않았다	270	22.5
약간 이야기하였다	585	48.7
많이 이야기하였다	239	19.9
합계	1201	100.0

국선보조인이 소년의 가족관계와 주거 및 경제적 여건 등, 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얼마나 성실히 조사하고 상담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생활환경에 대해 약간 이야기하였다'고 응답한 소년이 531명, 44.3%로 나타났다. '많이 이야기 하였다'는 404명, 33.7%로 결과되었다. 반면, 소년들과 '생활환경에 대해 별로 하지 않았다'는 195명 16.3%,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69명, 5.8%로 나타났다. 소년의 환경적 특성은 소년의 향후 비행 여부와 처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70%에 이르는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의 가족관계와 주거환경 및 경제적 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4-28〉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여건)

	빈도	%
전혀 하지않았다	69	5.8
별로 하지않았다	195	16.3
약간 이야기하였다	531	44.3
많이 이야기하였다	404	33.7
합계	1199	100.0

국선보조인이 소년과 접견시 소년의 성장과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살펴보았다. '약간 이야기하였다'는 응답이 431명, 36.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별로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9명 28.4%로 나타났으며 '전혀 하지 않았다'도 181명 15.1%나 되었다. 반면 '많이 이야기하였다'는 응답은 244명, 20.4%에 지나지 않았다. 소년의 성장과정을 통해 소년이 비행에 이르게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의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의 성장과정에 대해 소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4: 성장과정

	빈도	%
전혀 하지않았다	181	15.1
별로 하지않았다	339	28.4
약간 이야기하였다	431	36.1
많이 이야기하였다	244	20.4
합계	1195	100.0

국선보조인이 소년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45명 20.4%로 나타났고, 407명, 33.9%의 소년들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간 이야기하였다’는 응답은 387명, 32.3%, ‘많이 이야기 하였다’는 응답은 160명, 13.3%에 지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20.4%의 국선보조인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30〉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빈도	%
전혀 하지않았다	245	20.4
별로 하지않았다	407	33.9
약간 이야기하였다	387	32.3
많이 이야기하였다	160	13.3
합계	1199	100.0

학력 및 학교생활에 대해 국선보조인과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질문하였다. ‘약간 이야기 하였다’는 응답이 549명 45.9%로 나타났으며, ‘많이 이야기 하였다’는 236명, 19.7%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278명, 23.2%,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134명, 11.2%로 나타났다.

〈표 4-31〉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6: 학력 및 학교생활

	빈도	%
전혀 하지않았다	134	11.2
별로 하지않았다	278	23.2
약간 이야기하였다	549	45.9
많이 이야기하였다	236	19.7
합계	1197	100.0

국선보조인이 소년과 접견시 소년들의 교우관계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질문하였다. 국선보조인과 교우관계에 대해 ‘약간 이야기 하였다’는 응답이 463명

38.7%로 가장 많았다. ‘많이 이야기 하였다’는 응답은 200명 16.7%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36명 28.1%로 나타났으며 국선보조인이 소년과 교우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97명 16.5%나 되었다.

〈표 4-32〉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7: 교우관계

	빈도	%
전혀 하지않았다	197	16.5
별로 하지않았다	336	28.1
약간 이야기하였다	463	38.7
많이 이야기하였다	200	16.7
합계	1196	100.0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능력은 소년의 처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때문에 국선보조인은 보호자의 보호력에 관해 소년과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견시 국선보조인과 이에 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0명, 8.4%에 이르렀고 ‘별로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04명 17.0%였다. 반면, ‘약간 이야기하였다’는 응답은 503명, 42.0%이며 ‘많이 이야기하였다’는 390명 32.6%에 지나지 않았다. 즉 70%의 국선보조인들이 소년 보호자의 보호력에 관해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표 4-33〉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8: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빈도	%
전혀 하지 않았다	100	8.4
별로 하지 않았다	204	17.0
약간 이야기하였다	503	42.0
많이 이야기하였다	390	32.6
합계	1197	100.0

국선보조인과 향후 생활계획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조사하였다. 소년의 향후 생활계획은 소년의 재비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하지않았다’는 응답이 109명 9.1%였고, ‘별로 하지않았다’는 응답이

189명, 15.8%로 나타났다. 반면 ‘약간 이야기하였다’는 496명 41.4%, ‘많이 이야기였다’는 404명 33.7%에 지나지 않았다.

〈표 4-34〉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9: 향후 생활계획

	빈도	%
전혀 하지않았다	109	9.1
별로 하지않았다	189	15.8
약간 이야기하였다	496	41.4
많이 이야기하였다	404	33.7
합계	1198	100.0

피해자와의 합의노력에 대해 국선보조인과 접견시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질문하였다.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16명, 18.0%, ‘별로 하지 않았다’는 298명 24.9%로 나타났다. 반면, ‘약간 이야기 하였다’는 응답은 419명 35.0%, ‘많이 이야기 하였다’는 265명, 22.1%로 결과 되었다. 피해자와의 합의노력은 처분시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국선보조인은 소년과 소년의 보호자에게 이에 관해 조언 해주고 피해자와 소년측을 중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40%가 넘는 변호인들이 접견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10: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빈도	%
전혀 하지않았다	216	18.0
별로 하지않았다	298	24.9
약간 이야기하였다	419	35.0
많이 이야기하였다	265	22.1
합계	1198	100.0

국선보조인과 접견시 이번 비행의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9명 16.6%, ‘별로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30명, 19.2%로 나타났다. 반면 ‘약간 이야기하였다’는 450명, 37.6%, ‘많이 이야기하였다’는 318명, 26.6%로 결과되었다. 국선보조인과 비행처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상된 처분의 결과를 이야

기한다는 것이 아니다. 국선보조인은 소년들에게 예상될 처분을 미리 말해주면 안된다. 특히 시설내 처우를 언급할 경우, 위탁소년들이 자포자기적 심정으로 심사원에서 생활을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고, 국선보조인은 변호인과 달리 무조건 시설내 처우를 회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성향에 가장 적합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므로 낮은 처분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면서 법정에서의 처분결과에 관해 선입견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처분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고, 특히 시설내처우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발심을 줄이고 향후 어떤 처분결과가 나던지 원만히 수용하도록 돕기 위해 시설내 처우의 장점, 입소할 경우 배우고 싶은 직업훈련 등, 소년과 처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30% 이상의 국선보조인들이 비행의 처분에 관해 소년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36〉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11: 이번 비행의 처분

	빈도	%
전혀 하지않았다	199	16.6
별로 하지않았다	230	19.2
약간 이야기하였다	450	37.6
많이 이야기하였다	318	26.6
합계	1197	100.0

2.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해 소년들에게 질문하였다. 전체응답자중 국선보조인이 자신을 '형식적으로 대했다'고 응답한 소년이 580명, 48.1%로 나타났다. 168명, 13.9%의 소년은 국선보조인이 자신을 '매우 형식적으로 대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329명, 27.3%의 소년이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소년은 130명, 10.8%에 지나지 않았다. 즉 60%가 넘는 소년들이 국선보조인의 태도가 형식적이었다고 응답했다.

〈표 4-37〉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1: 형식적인 태도

	빈도	%
전혀 아니다	130	10.8
아니다	329	27.3
그렇다	580	48.1
매우 그렇다	168	13.9
합계	1207	100.0

국선보조인이 조사대상자들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으로 느껴졌는지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중 258명, 21.3%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소년은 568명, 47.0%였다. 반면, '그렇다'라고 응답한 소년은 307명, 25.4%, '매우 그렇다'는 76명, 6.3%로 나타났다. 즉 전체 조사대상자중 30% 이상의 소년들이 국선보조인의 태도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편견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표 4-38〉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2: 비행소년에 대한 편견

	빈도	%
전혀 아니다	258	21.3
아니다	568	47.0
그렇다	307	25.4
매우 그렇다	76	6.3
합계	1209	100.0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질문하였다. 115명, 9.5%의 소년들이 '전혀 아니다'고 응답하였다. 303명, 25.1%의 소년들도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그렇다'라고 응답한 소년은 557명, 46.1%, 국선보조인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자 '매우 노력하였다'는 234명, 19.4%로 나타났다. 즉 35% 가량의 소년들은 국선보조인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65%가량의 소년들은 국선보조인이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3: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

	빈도	%
전혀 아니다	115	9.5
아니다	303	25.1
그렇다	557	46.1
매우 그렇다	234	19.4
합계	1209	100.0

조사대상자들에게 국선보조인의 태도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느꼈는지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중 336명, 27.8%의 소년들이 '전혀 아니다'고 응답하였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소년들은 577명, 47.7%였다. 반면, 228명, 18.9%의 소년들이 국선보조인의 태도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68명, 5.6%의 소년들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20%이상의 소년들이 국선보조인의 태도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표 4-40〉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4: 불신과 의심

	빈도	%
전혀 아니다	336	27.8
아니다	577	47.7
그렇다	228	18.9
매우 그렇다	68	5.6
합계	1209	100.0

국선보조인들이 소년들과 접견시 얼마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었는지 질문하였다. 106명, 8.8%의 소년들이 '전혀 아니다'고 응답하였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소년도 265명, 21.9%였다. 반면 '그렇다'라는 응답은 588명, 48.6%,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50명, 20.7%로 나타났다. 시설내에 있는 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이므로 국선보조인들은 상담사와 같은 역할을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 30%의 소년들은 국선보조인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표 4-41〉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5: 편안한 접견분위기

	빈도	%
전혀 아니다	106	8.8
아니다	265	21.9
그렇다	588	48.6
매우 그렇다	250	20.7
합계	1209	100.0

3.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심리(재판)과정과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였는지 질문하였다. ‘전혀 아니다’는 응답이 113명, 9.4%로 나타났다. ‘아니다’는 응답도 339명, 28.1%로 나타났다.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다’는 응답은 583명, 48.3%,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72명, 14.3%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 약 37%의 소년들이 자신을 담당했던 국선보조인의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표 4-42〉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1: 법률적 지식

	빈도	%
전혀 아니다	113	9.4
아니다	339	28.1
그렇다	583	48.3
매우 그렇다	172	14.3
합계	1207	100.0

국선보조인이 가족이나 또래관계, 성장과정, 학교생활 등 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질문하였다. ‘전혀 아니다’는 응답이 111명, 9.2%로 나타났다. ‘아니다’는 응답도 298명, 24.7%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584명, 48.4%,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13명, 17.7%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66%는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34%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고 느낀 것이다.

〈표 4-43〉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2: 성실한 조사과정

	빈도	%
전혀 아니다	111	9.2
아니다	298	24.7
그렇다	584	48.4
매우 그렇다	213	17.7
합계	1206	100.0

국선보조인은 변호인과 상담사, 멘토의 역할을 겸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선보조인이 소년의 장래와 비행방지를 위해 진심어린 조언을 했는지 질문하였다. 157명, 13.0%의 소년은 '전혀 아니다'고 응답하였다. '아니다'고 응답한 소년은 333명 27.6%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487명 40.4%, '매우 그렇다' 228명, 18.9%로 나타났다. 즉 40%의 가량의 응답자들은 국선보조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조언을 들었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60%가량의 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의 조력자로서 국선보조인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이해와 활동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4-44〉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3: 진심어린 조언

	빈도	%
전혀 아니다	157	13.0
아니다	333	27.6
그렇다	487	40.4
매우 그렇다	228	18.9
합계	1205	100.0

심리(재판)에서 국선보조인의 변론이 얼마나 성실하였는지 대한 평가를 통해 소년들이 국선보조인의 변호인 역할에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혀 성실하게 변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소년은 227명, 19.6%, '아니다'고 응답한 소년은 281명, 24.3%로 나타났다. 반면 '성실하게 변론했다'고 응답한 소년은 425명, 36.7%, '매우 성실하게 변론했다'고 응답한 소년은 224명, 19.4%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 43.9%의 소년들이 국선보조인이 성실하게 본인을 변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표 4-45〉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4: 성실한 변론

	빈도	%
전혀 아니다	227	19.6
아니다	281	24.3
그렇다	425	36.7
매우 그렇다	224	19.4
합계	1157	100.0

4.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정도를 조사하였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정도는 현재 국선보조인의 태도와 이전 경험 및 사법제도전체에 대한 소년의 인식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선보조인을 내편이라 생각해서 믿고 의지했는지 질문하였다.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은 137명 11.3%로 나타났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308명, 25.5%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528명, 43.7%로 결과 되었으며 ‘매우 믿고 의지하였다’는 응답도 235명 19.5%로 나타났다. 즉 60%이상의 소년들이 국선보조인을 내편이라 믿고 의지했다고 응답했다.

〈표 4-46〉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1: 믿고 의지함

	빈도	%
전혀 아니다	137	11.3
아니다	308	25.5
그렇다	528	43.7
매우 그렇다	235	19.5
합계	1208	100.0

국선보조인에게 사건내용과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는지 질문하였다. ‘전혀 아니다’는 응답은 48명, 4.0%, ‘아니다’는 응답은 83명, 6.9%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650명, 53.9%, ‘사건내용과 생각을 매우 솔직하게 말했다’는 응답은 426명, 35.3%로 나타났다.

〈표 4-47〉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2: 솔직하게 말함

	빈도	%
전혀 아니다	48	4.0
아니다	83	6.9
그렇다	650	53.9
매우 그렇다	426	35.3
합계	1207	100.0

‘국선보조인에 대한 기대가 없어 무성의하게 말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혀 아니다’는 소년이 407명, 33.7%, ‘아니다’ 475명, 39.3%로 나타났다. 즉 70% 이상의 소년들이 국선보조인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선보조인에게 기대가 없어 무성의하게 응답했다’는 소년은 ‘그렇다’(226명, 18.7%)와 ‘매우 그렇다’(100명, 8.3%)를 합쳐 326명, 27.0%로 나타났다.

〈표 4-48〉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3: 무성의하게 말함

	빈도	%
전혀 아니다	407	33.7
아니다	475	39.3
그렇다	226	18.7
매우 그렇다	100	8.3
합계	1208	100.0

5. 지역 및 국선보조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자들이 평가한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이 국선보조인의 성실성을 높게 평가한 지역은 부산(M=2.89 SD=0.655), 전주(M=2.94 SD=0.62), 청주(M=2.95 SD=0.522)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서울·경기(M=2.67 SD=0.685), 대전(M=2.73 SD=0.753)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F(8, 1156)=3.007) 사후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부산(M=2.82 SD=0.724) 제주(M=2.83 SD=0.898)로 나타

났으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성실성과 동일하게 서울·경기(M=2.58 SD=0.788). 대전(M=2.56 SD=0.906)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으나(F(8, 1130)=2.219) 사후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49〉 지역에 따른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성실성 및 만족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값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	서울·경기	411	2.67	.685	3.007**
	부산	176	2.89	.655	
	대구	157	2.80	.659	
	광주	126	2.81	.668	
	전주	86	2.94	.620	
	대전	67	2.73	.753	
	청주	41	2.95	.522	
	춘천	72	2.82	.664	
	제주	29	2.86	.891	
	합계	1165	2.79	.679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서울·경기	408	2.58	.788	2.219*
	부산	167	2.82	.724	
	대구	149	2.70	.760	
	광주	113	2.55	.765	
	전주	87	2.61	.826	
	대전	69	2.56	.906	
	청주	41	2.78	.519	
	춘천	74	2.64	.841	
	제주	31	2.83	.898	
	합계	1139	2.65	.786	

*p<.05, **p<.01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지역은 부산으로 나타났으며(M=2.86 SD=0.569) 제주도(M=2.66 Sd=0.631)와 전주(M=2.67 SD=0.632)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간 평균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8, 1180)=1.326).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정도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부산(M=3.09 SD=0.638), 제주(M=3.08 SD=0.719), 대구(M=3.05 SD=0.556)지역에서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전주(M=2.86 SD=0.714), 서울·경기 지역(M=2.91 SD=0.697)에서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8, 1180)=1.969) 사후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50〉 지역에 따른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태도평가 및 신뢰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값
국선보조인 태도평가	서울·경기	412	2.72	.569	1.326
	부산	183	2.86	.569	
	대구	159	2.74	.559	
	광주	129	2.75	.592	
	전주	88	2.67	.632	
	대전	70	2.76	.591	
	청주	41	2.77	.565	
	춘천	76	2.73	.549	
	제주	31	2.66	.631	
	합계	1189	2.75	.577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서울·경기	413	2.91	.697	1.969*
	부산	183	3.09	.638	
	대구	159	3.05	.556	
	광주	129	2.97	.630	
	전주	87	2.86	.714	
	대전	70	2.94	.655	
	청주	41	2.97	.586	
	춘천	76	2.99	.617	
	제주	31	3.08	.719	
	합계	1189	2.97	.656	

*p<.05

성실성, 만족도, 태도, 신뢰의 4가지 차원에서 국선보조인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부산지역에서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서울·경기지역이 부정 적임을 알 수 있다. 서울·경기와 부산의 수용 소년들중에는 특히 누범자 비율과 강력 범죄자 비율이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서울소년원에는 소수이지만 고등과정의

보호소년들이 전 지역에서 이송·수용되어 있고, 여자보호소년만 수용된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가 있는 등 타지역과 집단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울·경기지역의 결과를 차치하고, 부산의 결과만 해석하자면 부산 지역 소년들은 확실히 타지역에 비해 국선보조인이 더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타지역에 비해 만족도도 높고,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높은 신뢰감을 보였다. 즉 타지역이나 집단의 성격이 비교적 동질적이라 할 수 있는 서울·경기에 비해서도 부산지역 소년들의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는 현저하고 일관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그 지역 국선보조인들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실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선보조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성실성, 만족도, 태도, 신뢰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여성들의 평균이 남성보다 높았다. 먼저 국선보조인 성실성 평가를 보면 남성국선보조인의 평균은 2.75(SD=0.678) 여성은 2.87(SD=0.65)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859$, $p=0.004$). 만족도에서도 남성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2.62(SD=0.792), 여성은 2.73(SD=0.746)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평균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280$, $p=.023$).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도 남성국선보조인 평균이 2.72(SD=0.567), 여성 평균은 2.79(SD=0.599)로 여성의 평균이 더 높았다($t=-1.945$, $p=.052$). 그러나 평균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를 보면 남성국선보조인 평균이 2.94(SD=0.662) 여성이 3.04(SD=0.645)로 여성의 평균이 더 높아 조사대상자들이 여성국선보조인을 더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t=-2.304$, $p=.021$).

〈표 4-51〉 국선보조인의 성별에 따른 평가

	국선보조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	남성	785	2.75	.678	-2.859**
	여성	387	2.87	.650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남성	765	2.62	.792	-2.280*
	여성	375	2.73	.746	
국선보조인 태도평가	남성	799	2.72	.567	-1.945
	여성	390	2.79	.599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남성	799	2.94	.662	-2.304*
	여성	390	3.04	.645	

*p<.05, **p<.01

국선보조인의 연령대에 따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가 다른지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성실성, 만족도, 태도, 신뢰의 4가지 영역에서 20대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표 4-52〉 국선보조인의 연령에 따른 평가

	국선보조인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F값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	20대	109	2.84	.673	.180
	30대	431	2.79	.685	
	40대	405	2.79	.633	
	50대 이상	226	2.78	.704	
	합계	1171	2.79	.670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20대	105	2.75	.729	1.358
	30대	426	2.67	.781	
	40대	394	2.60	.783	
	50대 이상	216	2.69	.787	
	합계	1141	2.66	.779	
국선보조인 태도평가	20대	111	2.85	.588	2.319
	30대	438	2.77	.553	
	40대	409	2.71	.562	
	50대 이상	232	2.71	.641	
	합계	1190	2.75	.578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20대	111	3.08	.647	1.822
	30대	438	2.98	.634	
	40대	410	2.92	.655	
	50대 이상	230	3.00	.704	
	합계	1189	2.97	.657	

국선보조인의 성실성 평가를 보면 20대 평균은 2.84(SD=0.673)로 가장 높았고 30대(M=2.79 SD=0.685)와 40대(M=2.79, SD=0.633)가 동일하게 결과 되었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M=2.78 SD=0.704). 두 번째로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보면 20대 평균이 2.75 (SD=0.729), 30대(M=2.67 SD=0.781), 50대 이상(M=2.69 SD=0.787) 40대(M=2.6 SD=0.783)의 순서로 결과되었다.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20대 평균이 2.85(SD=0.5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대(M=2.77 SD=0.553)가 높았으며 40대(M=2.71 SD=0.562)와 50대 이상(M=2.71 SD=0.641)이 동일하게 결과 되었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를 보면 20대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M=3.08 SD=0.647). 두 번째로 50대 이상의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00 SD=0.704), 다음으로 30대(M= 2.98 SD=0.634), 40대(M=2.92 SD=0.655)의 순으로 결과되었다. 대체로 젊은 국선보조인들이 40대, 50대보다 소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국선보조인의 활동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접견횟수를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선보조인과 4회 이상 만난 조사대상자들이 성실성, 만족도, 태도, 신뢰의 4가지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국선보조인을 평가했다. 반면, 국선보조인과 만난 횟수가 1회에 지나지 않는 소년의 경우는 모든 평가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다. 먼저 성실성 평가를 보면 1회 접견했다고 응답한 소년의 평균은 2.72(SD=0.663)로 가장 낮았고 4회 이상(M=3.12 SD=0.599)이 가장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차이는 1회와 2회~3회간에도 유의미하였고 1회와 4회 이상간에도 유의미하였다($F(2, 1159)=26.115$).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보면 1회 접견의 평균이 2.58(SD=0.765)로 가장 낮았고, 2회~3회의 평균이 2.86(SD=0.733), 4회 이상이 평균 3.1(SD=0.8)로 가장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1회 접견집단과 2회~3회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1회와 4회 이상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129)=19.847$).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1회 접견집단의 평균이 2.71(SD=0.570)로 가장 낮고 2회~3회 접견한 집단의 평균은 2.84(SD=0.589) 4회 이상 접견

평균이 3.00(SD=0.572)으로 가장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1회 접견집단과 2회~3회 접견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1회 접견 집단과 4회 이상 접견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177)=8.739). 접견횟수에 따라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1회 접견집단의 평균은 2.94(SD=0.653)인 반면, 2회~3회 접견집단 평균은 3.08(SD=0.639), 4회 이상 접견집단 평균도 3.08(SD=0.687)로 동일하게 결과 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1회 접견집단과 2회~3회 접견집단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 1177)=5.774). 종합하면 접견횟수는 소년들이 평가한 국선보조인의 성실성, 태도, 만족도, 신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접견횟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성의를 가지고 보조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진이 예비조사를 위해 만난 분류심사원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단 한번도 접견을 오지 않은 국선 보조인도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⁷⁰⁾

〈표 4-53〉 접견횟수에 따른 국선보조인 평가

	접견횟수	N	평균	표준편차	F값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	1회	851	2.72	.663	26.115***
	2회~3회	274	3.01	.594	
	4회 이상	37	3.12	.599	
	합계	1162	2.80	.660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1회	834	2.58	.765	19.847***
	2회~3회	261	2.86	.733	
	4회 이상	37	3.10	.800	
	합계	1132	2.67	.771	
국선보조인 태도평가	1회	867	2.71	.570	8.739***
	2회~3회	276	2.84	.589	
	4회 이상	37	3.00	.572	
	합계	1180	2.75	.578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1회	867	2.94	.653	5.774**
	2회~3회	276	3.08	.639	
	4회 이상	37	3.08	.687	
	합계	1180	2.98	.653	

p<.01, *p<.001

70) “애를 만나지 않고 재판 받는 날 복도에서 만나서 메모해서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노크를 하길래 누구냐고 하니깐 웃으면서 국선보조인이라고 하면서 애를 못 만나서 잠시 만나면 안되냐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호송중이거나 법정안이더라도 변호사니깐 잠깐 만나게 해줄 수밖에...”(2016년 6월 8일 수요일 11시, ○○소년분류심사원 회의실)

접견시간에 따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앞의 접견 횟수와 마찬가지로 소년을 접견하는 시간이 긴 국선보조인일수록 성실성, 만족도, 태도, 신뢰에 있어 보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먼저 성실성 평가를 보면, 접견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은 2.65(SD=0.646)로 가장 낮았으며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집단의 평균은 3.10(SD=0.556), 1시간 이상인 집단의 평균은 3.26(SD=0.592)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30분 미만 집단과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하였고, 30분 미만 집단과 1시간 이상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하였다($F(2, 1166)=77.182$). 다음으로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접견시간 30분 미만인 집단의 평균은 2.49(SD=0.745)로 역시 가장 낮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집단의 평균은 2.97(SD=0.687), 1시간 이상인 집단 평균은 3.44(SD=0.568)로 가장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30분 미만 집단과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하였고, 30분 미만 집단과 1시간 이상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집단과 1시간 이상 집단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 1135)=78.801$).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접견시간 30분 집단의 평균은 2.64(SD=0.556)로 가장 낮았고, 접견시간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집단의 평균은 2.95(SD=0.551), 1시간 이상인 집단 평균은 3.15(SD=0.557)로 각각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30분 미만 집단과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30분 미만 집단과 1시간 이상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184)=51.823$).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도 접견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접견시간이 30분 미만인 집단의 평균은 2.87(SD=0.649),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집단의 평균은 3.19(SD=0.601) 1시간 이상인 집단의 평균은 3.33(SD=0.575)로 각각 결과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30분 미만 집단과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30분 미만과 1시간 이상 집단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 1184)=38.909$). 앞서 국선보조인 접견횟수와 마찬가지로 보다 성실히 보조인 활동에 임하는 사람일수록 접견시간도 길고, 대상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54〉 접견시간에 따른 국선보조인 평가

	접견시간	N	평균	표준편차	F값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	30분 미만	783	2.65	.646	77.18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337	3.10	.556	
	1시간 이상	49	3.26	.592	
	합계	1169	2.80	.658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30분 미만	774	2.49	.745	78.80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316	2.97	.687	
	1시간 이상	48	3.44	.568	
	합계	1138	2.67	.770	
국선보조인 태도평가	30분 미만	801	2.64	.556	51.82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336	2.95	.551	
	1시간 이상	50	3.15	.557	
	합계	1187	2.75	.578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30분 미만	802	2.87	.649	38.909***
	30분 이상 1시간 미만	335	3.19	.601	
	1시간 이상	50	3.33	.575	
	합계	1187	2.98	.653	

*** $p < .001$

국선보조인이 대면이나 전화상으로 가족을 상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국선보조인의 성실성, 만족도, 태도, 신뢰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국선보조인 성실성 평가를 보면 가족을 상담한 적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96(SD=0.635), 상담한 적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2.45(SD=0.692)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9.245$, $p < .001$). 만족도에서도 가족을 상담한 적이 있는 국선보조인 집단 평균은 2.85(SD=0.746)로 나타나 상담한 적이 없는 집단 평균($M=2.26$ SD=0.77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9.284$, $p < .001$).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가가 보다 긍정적이었으며(있다. $M=2.85$ SD=0.583, 없다. $M=2.54$ SD=0.513) 집단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7.123$, $p < .001$).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에서 가족을 상담한 적이 있는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있다. $M=3.09$ SD=0.66, 없다 $M=2.73$ SD=0.599) 집단간 통계적 차이도 유의미하였다($t=6.860$, $p < .001$).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선보조인이 가족을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년들이 국선보조인의 성실성과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만족도와 신뢰도 높았다.

〈표 4-55〉 가족상담여부와 국선보조인 평가

	상담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	있다	535	2.96	.635	9.245***
	없다	198	2.45	.692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있다	520	2.85	.746	9.284***
	없다	199	2.26	.779	
국선보조인 태도평가	있다	544	2.85	.583	7.123***
	없다	205	2.54	.513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있다	543	3.09	.660	6.860***
	없다	205	2.73	.599	

***p<.001

7. 조사대상자 비행경력과 국선보조인 평가

조사대상자의 비행경력에 따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가 다른지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비행경력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는 성실성, 만족도, 태도에 대한 평가와 달리 소년 자신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선입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초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연령에 따라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최초로 경찰조사를 받은 연령이 13세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평균은 2.86(SD=0.721)로 가장 낮았고, 최초로 경찰조사를 받은 연령이 14세에서 18세 사이인 집단 평균은 2.99(SD=0.636), 19세 이상인 집단 평균은 3.17(SD=0.667)로 각각 결과되었다. 사후검증결과 13세 이하 집단과 14세~18세 집단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 1183)=3.780). 이를 종합하면 경찰조사를 받은 최초 연령이 어릴수록, 즉 사법기관과 접촉한 연령이 낮을수록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56〉 최초로 경찰서 조사를 받은 연령에 따른 국선보조인 신뢰 정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13세 이하	193	2.86	.721	3.780*
14세 이상 18세 이하	964	2.99	.636	
19세 이상	29	3.17	.667	
합계	1186	2.97	.653	

*p<.05

경찰조사를 받은 횟수에 따라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4회 이하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은 3.03(SD=0.678)으로 가장 높았다. 5회에서 9회 사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2.98(SD=0.593)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10회에서 19회 사이(M=2.93 SD=0.686), 20회 이상(M=2.88, SD=0.681)으로 각각 결과 되었다.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만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3, 1177)=2.653). 통계분석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횟수가 적을수록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는 높고, 반대로 경찰조사를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57〉 경찰조사를 받은 횟수에 따른 국선보조인 신뢰 정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4회 이하	402	3.03	.678	2.653*
5회 이상 9회 이하	334	2.98	.593	
10회 이상 19회 이하	287	2.93	.686	
20회 이상	158	2.88	.681	
합계	1181	2.97	.659	

*p<.05

보호관찰을 받은 횟수에 따라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은 3.05(SD=0.623)로 가장 높았다. 2회에서 3회 사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은 2.97(SD=0.652)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4회에서 5회 사이(M=2.90, SD=0.700), 6회 이상(M=2.87, SD=0.650)으로 각각 결과 되었다. 보호관찰을 받은 횟수도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는데, 보호관찰을 받은 횟수가 적을수록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도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만 사후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3, 1200)=2.704).

〈표 4-58〉 보호처분 받은 횟수에 따른 국선보조인 신뢰정도

	N	평균	표준편차	F값
1회 (이번 처음)	281	3.05	.623	2.704*
2~3회	605	2.97	.652	
4~5회	252	2.90	.700	
6회 이상	66	2.87	.650	
합계	1204	2.97	.657	

*p<.05

보호관찰을 받은 횟수에 따라 국선보조인 성실성 평가,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국선보조인 태도평가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호관찰을 받은 횟수가 4회에서 5회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M=2.83 SD=0.665), 2회에서 3회가 두 번째로 높았으며(M=2.78 SD=0.674) 6회 이상(M=2.76 SD=0.701)과 1회(M=2.76 SD=0.691)가 동일하게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간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F(3, 1176)=.435). 다음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횟수에 따라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보호관찰을 받은 횟수가 1회(M=2.70 SD=0.777)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회에서 3회(M=2.65 SD=0.776), 4회에서 5회 순으로 집단의 평균이 높았다(M=2.61 SD=0.792). 6회 이상의 보호관찰을 받은 집단에서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M=2.55 SD=0.853). 그러나 국선보조인 성실성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집단간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F(3, 1153)=.869).

보호관찰을 받은 횟수에 따라 국선보조인의 태도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1회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M=2.83 SD=0.557), 다음으로 2회에서 3회(M=2.74 SD=0.575), 4회에서 5회(M=2.69 SD=0.587), 6회 이상(M=2.68 SD=0.606)의 순서로 결과 되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보호관찰 1회 집단과 4~5회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 1200)=2.988).

〈표 4-59〉 보호처분횟수에 따른 국선보조인 평가

		N	평균	표준편차	F값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	1회 (이번 처음)	274	2.76	.691	.435
	2~3회	595	2.78	.674	
	4~5회	244	2.83	.665	
	6회 이상	67	2.76	.701	
	총계	1180	2.79	.677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1회 (이번 처음)	256	2.70	.777	.869
	2~3회	584	2.65	.776	
	4~5회	251	2.61	.792	
	6회 이상	66	2.55	.853	
	총계	1157	2.65	.784	
국선보조인 태도평가	1회 (이번 처음)	280	2.83	.557	2.988*
	2~3회	605	2.74	.575	
	4~5회	252	2.69	.587	
	6회 이상	67	2.68	.606	
	총계	1204	2.74	.576	

* $p < .05$

8.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국선보조인 성실성 평가를 보면 남자청소년의 평균($M=2.79$ $SD=0.687$)이 여자청소년의 평균($M=2.77$ $SD=0.634$)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여자청소년의 평균($M=2.67$ $SD=0.750$)이 남자청소년의 평균($M=2.65$ $SD=0.791$)보다 더 높았다. 국선보조인 태도평가에서도 여자청소년의 평균($M=2.80$ $SD=0.586$)이 남자 청소년의 평균($M=2.73$ $SD=0.574$)보다 더 높았다. 마지막,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에서도 여자 청소년의 평균($M=2.99$ $SD=0.655$)은 남자 청소년의 평균($M=2.97$ $SD=0.6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실성을 제외하고,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국선보조인의 태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남자청소년보다 국선보조인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결과 되었다. 그러나 4가지 변인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60〉 성별에 따른 국선보조인 평가

		N	평균	표준편차	t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	남자	960	2.79	.687	.404
	여자	217	2.77	.634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남자	942	2.65	.791	-.354
	여자	209	2.67	.750	
국선보조인 태도평가	남자	984	2.73	.574	-1.521
	여자	217	2.80	.586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남자	983	2.97	.655	-.397
	여자	218	2.99	.655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를 보면 가장 어린 16세 이하 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M=2.85 SD=0.663). 다음으로 17세 이상 19세 미만(M=2.79 SD=0.671), 19세 이상(M=2.72 SD=0.691)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F(2, 1142)=2.887).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도 성실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어릴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16세 이하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M=2.76 SD=0.784), 다음으로 17세 이상 19세 미만(M=2.62 SD=0.797), 19세 이상(M=2.58 SD=0.764)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16세 이하와 17세 이상 19세 미만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하였고, 16세 이하와 19세 이상 집단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 1116)=4.299).

연령에 따른 국선보조인 태도평가를 분석하였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어릴수록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다. 16세 이하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M=2.87 SD=0.556), 17세 이상 19세 미만(M=2.71 SD=0.594) 집단의 평균이 두 번째로 높았다. 19세 이상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M=2.69 SD=0.557). 사후분석 결과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16세 이하와 17세 이상 19세 미만 간에도 유의하였으며, 16세 이하와 19세 이상간에도 유의하였다(F(2, 1164)=9.188).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도 연령이 어릴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세 이하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M=3.03 SD=0.679) 다음으로 17세 이상 19세 미만(M=2.99

SD=0.642), 19세 이상(M=2.89 SD=0.659)의 순서로 결과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16세 이하와 19세 이상 두집간에 유의하였다($F(2, 1164)=3.410$).

〈표 4-61〉 연령에 따른 국선보조인 평가

		N	평균	표준편차	F값
국선보조인 성실성평가	16세 이하	291	2.85	.663	2.887
	17세 이상~19세 미만	586	2.79	.671	
	19세 이상	268	2.72	.691	
	총계	1145	2.79	.675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16세 이하	278	2.76	.784	4.299*
	17세 이상~19세 미만	572	2.62	.797	
	19세 이상	269	2.58	.764	
	총계	1119	2.65	.788	
국선보조인 태도평가	16세 이하	298	2.87	.556	9.188***
	17세 이상~19세 미만	596	2.71	.594	
	19세 이상	273	2.69	.557	
	총계	1167	2.75	.580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	16세 이하	297	3.03	.679	3.410*
	17세 이상~19세 미만	597	2.99	.642	
	19세 이상	273	2.89	.659	
	총계	1167	2.97	.657	

* $p < .05$, *** $p < .001$

제5절 소결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는 7월에 전국의 소년원과 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방식은 연구진이 각 기관에 설문을 우송하여 기관내 설문조사의 책임을 맡은 담당자가 진행하였고 조사가 끝난후 연구진에게 설문을 반송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총 1658부의 설문을 배부하여 1351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는데 이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유효한 표본수는 1227부였다. 서울소년원의 인원수가 가장 많아 배포한 설문도 가장 많았으며 수거한 설문도 가장 많다. 다음으로 서울분류심사원과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 대구, 광주가

그 뒤를 이었다. 복수의 국선보조인을 만난 소년들이 과반 이상이므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선보조인을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으로 한정하였다.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국선보조인의 접견횟수와 접견시간을 보면, 70%이상의 소년들이 단 일회만 국선보조인을 만났다고 응답했으며, 접견시간도 30분 미만인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의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들과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면담이나 유선으로라도 가족을 만난 국선보조인은 44%에 지나지 않았다.

소년과 국선보조인이 만나 상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주제는 사건의 내용, 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보호력, 향후 생활계획 등으로 변론과 의견서 작성을 위한 가장 최소의 정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년이 비행에 이르게된 과정을 이해하고 소년의 현재 상태를 세심히 살피기 위해 필요한 과거 비행경력이나 성장과정,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주제들은 접견시 심도깊게 이야기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조사기간과 보호관찰 등 기타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조사가 빠져 국선보조인 활동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한계는 있으나 부산지역이 국선보조인의 성실성,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국선보조인의 태도평가,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의 4가지 평가 지표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어느 하나가 아닌 4개 지표 모두에서 일관되게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보호소년이 누락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지역 국선보조인의 활동이 타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현상을 실증한다고 볼 수 있다.

국선보조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평가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오십대보다는 이삼십대에 대한 평가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젊은 여성 국선보조인들의 활동이 성실한 것에도 기인하나 여성적인 부드러움, 소년과 적은 연령차 등이 대상자들에게 편안하고 보다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연한 결과이나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면 국선보조인이 소년을 접견한 시간이 길고 접견한 횟수가 많을수록 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가족을 상담한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년의 특성에 따른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 차이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 나이에 수사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고 비행경력이 많으며, 연령이 높은 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가 낮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보조인은 소년의 변호인인 동시에 후견인으로서 분류심사관, 법원조사관 등과 더불어 처분결정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때문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하지만 본 조사결과에서는 일회 접견, 30분 미만 접견, 가족이나 보호자 상담생략, 불충분한 조사내용 등 향후 시정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 조사는 타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설문외 생략, 한정된 조사기간 등으로 충분한 표집을 확보하지 못해 통계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소년들은 국선보조인의 보조를 받는 대상자로서 이들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므로 유사한 실증적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조사결과는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심층면접 결과 분석

황지태 · 손소영

심층면접 결과 분석

제1절 심층면접의 개요

1. 심층면접 방법

국선보조인의 실제 업무와 인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전국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지역과 직업을 고려해서 보조인을 선정하였는데, 서울, 인천, 광주, 부산, 창원, 춘천 지역의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은 국선보조인의 사무실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1인당 평균 1시간-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국선보조인 활동 시작 시기, 활동 기간, 국선보조인 역할 및 활동 내용, 다른 지역 및 소속기관 국선보조인과의 교류, 국선보조인 활동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다루었다.

추가적으로 판사 3인, 서울소년심사분류원 직원 및 심사관 3명과 분류심사 대상 소년사범 2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판사 면접은 1인당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분류심사원 직원과 소년 면접은 심사원 회의실과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2. 심층면접 대상자

심층면접 대상자는 시설 내 소년, 국선보조인과 관계인, 현 국선보조인 3그룹으로 구분해서 실시하였다.

시설 내 소년은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으로 2명 모두 여러 건의 비행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설 내 소년1>의 경우 국선보조인을 만난 경험은 1차례였으며 면담시간은 약20~25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시설 내 소년2>의 경우 6~7차례 국선보조인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면담시간은 짧게는 10~2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고 응답한 소년이였다.

<표 5-1> 심층면접 대상자_시설 내 소년

연번	대상자	지역	날짜	직업	국선보조인면담 경험횟수
1	시설 내 소년1	서울	2016.6.8	분류심사원 대상 학생	1회
2	시설 내 소년2	서울	2016.6.8	분류심사원 대상 학생	6~7회(6-7명)

기타 관계자는 가정법원판사와 분류심사원 직원 및 심사관이며 이들은 국선보조인의 활동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 심층면접 대상자_기타 관계자

연번	대상자	지역	날짜	직업
1	분류심사원관계자A	서울	2016.06.08	서울분류심사원 직원
2	분류심사원관계자B	서울	2016.06.08	서울분류심사원 심사관
3	분류심사원관계자C	서울	2016.06.08	분류심사관경력자
4	판사A	부산	2016.05.04	가정법원판사
5	판사B	서울	2016.06.16	가정법원판사
6	판사C	서울	2016.06.9	가정법원판사

현 국선보조인은 지역과 직업별로 구분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직업은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로 구분하였고, 청소년 전문가의 경우 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이 포함되었다.

〈표 5-3〉 심층면접 대상자_현 국선보조인

연번	대상자	지역	날짜	직업	국선보조인 경력
1	국선보조인A	서울	2016.07.05	변호사	8년
2	국선보조인B	서울	2016.06.01	변호사	8년
3	국선보조인C	광주	2016.07.06	청소년센터 종사자 (광주광역시청소년복지센터)	11년
4	국선보조인D	창원	2016.07.21	청소년센터 종사자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6년
5	국선보조인E	춘천	2016.08.10	청소년센터 종사자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7년
6	국선보조인F	인천	2016.04.27	목사	5년

제2절 심층면접 분석 결과

1. 국선보조인 제도에 대한 평가_관계자

가. 시설 내 소년

1) 국선보조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대상자는 분류심사원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소년으로 재판에 앞서 국선보조인을 한차례 만났으며 국선보조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국선보조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있었으나, 대상자는 ‘국선보조인’이라는 명칭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국선보조인을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 다음은 대상자 면담을 통해서 얻은 국선보조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응답 내용이다.

면담자 : 정식으로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소년1 : 몰라요. 보조인?

면담자 : 국선보조인의 직업이 여러 개인데, 혹시 직업이 뭔지 알아요?

소년1 : 아니요. 몰라요.

면담자 : 국선보조인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 했나요? 몇 분 정도? 한번?

소년1 : 20분? 25분 정도, 저번 주 한번 만났어요. 재판 할 때 오신데요. 그래서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재판할 때 오는구나 했는데, 분류심사원 선생님이 진짜 변호사가 아닐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면담자 : 변호사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몇 번이나 만났어요?
소년2 : 7명
면담자 : 정말로?
소년2 : 네, 6명, 7명...
면담자 : 뭐라고, ●●한테 뭐라고...
소년2 : 국선변호사
면담자 : 어, 국선변호사라고 불러?
소년2 : 네.

2) 국선보조인과의 면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 국선보조인의 처분에 대한 언급

국선보조인 제도에서는 재판을 하기 전 소년사범에 대한 예상 처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소년범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선보조인이 언급을 지양해야할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국선보조인이 소년범의 예상 처분을 알려 주고, 이에 대한 소년의 반응을 보여주는 면담상황이다.

면담자 : 진짜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다?
소년1 : 심사원 선생님이 변호사한테 화가 나있었어요. 그 변호사 진짜 변호사도 아닌 데 저의 형량을 따지냐고, 자기 9호로 갈수 있다고 하셔서
면담자 : 잘 못하면 9호 갈수 있다고?
소년1 : 네 잘 못하면 9호 갈수 있다고, 저는 여기서 생활 잘하고 판사님한테 주는 성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1,2호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면담자 : 변호사님이 또 온다고 하셨어요?
소년1 : 물어봤는데, 또 안 오시고 재판 때만 오신데요.
면담자 : 20분 동안 무슨 이야기했어요?
소년1 : 그런 이야기 하면서 부모님과 사이, 여기 생활.. 15일정도 남아있었는데 재판 전까지 잘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면담자 : 주로 부모님 사이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인 것은 뭐 물어봤어요?
소년1 : 개인적인 거요? 개인적인 거... 학교생활... 선생님이랑 안 좋았었는데, 변호사가 학교선생님한테 의견서 같은 거 받았는데.. 학교선생님도 저 학교생활 못한 거 범죄경력이라든가 부모님과의 생활. 친하냐 안 친하냐 가출횟수 물어봤어요.
면담자 : 그런 다음에 9호 갈수 있다, 9호 이야기 듣고 어땠어요?
소년1 : 진짜 속상했어요. 여기 담임쌤, 계장님들 다 크게 안 간다고, 처음 들어왔으며 1,2호 가는데... 쌤들이 1,2호 갈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크게 간다고 해서.. 그랬죠. 자신이 없었죠.

소년2 : 변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왔냐 물어보고, 어차피 못나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그렇게 생각한다...얘기는 좋게 해준다고...여기서 10호 처분 생각하고 있음 될 거라고. 알겠다고...

(2) 소년범의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와 인식

국선보조인은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절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⁷¹⁾ 다시 말해 소년 재판에서 소년범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선보조인이다. 이에 면담자는 소년에게 국선보조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또한 재판과정에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소년은 국선보조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20점이다' 라고 답하였으며, 재판에 함께 참석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묻자 '선생님, 변호사 말고 엄마요' 라고 대답하였다. 다음은 구체적 응답내용이다.

면담자 : 변호사에 대한 믿음을 100점 만점으로 하면 어느 정도예요?

소년1 : 20점?..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안 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형 애들이 변호사를 사야하는데... 나온 것 같아요..

면담자 : 변호사, 선생님 등등 주변인 중에 한명만 재판에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랑 들어가고 싶은지?

소년1 : 한 명 밖이면.. 엄마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저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나쁘게 말했어요. 선생님, 변호사 말고 엄마요.

면담자 : 혹시 부모님은 그 사람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 안했다고 하셨지?

소년2 : 네.

면담자 : ○○은 그래서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했겠네...

소년2 :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면담자 : 어떤 점이 제일 안 좋아?

소년2 :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데 믿질 않고 종이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사람애기 안 들어주고, 판사한테 유리하게 얘기해 달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그런 걸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어딜 가도 말은 똑같은 말.

면담자 : 어딜 가도 말이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지?

소년2 : 나이가 어렸다 학교를 그만뒀다 그런 얘기들만...30초 20초에서 다 끝나버리고,

면담자 : 길게 안 해주고 30초 20초에 재판정에서...

면담자 :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하고도 많이 해? 뭐 어땠었다는 등등...

71)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소년2 :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다 별로였다...

면담자 : 뭐 어떤??

소년2 : 공범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한 변호사가 우리 공범들 다 맡고 있었는데, 다 별로였다고...

면담자 : ○○이 바라는 대로 판사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소년2 : 처분은 정해져있으니깐 그건 상관없는데 내 말을 안 믿어주고 안 들어주고...처분은 정해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짓지 않은 죄가 있는데 안 믿어주고...

(3) 국선보조인의 면담과정

면담자 : 국선보조인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 했나요? 몇 분 정도? 한번?

소범1 : 20분? 25분 정도, 저번 주 한번 만났어요. 재판 할 때 오신데요. 그래서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재판할 때 오는구나 했는데, 분류심사원 선생님이 진짜 변호사가 아닐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면담자 :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보통 몇 시간이나 이야기를...

소년2 : 짧은 거는 20분 10분, 길었던 건 한 시간 좀 안되게,

면담자 : 대체로 길게 이야기한 사람이 많나 짧게 이야기한 사람이 많나

소년2 : 거의 다 짧았어요.

면담자 : 10분 20분?

소년2 : 네.

면담자 : 그러면 이 7명 만난 사람들 한명 한명 잘라보면 몇 번쯤 만난거야

소년2 : 모두 다 한번만, 구치소에 잘해줬던 분은 5번 정도,

면담자 : 그 여자분만?

소년2 : 네,

면담자 : 그분이 성의가 있네...그러고는 다 딱 한번 찾아온거야...그렇구나....

면담자 : 그 구치소에 온 분은 젊은 분이셨나요?

소년2 : 네, 일 있을 때 궁급한 거 있으면 자기한테 편지하라고 변호사접선 와 가지고...

면담자 : 그렇구나...그러면 그 분들 중에서 성오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 그 사람들이?

소년2 : 한 명밖에...

면담자 : 그 여자분?

소년2 : 아니요 남자분. 아빠가 찾아가서...

면담자 : 아빠가 어떤 이야기했다고 ○○한테 이야기를...

소년2 : 사건이야기...

면담자 : 전화로도 이야기한 적 없어?

소년2 : 있어요. 한명 그 여자분 전화를 쥐가지고...

면담자 : 그 외에는 전화를 준적이 없다는 거지 그래도 그 여자분만 전화로, 나머지 한 분은 아빠가 찾아가서 만난 거고...

소년2 : 네.

나. 분류심사원 직원 및 심사관

1) 국선보조인 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선보조인의 예상 처분 언급

앞서 소년법과의 면담 내용에서도 나타났지만 처분에 대한 언급이 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선보조인들 사이에서는 처분에 대한 언급은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선보조인의 이러한 부주의는 소년의 분류심사원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분류심사원 직원 및 심사관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면담자 : 국선보조인들이 아이들에게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포함한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류심사원관계자A : 보통은 수박 곁핥기 식으로 아이들을 보면서 경험 있는 사람들은 비행명 비행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 알고 있다. 윤간, 강간은 10호 처분 등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국선보조인들이 아이들에게 처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분류심사원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고치지 위해서 노력하는데 변호사가 딱 말해버리면 국선보조인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10호라는 것을 알고 나면 아이들이 면담 이후에 생활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면담에서 아이들의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실제로 집으로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다. 강간 후에도 판사님이 집을 보내기 위해서 5-8호처분, 집으로 보내기 위해 처분을 내리기도 하는데 변호사가 9,10호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점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불만이다.

분류심사원관계자B : 지난주 당직 근무를 할 때 여학생이 점심을 먹지 않았고 아이가 속이 좋지 않다고 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체한 것 같다고 말하여 약을 처방하려고 했지만 알약을 먹지 못한다고 시럽약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이가 소화불량으로 보이지 않았다. 스트레스, 신경성으로 아픈 것 같아서 따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날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말하면 아이가 울음을 터트리면서 변호사가 집에 가지 못한다고 했다. 아이에게는 아직 결정된 일이 아니라고 말은 하였지만 아이들은 변호사라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서 믿고, 수시로 변호사 접견에서 거의 변호사들은 아이들에게 사건에 대해서 사실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말만 물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변명이라고 하고 싶는데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 이러한 점들은 생활지도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2) 국선보조인의 면담 태도

소년법을 위탁받아 관리·교육하는 분류심사원 직원 및 심사관들은 국선보조인의 태도 및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류심사원 직원 및 심사관들의 면담결과를 보면, 국선보조인을 여러번 만난 경험이 있는 보호자의 경우 처음보다 국선보조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소년법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분류심사원을 찾은 국선보조인의 수도 적다고 답하였다. 또한 분류심사원에서 소년법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판 당일 재판장 복도에서 소년법을 처음 보고 면담을 하는 국선보조인들도 있다고 하였다.

면담자 : 국선보조인도 보호자를 만나나요?
 분류심사원관계자B : 면담 할 때 국선보조인을 만났다, 부모님들을 만났다고 들은 적은 있다.
 분류심사원관계자A : 제가 볼 때 매일 하는 질문이 변호인이 언제 선정이 되나, 국선보조인이 연락이 언제 오나, 연락이 왜 없냐 라는 질문을 받는데, 아이가 처음 오는 보호자만 물어봅니다. 여러차례 온 아이의 부모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거꾸로 보자면 국선보조인의 전화를 받아봤자 좋은 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국선보조인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선보조인들은 지난 가는 과정(열심히 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의정부와 인천 변호사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다.
 분류심사원관계자C : 보호자들이 국선보조인과 분류심사관을 구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 국선보조인들이 성의 없이 할 경우 보호자들이 재판전후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경우 분류심사원에 불평을 하시거나 평가지표에 좋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점이 매우 고민이고, 국선보조인들이 성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 성의 없이 하지 않는 기관이나 분류심사관에게까지 나쁜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분류심사원관계자A : 심지어는 돈도 받기도 한다. 활동비를 받는데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들었다.
 분류심사원관계자C : 국선보조인이 건당 20만원을 받고 별도로 부모님들에게 활동비를 받습니다.
 분류심사원관계자A : 20만원? 많이 받네요.
 분류심사원관계자C :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 이유는 오시면 한 학생당 8분밖에 안하시니까
 분류심사원관계자A : 애를 만나지 않고 재판 받는 날 복도에서 만나서 메모해서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노크를 하길래 누구냐고 하니깐 웃으면서 국선보조인이라고 하면서 애를 못 만나서 잠시 만나면 안 되냐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호송중이거나 법정 안이더라도 변호사니깐 잠깐 만나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

2) 국선보조인의 필요성 및 장점

(1) 국선보조인의 필요성

분류심사원 심사관에게 국선보조인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이들의 대답을 보면 보호자들이 국선보조인을 실제 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고, 사법절차에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나 결과를 제외한 부모 입장에서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국선보조인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내용이다.

면담자 :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국선보조인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분류심사관의 하는 일과 중첩되는 일이 많은데 현재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선보조인이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분류심사원관계자B : 근본적인 효과를 빼고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내 뒤에 있다는 것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대변하고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들은.

(2) 국선보조인의 장점

국선보조인의 장점으로는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는 성인범 재판에 비하여 소년 재판에서의 국선보조인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함으로써 소년범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치로서 다른 기관에서 놓칠 수 있는 소년범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면담자 : 국선보조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류심사원관계자A : 우리가 장치를 하나 더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도도 하고 분류심사도 하면서 케어하는 장치로 국선보조인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중삼중으로 하면서 아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장치를 둔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류심사원관계자B : 분류심사관들에게 내부적으로 요구되는 자제들 중에 상담자 교육자 조사자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하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검사의 역할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호 요인이나 아이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국선보조인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정확하게 검사 역할, 변호사 역할 딱 나누기 보다는 중복이 되도 괜찮은 점은 소년범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

(1) 사법절차에서의 개선점

소년범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여러 기관의 사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사나 검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현재 사법 기관의 소년범에 대한 자료는 서로 공유가 되지 않고 있으며 유일하게 재판과정에서 판사만이 각 기관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진실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각 기관의 정보 공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선보조인과 분류심사관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 참여에 있어 국선보조인은 무조건 참여하지만 분류심사관의 참여 여부는 상황에 따라 심사관의 선택 사항이고, 재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의 소견서만 재판에 제출하고 있다. 심사관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한다. 따라서 인력의 부족이 해결된다면 분류심사관의 재판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보조인 면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가능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 다음은 앞서 말한 국선보조인 제도의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개선점에 대한 응답 내용이다.

분류심사원관계자B : 경찰, 검찰, 상담조사, 분류심사 등 사법 절차 과정에서는 중복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심리검사, 상담이 거의 4번 정도를 받는데 자료가 넣어오면 좋겠지만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다. 법무부와 같은 라인이면 자료를 볼수 있지만, 법원이나 경찰 라인에서의 자료는 저희에게 오지 않습니다. 판사는 모든 단계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관계자A : 실제로 아이들을 상담을 많이 하면, 중첩되는 부분 검찰, 경찰, 상담조사 실제로 맘을 열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분류심사관이랑 상담을 하면서 많이 사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자료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자료를 뽑은 것을 가지고 국선보조인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재판에서 아이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류심사관과 국선보조인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조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심사원관계자B : 지난번에 저랑 같이 국선보조인과 딱 1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면접을 대기하고 있어서 옆방에서 아이를 면담을 하고, 변호사가 아닌 센터 쪽에서 일하시는 보조인. 제가 우선 아이를 먼저 면담하고 보조인에게 데려다 주면서 제가 궁금한 점점이 있어서 아이에 대한 정

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조서자료와 아이의 진술과 달라서 아이를 끝내고 나서 보조인에게 조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볼수 있다고 하고 나서 아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날은 국선보조인과 자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긴가민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인과의 정보교류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류심사원관계자A : 중첩이 되는 것을 가지고 아이를 케어하는 장치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뒤에 말했던 분류심사관하고 상담해서 애를 어떻게 조력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맞는 것 같다.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은 국선보조인 제도를 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하고 애를 더 적극적으로 케어하고 조력하려면 분류심사관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조력하는 것은 상관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분류심사원관계자B : 국선보조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개선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 심리하는 과정에서 판사도 있고 국선보조인이 반드시 나오는데 분류심사관은 심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참여를 못하는 경우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가 보니까 심사서를 쓰는 도중에 참여할 수 없어서 사실은 소견서로만 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대면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아이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선보조인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개선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제는 심사원의 추가설치라든지 인력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될 수 있겠죠.

(2) 국선보조인에 대한 정보 제공

소년면담은 대부분 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분류심사원 관계자들은 국선보조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심사원 직원들은 보조인의 직업이 무엇인지, 보조인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국선보조인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소년사범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면담자 : 분류심사원에서 국선보조인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점은 보지 않나요?

분류심사원관계자A :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는데, 자기 신분증, 선임계, 명단만 올 뿐 이 사람의 직업도 모릅니다. 직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류심사원관계자B : 이러한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아이가 혼란을 겪고 있는지 최소한 어떤 분이 왔는지 공유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가정법원판사

1) 국선보조인의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 비율에 대한 평가

국선보조인 제도가 처음 시행 되었을 때에는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몇 몇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서 변호사의 비율이 확대되었다. 현재 청소년 전문가 국선보조인은 각 가정법원에서 공고문을 올리고 자격요건⁷²⁾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정법원판사가 판단하여 위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변호사 국선보조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지역 변호사협회에서 국선보조인 신청서를 따로 받아 위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은 대체로 각 가정법원판사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 판사의 성향 따라 선호하는 보조인의 유형이 있나요? 변호사를 선호하는 이유?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판사B : 지역에 따라 변호사가 적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은 인력풀이 좋으니까.. 부산 판사님의 경우 비변호사(소년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신분)를 선호하는데 법원의 현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면담자 : 과거 언제부터 비변호사가 많았는지 알고 계시진.. 않죠..? 로스쿨과 관련 있지 않을까요?(기수와 상관있나요?)

판사B : 그것과 상관없는 것 같다.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변호사가 많아지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하지만 관심이 많아져서 지원하는 분이 많아져서...

면담자 : 그래도 기수가 높으신 분이..

판사B : 20만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텐데 봉사처럼 해주시는 분 많아요. 밥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오시는 분,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이예요.

면담자 :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부산 창원 같은 경우에 비변호사들이 많은 이유가, H 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변호사들이 해보니깐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돈 받고 거기 가서 뭐 성의 있게 하겠냐고,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은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애정이나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판사B : 사람 나름 인거죠. 그러니깐 뽑을 때 잘 뽑으면 그 사람이 변호사든 사회복지사든 아니면 심리상담사든 잘하는 거구요. 이 소년사법에 대한 이해도 낮고 그냥 일거리 차원에서 사무실 유지비 정도 별짓다는 생각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명함에 비행소년을 위해서 이러한 역할을 했다 한줄 쓰기 위해라든지, 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변호사든 다른 직역에 있는 사람이든 마찬가지 일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

72) 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

청서는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읽어봐도 결국 글이잖아요. 사람은 사실 면접을 하면 제일 좋은데, 면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 빨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할 사람을 우리가 신청서가 너무 부실해서 못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2)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필요성

국선보조인은 법률적 시각으로만 업무에 임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보조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판사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판사는 국선보조인과 상담자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국선보조인은 내담자의 편에 서서 지지해주는 상담자의 역할보다는 소년범 행동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언급해주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행동이 소년범의 어떠한 배경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면담자 :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환경이나 성격 같은걸 조사하는 이런 게 증폭 되는 게 많은데, 또 국선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쭙보고 싶는데 이제 판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제 애들 편에서 애들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면에서?

판사C : 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해요 누군가 가서. 근데 분류심사원에 계시는 교사나 거기 오는 교육하는 선생님들이나 봉사자들도 사실은 뭐 개의 얘기만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개를 교육시켜야 하고, 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혼을 내야 되고, 반성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재판도 잘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개 편이 되어가지고 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국선보조인이 일단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국선보조인에게 어떤 요구를 하나면 “당신은 상담자가 아닙니다. 국선보조인과 상담자의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일단 애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어줘. 그렇지만 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개가 그 책임을 다른데 돌리는 거라든지, 발뺌을 한다든지, 뻔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그렇게 개 편만 들고, 지지만 하고 응원만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상담자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별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담자는 개 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범죄를 개가 저질렀다 하더라도 애가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 후회를 하는 마음도 알아주고, 이러한 과정이라서 상담자가 국선보조인은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역할을 하기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도 사실은 부족하고, 상담전문자도 부족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하니깐.

면담자 :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판사C : 그런 이야기를 적절하게 재판부에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의견서에 다 쓰지 못하는 이야기를 판사한테 전화도 하고. 우린 그걸 바라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되어있고, 아이한테 상처라서 사실은 의견서에는 가볍게 썼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뭐 그런 거 이야기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정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에 대해서는 얼핏 봐서는 잘 모르는데 한 두시간 이야기를 나눠 보니 굉장히 우울이 깊고 정서적으로 불안이 굉장히 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입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국선보조인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럴려면 그런 부분에 관한 어느 정도의 통찰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국선보조인을 많이 하면, 오래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한두 명을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이제 그런 의견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상담치료 같은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분류심사원 심사보고서에 심사관 하기의 라포가 형성되어 가지구 심사관한테 털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걸 국선보조인한테 털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분류심사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나를 조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다 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4)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 국선보조인 활동과 운영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의 형태를 통해 지역별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신입자 교육에 판사만 교육자로 활동하기 보다는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국선보조인을 투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면담자 : 근데 말씀하신대로 판사님들마다 개념이라든지 국선보조인의 운영의 차이가 큰데 어떻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처럼 좀 큰 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국적으로?

판사C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선보조인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원이 국선보조인의 교육과 사례회의 그런 것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범적으로 국선보조인의 역할을 잘 이해하면서 활동하시는 분을 통해서 계속 신입 국선보조인들인 경우에는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시키거든요. 판사만 시키는게 아니라.

다음으로 소년범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분이다. 소년범 대부분이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년법을 돕기에는 정부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소년법을 돕기 위한 의료소년원에는 상주해야할 정신과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소년법 위탁 시설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면담자 : 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소년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넓게 말씀해주시겠어요?
 판사B : 우리나라의 소년 사법의 문제라면 밤새야하고.. 한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국선보조인에 말씀 드리자면. 비용문제가 .. 소년법의 특징이 돈 없고 뺨없고 가정도 불안하고 부모보호력 약하고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8-90퍼센트 이에요.. 6호 시설에 보내면 늘 재정문제임.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정부가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소년 한명 세끼 식사가 5천원 이에요. 그래서 자원 봉사나.. 기부를 통해서 아이들을 먹이는데 어떤 분은 소년범에게 성인범에게 관대한거 아닌가라는 분들도 있는데, 성인범들은 사식이 가능합니다. 옷도 좋은 옷 입을 수도 있고. 하지만 소년원은 주는 데로 입어야 하고... 아무리 기부와 자원봉사를 받는 다해도 한계가 있다. 6호 시설 경우 지방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아이들이 없는 왜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야 하나 해서.. 보조금을 안주겠다고 하거나.. 작년까지만 해도 생계비 수급을 했었는데 법원의 위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부양을 거부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생계수급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의료소년원에는 상주하는 정신과 의사가 없어요. 결국 돈이 문제잖아요. 돈을 안 쓰려고 해요. 국가사무가 되어야함. 사실 서울소년원에 서울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이감하기도 하는데 결국 국가가 담당해야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면서 우리 동네에 별로 없으니 보조금 지급 못하겠다고하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국선보조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시설에서 돈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국선보조인 제도에 대한 평가_국선보조인(現)

가. 변호사 국선보조인(서울지역)

1) 국선보조인의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에 대한 의견

국선보조인의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변호사인 국선보조인에게 국선보조인의 비율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각자의 분야를 잘 활용해서 소년법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면담자 : 지역별로 조사해본 결과 국선보조인 비법률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차지 비율이 지역편차가 많이 나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선보조인A : 변호사 아닌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륜도 있고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이들의 심리나 행동양식, 부모님의 입장 등을 경험을 통해 많이 알고 있다. 교육할 때에도 법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고 교육을 하면서 국선보조인의 특수성을 이야기해준다. 국선보조인 제도의 특수성을 설명해주고 형사사건 국선번호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 해준다. 소년법 취지 자체가 환경교정과 아이품행을 개선해주자 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비행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걸 빼고 그 아이의 비행만 가지고 의견서를 쓴다? 이것만 가지고는 의견서가 써지지도 않고 의견서를 쓸수 없다. 변호사들이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도 자체가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른 전문가들이 보조인을 할 때에는 판사님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 소년재판에 오는 애들은 비행이 너무 심해서 오는 것보다는 재범이 많아서 오는 애들이 오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법률전문가들이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충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관들이 굉장히 성실히 잘한다. 부모의 성장과정까지 조사를 하는 등 활발하게 행동을 하고 있고, 조사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다. 법원에서 판사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소년이나 부모를 만나는 조사관들이 있다.

면담자 : 굳이 법률가인이 아니어도 되나요?

국선보조인B : 그렇죠. 뭐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이구요. 비변호사나 변호사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가끔가다가 애가 사회봉사 처분을 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깐 변호사들은 지적을 할 수는 있죠.

2)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심리나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국선보조인의 다양한 역할 수행 등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멘토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면담자 : 국선보조인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선보조인A : 교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신규변호사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촉이 되지 않고, 거의 확정 수준에서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국선보조인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면담자 :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은 교육프로그램이 잡혀 있는건가?
 국선보조인A : 네 잡혀있죠, 그런데 각 시설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고 그냥 한번 씩 가본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소년원도 한번밖에 가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재판 이후 아이들이 가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과는 국선보조인과 단절이 되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에 시설에 대한 자료나 아이들이 지내게 되는 시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소년보호재판에 관해서는 법률 말고도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므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저희 교육프로그램에는 판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분류심사원 원장님도 오셔서 하시고, ○○○○ 센터장님이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는데 오시면 살레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1년에 1번 정도 하는데 교육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싶다. 시간이 나면 관련 논문들도 읽고 싶죠.

면담자 : 앞으로 이 국선보조인 제도가 좀더 좋아지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할까요?
 국선보조인B : 국선보조인제도가 이게 일을 하려다보면 끝이 없어요 범위가 없어요. 다른 사건에 비해가지고도 민사사건같은 경우에는 관련 쟁점만, 형사사건같은 경우에도 공소장 그 부분만 할건데, 국선보조인같은 경우는 환경부터 비행사실, 환경개선, 비행의 원인이 무엇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고 이러한 대책이 있을 때 보호자나 소년이 잘 따라오고 의지가 있는지 그런것들을 일일이 다 파악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려하다 보면은 한도끝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얘기한 것이 처음에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소년이나 보호자들이 높게 보잖아요. 그래서 멘토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한다.

나. 청소년 전문가 국선보조인

1) 광주지역

(1) 청소년 전문가 상호교류

전국의 국선보조인들은 서로간의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였지만 특정 지역들에서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예로 광주지역은 국선보조인 제도의 초기 때부터 판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긴밀한 연락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락과 만남은 현재에도 계속 이어

지고 있으며, 소년법을 위한 꾸준하고 효율적인 활동 등은 법원에서 많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국선보조인 활동을 하면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면담자 : 변호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유독 비법률전문가들이 많은 곳은 광주이다. 다른 지역과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선보조인C : 법원으로만 해석할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광주같은 경우에는 지역자들의 연계가 잘되어 있으며 공공영역의 측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과도 소통하고 잘 되어 있다. 교육청과도 서로 개방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 풍토이다. 저도 법원에서 활동을 3가지를 하고 있어서 제 의견을 구할 가능성과 기회가 많다. 광주가 6호 시설이 아직 없는데, 6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법원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정법원, 시청에 발표를 한 적도 있다. 판사들과도 늘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주 연락하고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려고 하는 풍토들이 있다. 대신에 비법률가들이 보조인제도 참여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열심히 한다. 아이들이 순천이면 순천, 목포면 목포로 가면서 단순하게 몇 번 접견이나 전화를 통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노력들을 민간자원들이 계속 하고 노력하고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으니깐 이런 제도에 있어서 법원에서도 신뢰를 하고 있다.

(2) 국선보조인 현황 및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

광주지역 국선보조인은 초창기 때부터 최근까지만 해도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이 높았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판사의 부임과 더불어 변호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선보조인 선정에 있어서 가정법원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역 청소년 전문가 국선보조인 역시 오랫동안 광주지역에서 국선보조인 활동을 하였지만 올해는 2번째 재판에 참여하는 등 보조인 활동이 많이 줄었다고 답하였다.

면담자 : H◎◎ 판사님은 처음 국선보조인 시작때부터 계속 계셨던 건가요? 판사에 따라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국선보조인C : 판사의 변동이 있으면 제도의 변화가 올 것이다. K○○ 판사, J◎◎원장님(현 지원법원부장판사)이 계셨는데, 다른 분이 원장으로 오셨는데 올해는 국선보조인 2번 정도 나갔는데, 전보다 너무 많이 줄었고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동료역시 한번 갔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관심에도 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도가 낮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면담자 : 전에 계셨던 판사님이 전달을 하셨죠?

국선보조인C : H◎◎ 판사님은 중요성을 이번 판사님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판사님의 성향이 민간인보다는 법률전문가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다. 예전에는 판사들과 친해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판사와는 소통이 없다. 이렇게 되면 민간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광주 국선보조인이 변호사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 단체나 연락을 통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국선보조인의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에 대해서 문자당연히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답하였다. 청소년 전문가의 경우 소년법과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도 쉽고 추후 지속적인 만남 과정에서 상담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는 등 소년법을 위한 추후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또한 변호사보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소년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선보조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수의 소년재판 경험으로 축적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소년재판은 법률적인 시각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하였다.

면담자 : 판사들 중에 변호사를 선호하는 판사가 있다. 비법률전문가가 나온가, 변호사가 나온가.?

국선보조인C : 제 생각에는 당연히 비법률전문가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위촉을 많이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법률 전문가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사법시장에 변호사가 너무 많이 늘어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인에게 왜 맡기냐라면서 요구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비법률가들이 만나게 되면 매우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추후에도 연락을 할 수 있고 부모님 상담도 할 수 있으며 전화도 자주 하하는 편이다. 그리고 좋은 것은 법원하고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참여시킬 수 있다. 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법률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상담 역시 해주고 비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어 매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면담자 : 법률적인 절차 부분을 비법률전문가의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국선보조인C :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1년 정도 하면 어느정도 소년사법 관련 법률을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알고 있다. 모르는 경우에는 찾아

봐야 하고 알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점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많이 할 때는 1년에 150번 정도 간 적이 있는데, 판사 판결을 보면 대충 어느정도 과정이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자세한 부분이 소년법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 아이의 목표, 반성정도, 부모의 지도 능력, 정상적인 교육정도, 지적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법률 판결만 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전인격적으로써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비전문가들이 더 괜찮은 것 같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비전문가의 인원이 늘어났던 것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민간인 위축을 늘렸던 것이다.

면담자 : 비법률전문가가 영향을 더 많이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국선보조인C : 5대5 정도도 괜찮고, 6대4로 비법률전문가가 조금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년사건은 법률적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부모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할려고 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합의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사님들과 이야기 해보면 부모님의 관심 정도 중요한 거라고 한다. 경력이 쌓이면 국선보조인들도 학력도 거의 대졸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3-4년 정도 쌓이고 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점보다는 국선보조인 제도가 꾸준히 시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면담자 : 국선보조인 제도에서 발전되어야 할 점은?

국선보조인C : 공식적인 제도가 중요한 것이 기관의 의지나 운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제도들은 계속 유지 되면 문제점도 나오겠지만 시사 받을 점, 좋을 점도 있을 텐데 문제가 생길 때 이러한 제도들이 사라진다는 게 문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교육청에서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이 1년만 하고 바뀌었다. 지속적인 의지, 그런 것들을 장치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창원지역

(1) 창원/부산지역의 특이 사항

창원/부산지역의 국선보조인 활동은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 판사의 장기간 노력으로 도출된 결과로 보여진다. 창원지역에서 가정법원판사는 약6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국선보조인 제도 뿐만 아니라 소년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특히 소년범을 위한 센터를 개설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해자 소년범까지 케어를 해주고 있다. 창원/부산지역의 사례는 우수 사례로 널리 알려져있고, 다른 지역의 판사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도 하고, 비행예방센터나 꿈키움센터와 같은 청소년 기관에서도 찾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면담자 : 저희가 국선보조인들을 전국적으로 만나보고 있는데 지역차이가 너무 크다. 국선보조인D : 지역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C●● 판사님이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고 법정에서 국선보조인의 잘못된 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을 냈었다.

면담자 : 저희도 판사님을 뵈는 적이 있는데, 연구자들도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처음부터 판사님과 같이 시작을 하셨나요?

국선보조인D : 네. 저희는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였고 이러한 센터도 전국에서 처음 생긴 것이다. 그래서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 센터에 와서 벤치마케팅을 하려고 다른 판사님들도 오셨고, 비행 예방센터나 꿈키움 센터 이런 것들도 서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이들이 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으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것을 더 좋아한다.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많이 낮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판사의 교체로 인해서 국선보조인의 인력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판사와 국선보조인들 간의 개인적 연락을 통한 꾸준한 교류가 국선보조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판사와 국선보조인이 함께 참여하는 캠프를 통해 재판과 활동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면답자 : 일부지역은 판사님이 바뀌면 분위가 바뀌면서 새로운 인력풀이 만들어진다.
국선보조인D : 이곳은 지속이 되고 있으며 C판사님이 부산으로 가셨지만 개인적인 연
락을 통해서 계속 같이 하고 있으며, 창원/부산 지역에 계시는 판사님들과 청
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2박3일로 힐링 캠프를 다녀왔다.
그 캠프 비용도 C판사님께서 국선보조인으로 받으신 돈으로 전부 하셨다. 그
이전에도 힐링캠프와 재판과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늘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며 부산지역 선생님들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캠프도 같이 하고 있다.

(2) 국선보조인 선정 과정 및 판사의 재량

국선보조인의 선정은 가정법원판사에게 권한이 있으며 창원/부산지역은 판사가
직접 소년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창원/부산 지역은 가정법원판사가 활동 중인 국선보조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소년범의 특성에 맞는 국선보조인 선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선보조인 위촉도 가정법원판사의 재량이며 이 또한 판사가 판단했을 때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고 활동에 열정적인 국선보조인을 추천한 후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였다.

면답자 : 국선 보조인 선정은 판사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국선보조인D : 판사님이 직접하신다. 아이의 특성을 보고 거기에 맞는 전공을 가진 국
선보조인으로 선정을 하신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더라고 하면 변호사
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을 하신다.

면답자 : 그럼 판사님께서서는 국선보조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국선보조인D : 네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선보조인을 선임
한다.

면답자 : 현재 C판사님은 부산으로 가셨는데, 현재 계신 판사님께 그대로 전달을 하고
가신건가요?

국선보조인D : 그래도 연결을 되고 있다. C판사님 창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미 자
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사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
문에 창원은 체계적으로 국선보조인 제도가 잡혀있다. 모든 결정과 권한은 판
사님이 가지고 계신다.

면담자 : 국선보조인 위촉 정식 절차가 있는지?

국선보조인D :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이 하는 공고를 내지 않고, 정식적인 절차보다는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을 판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신다. 추천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서류를 올린다.

(3)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

국선보조인의 의견을 보면, 현재 사용하고 의견서 양식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의견서 양식이 존재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에 맞는 양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현재에는 의견서 양식이 체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면담자 : 국선보조인 제도 개선될 점은?

국선보조인D : 저희들의 보고서를 보면 개별차가 많이 나는데, 어떤 경우는 자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공식적인 보고서 양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내용이 전달되고 매뉴얼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양식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경력이 쌓이고 하면서 본인 나름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법원에서 특별한 제재가 없다. 그리고 판사님께 감사하는 부분은 서류상으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판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전화로도 국선보조인의 의견을 들어주신다 이런 부분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 춘천지역

(1) 국선보조인의 현황 및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

춘천가정법원(강원도지역)에서는 4~5명의 국선보조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직업 비율을 보면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이 높았고, 전체적으로 국선보조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변호사 국선보조인은 1/3정도, 청소년 전문가 국선보조인은 2/3정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강원도 지역은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면담자 : 강원도 지역은 비법률전문가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국선보조인E : 초기에는 S●●판사님이 계셨고 지금 판사님도 분류심사원 자료, 국선

보조인 의견서 등 모든 자료를 보시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전화를 하셔서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 초기에는 비법률전문가를 많이 배정하셨고, 저도 초기에는 변호사님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2-3년 뒤에 변호사 1-2명정도 오시기 시작했고 현재 판사님 오기 전까지는 비법률전문가를 많이 배정을 하셨고, 현재 판사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반반정도는 아니지만 비법률전문가를 2/3정도, 법률전문가를 1/3정도 배정을 하고 있다.

(2) 국선보조인 간의 소통과 전국적 제도의 통일

국선보조인 간의 소통에 관한 질문에는 따로 만남을 가진 적은 없으나 의견서를 서로 보여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역 국선보조인과의 소통은 전혀 없으며 현재 국선보조인의 활동이 너무 바쁘고 소년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국선보조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전국적인 국선보조인 운영의 통일에 관해서는 국선보조인 제도의 체계 확립은 필요하나, 시스템의 통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국선보조인 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면담자 : 보조인들과 만나서 의견서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요?

국선보조인E : 그런 건 없고, 서로 의견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면담자 : 다른 지역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국선보조인E : 전혀 없다. 국선보조인제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초기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자고 했을 때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니깐 그 제도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국선보조인 활동 말고도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내 나름대로 상담을 하면 되되고 워낙 바쁘다보니 다른 지역 국선보조인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한 틈도 없었다.

면담자 :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선보조인E : 체계가 잡히는 것이 좋으나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강원도 지역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지역을 어떻게 활동을 할까 궁금했을 텐데 저희 지역은 활동이 잘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3)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으로도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 소년재판의 특성상 범죄사실만 가지고 접근하는 성인재판과는 차이가 있으며, 소년법을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청소년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면담자 : 소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제도가 개선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국선보조인E : 법률전문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변호사님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범죄사실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저는 비법률전문가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저희처럼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깐 비법률전문가의 비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변호사님들이 법적인 내용을 많이 알수는 있지만 소년재판에 경우에는 성인재판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4) 인천지역

(1) 국선보조인 교육제도

국선보조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존재는 각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국선보조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선보조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국선보조인 위촉이나 선정처럼 가정법원판사의 권한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 연수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니깐 이게 궁금했는데, 대한변협이나 기관에서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이 있는지?

국선보조인F : 없습니다. 이건 다 각개 전투로 이루어지구요 진짜로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S○○ 판사님은 춘천에서부터 그렇게 민간인 전문가를 찾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그거의 가치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천에다가 사실은 그 분이 그 체제를 끼워다 심으신 거거든요 그 분이 끊임없이 같이 하면서 발굴하고 드림슛, 드림시리즈 이런 걸 짝 만들어내며 협력하는 구조들을 만들었어요, 이미 깔려있으니깐 그 뒤에 오시는 분들도 기본 베이스 위에 이렇게 얹혀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좀 힘들겠죠. 다른 지역 보면 그것과 전혀 관련 없이 가는 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2) 국선보조인의 교육의 필요성 및 처분에 대한 언급

국선보조인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으며 다음은 재판 과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국선보조인의 행동으로 생긴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화이다. 앞서 변호사인 국선보조인이 예상처분에 대한 아이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을 해 주면서 아이의 심사원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음 사례는 청소년 전문가가 면담 과정에서 아이에게 처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국선보조인F : 네 M◎◎ 판사님도 있고 같이 했던 Y○○ 판사님 젊은 판사님들 있는데, 같이 해보면 정보력의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애들에 대한 판단력, 저희가 가진 정보는 단순하게 애들만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애들 주변 친구 학교 등을 통해 얻어지는 거다 보니깐 그 분들이 판단하시게 좀 더 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 애 하나인데 법원에서 난동 가깝게 부린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상담센터에 상담팀장님이 국선을 하시는데 이 분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애는 7호처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 앞에서 애는 나갈 생각을 하는데 7호 처분을 내려주십소 하는 거예요. 애가 돌아가지고 국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법원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소년보호사무관 : 대부분 법원에서 심리할 때 국선보조인 참석하시죠?

국선보조인F : 참석하죠.

소년보호사무관 : 참석하시는데 호 처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시고 답변서는 제출하고,

국선보조인F : 의견서

소년보호사무관 : 선처해주십시오 하고 아이가 그걸 처분에 대해서 못듣게 하는데

국선보조인F : 못 듣게 하는데 이분이 상담전문가로서 열심히 하면서 애는 나가면 안 되는 앤데 위험하고 치료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 강하게 한거예요

소년보호사무관 : 7호가 의료시설에 위탁되는 거예요 나가야 하는데

국선보조인F : 그러니깐 애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 애가 여기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미숙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절차나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미숙하니까. 그 분은 열정적으로 상담해보니 애는 가정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재비행한다 그런건데, 사실 그분 말이 맞아요. 근데 그런 절차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게 된거죠. 실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년보호사무관 : 미숙한 보조인들이 사실 애를 먹는 게, 아이들 면담과정에서 분류심사관이 너 10호 처분내린다 했는데 내가 9호나 8호처분 해볼게 노력해 볼게, 그랬는데 아니면 난리치는 거죠, 마치 아이들과 거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판사들이 사실 심리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사실도 듣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교육 윤리의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이 건 분류심사관도 마찬가지로, 야 내가 너 이거 몇 호 뭐 이렇게 하는 건

심사관은 공무원이니까 그걸 어겼을 때 징계나 처분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교육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라든지 이후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되게 하는...

(3) 국선보조인 의견서 양식

국선보조인이 쓰는 의견서 양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각 지역마다 초기에는 의견서 양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선보조인 개인이 양식으로 변형이 되었고, 또한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의견서 양식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청소년 전문가들 중에서 상담전문가는 상담일지, 심리치료사는 심리검사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변호사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의견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선보조인 활동을 해온 대상자가 추천하는 의견서 양식은 아이의 성장배경, 현재 상태,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교우관계, 보호자의 보호 의지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형태이어야 한다고 했다.

면담자 : 혹시 양식은 통일되어 있나요?

국선보조인F : 지역이라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게 되면 이 아이 이전 국선보조인 의견서까지 첨부되어 있거든요 상담전문가는 상담일지와 유사한.

소년보호사무관 : 심리치료가는 심리검사서

국선보조인F : 변호사들은 형식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아이의 상태, 상태 정황, 피해합의 여부, 의견 이렇게 해서 즉 보편적으로 쓰는 변호사들만의 양식해가지구 쓰고, 저는 제가 함께 하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양식은 애들 성장배경들, 어떻게 해서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가, 지금 애가 지내고 있는 모습들과 애 상태, 그 다음 보호자들의 보호의지와 보호환경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해서

면담자 : 다시 한 번

국선보조인F :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범죄를 하게 되었는지, 다음은 현재 애의 상태, 분류심사원에 어떻게 지내는 애 상태, 친구와 어떻게,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관련된 보호자의 보호의지, 사실 미성년자들이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부모님들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부모님들이 의지가 있고 부모님들이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종합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선보조인의 적절한 자격요건과 종합적인 의견서, 소년법 특성에 맞는 면담방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국선보조인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재범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소년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시각으로 청소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선보조인의 전공이나 직업의 특성상 한쪽면만 바라본다거나, 일반적인 청소년의 특성만 생각한 면담방법으로 면담하고 처분을 제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년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학교생활 및 비행환경, 정서적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일반적인 청소년 면담방법이 아닌 소년법의 특성과 수준, 성향을 고려한 면담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소년법 처분에 대한 의견 역시 소년법의 모든 상황과 함께 소년법에게 가장 적절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면담자 : 국선보조인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한다면 목사님처럼 기존에 하던 역할이 있으시고 돕는 역할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기본 바탕이 없이 한다면 성인 국선번호인이 하는 거랑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선보조인F :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교육 관련해서 오래하시다가 은퇴 후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경력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녹음이 되어서 부담스럽다

면담자 : 실제로 목사님처럼 활동 하시는 분이 어디어딘가에는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보통 일들은 아닌데

국선보조인F : 그래서 그분 보면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정말 외모상으로 보면 좋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고민하고 하는 각도들이 달라요 교직원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저희는 알거든요 학교에 가면 애 백프로 재범하는 거 그래서 신병인수 되면 오히려 검정고시 끊어주고 그런데 그런 행동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을 하고

소년보호사무관 : 어떻게 목사가 학교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 검정고시를 보게 하느냐

국선보조인F :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초창기에 너무 큰 실수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초창기에 이탈해 가지고 10호에 간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가 부모님들이 배우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다보니깐 학교를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재범이 시작된 거죠 결국은 이탈을 해서 저 대구에 가서 범죄와 비행들을 저지르다가 대구

에서 잡혀가지고 그리고 10호를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진짜 가슴 찡찡하게 애 진짜 학교가면 안 되는 거 알았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 뒤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자 : 범생이신 연구원들이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어떻게 학교를 그만두느냐 그래서 아니다 제가 면접을 해봤는데 애들 학교가면 상처가 되고 맨날 자고 그러니깐 선생님은 또 때리고 그래서 학교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그런데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ㅎㅎ

국선보조인F :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제가 만난 아이들 전부가 뭐냐면 학대와 방임 속에 있지 않는 아이는 단 한명도 못 봤거든요. 제가 만난 아이들이 숫자로 따져보니까 한 400명이 되요 데리고 살았던 애들이 백여 명 정도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된 사례가 삼백여건 안팎이니깐 그렇게 됐을 때 애네들 중에 학대와 방임이 아닌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임의 경우가 굉장히 무서운데 방임의 경우는 때리거나 그런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임이 무서운 게 아이가 뭘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방치되면서 애한테 가있는 정서적인 문제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애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 애들이 못 알아듣고 있구나를 제가 몰랐어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단어들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영어독해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독해가 아니라 히어링 테스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단어 몇몇을 가지고 문맥상 대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런 상태인 애들이 90프로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하고 있는 얘기가 히어링 테스트랑 똑같아요. 그러곤 애들이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일주일 이상 못 견뎌요 그렇게 되면 탄질을 해요 그럼 수업분위기 저해가 되고 그럼 선생님이 힘들어져요 그럼 눈총이 되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애들을 8명을 다 복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애들 설득을 해서 복학시켜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한테 감사기도를 드렸는데요 근데 다 다시 나왔어요 근데 7명은 못견디고 나왔고 아 아홉명이었는데 한명은 졸업했어요 2년 더 걸려서 졸업했어요 한 명은 명예로운 자퇴 이 아이가 학교가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과 토론을 벌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토론에서 니말이 다 맞다 내가 선생으로서 할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 친구가 자퇴의 변, 자기반 친구들 앞에서 자퇴에 대해서 자퇴는 도망가는게 아니다 내 꿈을 위해서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야 내 제자가 자퇴를 하는데 이렇게 뿌듯하기는 처음이다 이러면서 보냈구요 그 친구는 지금 뭐 서울소년원에 애들 음악가르치러 다니구요 지금 자살방지 캠페인하는데 800명의 청소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강연자고 지금 우리엄마라고 한 아이 스토리 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우리엄마 딱 치면 이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 친구는 그렇게 커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진짜 뭐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높은 애였고 애네들고 또래 애들이 동시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좋아가지고 애네들 위한 잔치마당 열어가지고 등록금 마련해주고 이랬어요

(5)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유지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면담자 : 목사님 지금까지 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요 제도가 나아가야 할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 있으신지

국선보조인F : 저는 민관협력에 대한 고민들 되게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제 임무 중에 가장 큰 거 였는데 지금은 그 생각 안하구요 화가 났었어요 부닥치면서 화가 난거예요 여기는 왜 이럴까 그런데 그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됐죠 그분들로서의 한계지점은 명확해요 제가 고민하는 건 그런 거예요. 새로운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은 어떻게 정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이랑 토론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사각지대는 기업에서 가야한다 정부는 그렇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해나가면서 그것들이 제도적인 성과물이 되고 백업 데이터들이 죽 썩어지면 이제 그것을 정부가 받아 안을 때 쯤 되면 기업은 빠지고 정부가 그 일을 차고 나가는 거고 기업은 다시 사각지대를 개발해야 한다 하면서 제가 CSR 담당자들이랑 강의하러 가서 얘기하거든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낸 시스템 예를 들어서 CYS NET 그림표 죽이잖아요

국선보조인을 관리하고 국선보조인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더불어 국선보조인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선보조인이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청소년의 문제점이나 정서를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면담자 : 지금 드는 생각이 이게 봉사처럼 하시는 분들이 체제를 정비를 해서 조직화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아가간다면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지원센터나 이런 것처럼 거기서도 문제가 오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선보조인F : 돈이랑 직함이랑 그 문제들은 생길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소년보호사무관 : 그런 문제가 오히려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국선보조인F : 그렇죠.

소년보호사무관 : 지금은 위촉까지는 하는데 뭐 이걸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 평가조차도 안하죠. 평가관리 전혀 안되니깐

국선보조인F : 교육해야하구요. 교육이 되게 필요한 거 같아요. 저도 되게 지금 애가 스무 살이예요. 애가 난동을 피웠다는 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완전히 난동을 피워가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국선을 저로 혹 바꾸시면서 바뀌어지고 지금 응급조치를 취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응급상황 땀땀들 주로 하는 거죠. 거기 실무관들은 안 바뀌었으니까 실무관들도 급하다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인데.

소년보호사무관 : 그게 대학에도 겸임교수 있는 것처럼 현장 전문가들을 어떤 직위를 주고 그런 위치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판사가 바뀌더라도 특

정한 하자가 없으면 평가 관리를 해서 제도화하고 거기에 맞는 신분이나 지위를 줘서 한다고 하면 좀더 잘되지 않을까. 저는 궁금한거 있는데, 이거 저희 애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국선보조인 제도가 위탁된 아이들에 대해서만 붙잖아요. 그런데 불위탁된 아이들인 경우 대부분 초범이거나 학생신분이거나 상담조사받는 아이들 불위탁돼가지고 심리를 받는 아이들 애네들 같은 경우 국선보조인 없이 심리 하는데 이거는 차별 아닌가요.

제6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시설 내 소년들과 국선보조인들의 응답 비교

황 지 태

제6장

시설 내 소년들과 국선보조인들의 응답 비교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제3장, 제4장, 제5장에 활용된 조사 원자료들 중 국선보조인들에 관해 조사된 정보와 국선보조인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시설 내 소년들에 관해 조사된 정보를 서로 비교하여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해보았다. 이에, 먼저 제3장에서 다루었던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와 제4장에서 다루었던 시설 내 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들 중에서 비교가 가능한 부분들을 추려 서로 비교한 후, 제5장에서 다루었던 심층면접 결과들도 서로 비교하여 각각의 의미 있는 응답 차이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제1절 두 설문조사 사이의 비교 가능한 응답 비교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설문지와 시설 내 소년들에 대한 설문지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한 문항들에 대해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한 비교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정보는 성별과 연령대, 그리고 지역이라는 세 가지 변인에 관한 것이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변인들은 앞 장의 분석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듯이 시설 내 소년들의 국선보조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는 점에서도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변인 말고도 국선보조인의 본업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변인도 있기는 하다. 변호사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긴 하나, 시설 내 소년들은 자신들이 접한 국선보조인이 변호사 출신인지 아닌지를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부득불 이 변인은 제외하였다.

먼저 다음 <표 6-1>은 국선보조인이 스스로 밝힌 자신의 성별⁷³⁾과 국선보조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시설 내 소년들이 가장 최근에 접한 국선보조인들의 성별⁷⁴⁾을 대조해 본 결과이다. 표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은 남성이 57.4%(249명 중 143명), 여성이 42.6%(106명)이었던 데 비해, 시설 내 소년들이 기억하는 가장 최근에 접한 국선보조인 중 남성은 67.3%(1,192명 중 802명), 여성이 32.7%(390명)로 두 표본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각의 응답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국선보조인 설문의 경우 여성 국선보조인이 남성 국선보조인에 비해 설문에 응해준 정도가 더 높아서 나타난 차이일 수도 있고, 국선보조인 인력풀 내에서의 성비에서보다 남성 국선보조인의 실제 활동이 더 많아서 나타난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설명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게 진짜 이유인지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내리긴 어렵다.

<표 6-1> 두 조사에서의 국선보조인 성별 비교

(단위: 명(%))

성별 구분	국선보조인 표본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남성	143 (57.4)	802 (67.3)
여성	106 (42.6)	390 (32.7)
합계	249 (100.0)	1,192 (100.0)

$\chi^2=8.857(df=1), p<.01$

다음 <표 6-2>는 국선보조인이 스스로 밝힌 자신의 연령대⁷⁵⁾와 국선보조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시설 내 소년들이 가장 최근에 접한 국선보조인들의 연령대⁷⁶⁾를

73) <부록1.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제1쪽 2.1문항 중 성별 문항.

74) <부록2. 시설 내 소년 대상 설문지> 제2쪽 4.번 문항.

75) <부록1.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제1쪽 2.1문항 중 만 나이 문항을 재구성.

76) <부록2. 시설 내 소년 대상 설문지> 제2쪽 5.번 문항을 재구성.

대조해 본 결과이다. 표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은 30대 이하가 50.2%(249명 중 125명), 40대가 34.5%(86명), 50대 이상이 15.3%(38명)이고, 시설 내 소년들이 기억하는 가장 최근에 접한 국선보조인 중 30대 이하는 46.0%(1,192명 중 549명), 40대는 34.5%(411명), 50대 이상은 19.5%(232명)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에서와는 달리 연령대에 있어서는 두 표본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6-2〉 두 조사에서의 국선보조인 연령대 비교

(단위: 명(%))

연령 구분	국선보조인 표본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30대 이하	125 (50.2)	549 (46.0)
40대	86 (34.5)	411 (34.5)
50대 이상	38 (15.3)	232 (19.5)
합계	249 (100.0)	1,192 (100.0)

$\chi^2=2.697(df=2)$, N.S.

기본 정보의 마지막 변인으로 다루고자 하는 지역 변인은 다음 〈표 6-3〉과 같이 부산·경남지역과 기타지역의 두 가지로 단순하게 묶어서 살펴보았다. 지역 변인을 이렇게 단순하게 재분류한 이유는 제4장에서 부산·경남지역 소년원생들의 국선보조인 만족도가 나머지 지역들에 비해 일관되도록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표 6-4〉과 같이 부산·경남지역 소년원생들(분류심사원 위탁소년 포함)이 기억하는 국선변호인의 접견횟수가 나머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점 등(이와 비슷한 표는 더 많지만 대표적인 예시사례로 하나만 꼽은 것임)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표를 보면, 근무지역⁷⁷⁾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은 부산·경남지역이 14.9%(249명 중 37명), 기타지역이 85.1%(212명)이고, 소년들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속한 지역⁷⁸⁾은 부산·경남지역이 15.2%(1,227명 중 184명), 기타지역이 84.8%(184명)이다. 두 설문조사 결과에서 부산·경남과 기타지역 사이의 비율이 서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7) 〈부록1.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제1쪽 2.5.번 문항을 재구성.

78) 〈부록2. 시설 내 소년 대상 설문지〉 제7쪽 8.번 문항을 재구성.

〈표 6-3〉 두 조사에서의 국선보조인의 근무 지역 (부산경남과 기타지역으로 구분)

(단위: 명(%))

지역 구분	국선보조인 표본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부산경남	37 (14.9)	184 (15.2)
기타지역	212 (85.1)	1,024 (84.8)
합계	249 (100.0)	1,227 (100.0)

$\chi^2=.022(df=1)$, N.S.

〈표 6-4〉 참고: 각 지역 시설 소속에 따른 소년 접견 횟수 비교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단위: 명(%))

접견 횟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안양	춘천	제주	합계
1회	177 (75.3)	97 (54.8)	124 (79.0)	99 (78.6)	65 (73.9)	48 (72.7)	28 (68.3)	129 (76.8)	66 (86.8)	21 (70.0)	854 (73.4)
2-3회	47 (20.2)	71 (40.1)	30 (19.1)	25 (19.8)	22 (25.0)	16 (24.2)	12 (29.3)	35 (20.8)	8 (10.5)	8 (26.7)	274 (23.5)
4회 이상	11 (4.7)	9 (5.1)	3 (1.9)	2 (1.6)	1 (1.1)	2 (3.0)	1 (2.4)	4 (2.4)	2 (2.6)	1 (3.3)	36 (3.1)
합계	235 (100)	177 (100)	157 (100)	126 (100)	88 (100)	66 (100)	41 (100)	168 (100)	76 (100)	30 (100)	1,164 (100)

이상 살펴본 세 가지 변인 중에서 두 가지 변인, 즉 연령대변인과 지역변인(부산·경남지역과 기타지역의 구분)은 두 종류의 설문조사에서 모두 상당히 유사한 분포로 나타났고, 성별 변인의 경우엔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국선보조인의 성별이 남성이 여성보다 꽤 많게 나타난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설문은 국선보조인 자신에 관한 설문인 데 비해, 시설 내 소년들에 대한 설문 중 성별과 연령대의 경우는 가장 최근에 접한 국선보조인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비슷한 분포의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극적인 우연은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 본 동일한 현상이라고도 할 만하다.

2. 국선보조인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선보조인의 응답과 시설 내 소년들의 응답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질문 중 첫 번째의 것으로는 국선보조인의 접견 횟수에 관한 것이 있다.

이 두 설문에서 그에 관한 질문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에서는 “한 소년 당 접견을 두 번 이상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⁷⁹⁾인 데 비해, 시설 내 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는 “여러분이 이번 사건으로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은 소년분류심사위원이나 소년원에 여러분을 만나러 몇 번이나 왔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회’, ‘2회-3회’, ‘4회 이상’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것⁸⁰⁾이다. 하지만, 소년 대상 설문의 응답결과를 ‘1회’와 ‘2회 이상’으로 재분류하면 대략 국선보조인 설문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국선보조인의 경우 자신이 만났던 모든 소년 중에 한 소년이라도 2회 이상 접견했을 경우 두 번 이상 접견했다고 응답할 수 있을 것이지만, 소년들의 경우엔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이 두 번 이상 접견했을 때에만 그렇다고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선보조인이 두 번 이상 접견했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이긴 하다. 어쨌든 그래도 두 설문의 응답 분포를 비교해 보자면, 다음 <표 6-5>와 같다.

<표 6-5>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은 접견 횟수가 1회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40.8%(211명 중 86명), 2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9.2%(125명)인 데 비해, 시설 내 소년들이 기억하는 가장 최근에 접한 국선보조인들의 접견 횟수는 1회가 73.4%(1,182명 중 868명), 2회 이상이 26.6%(314명)로 두 종류의 설문 집단의 응답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5>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단위: 명(%))

접견 횟수 구분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1회	86 (40.8)	868 (73.4)
2회 이상	125 (59.2)	314 (26.6)
합계	211 (100.0)	1,182 (100.0)

$\chi^2=88.575(df=1)$, $p<.001$

이 표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선보조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접견 횟수는 시설 내 소년들이 기억하는 접견 횟수보다 훨씬 더 과장되어 있다고 말할

79) <부록1.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제3쪽 4.4.번 문항.

80) <부록2. 시설 내 소년 대상 설문지> 제2쪽 6.번 문항.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선보조인은 단 한 명의 소년이라도 두 번 이상 접견했을 경우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는 점만 고려해도 그와 같이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최종적인 국선보조인 표본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국선보조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국선보조인들을 만나긴 했지만 표본에서는 제외된 소년들까지 합치면 소년 표본에서도 접견 횟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큰 편차에 대해 이러저러한 다른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판단은 잠시 미뤄두기로 한다.

이제 이 <표 6-5>의 내용을 앞 소절에서 살펴본 세 가지 변인, 즉 성별 변인, 연령대 변인, 지역별 변인의 세 가지 변인에 따라 교차하여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표 6-6>은 성별 접견 횟수에 대한 두 설문의 응답을 서로 비교해 본 것을 요약한 표이다. 이 표의 왼쪽부터 보기로 하자.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 중에서 남성은 2회 이상 접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6.4%(117명 중 66명), 1회 경험밖에 없다는 응답은 43.6%(51명)이었고, 여성은 2회 이상이 62.8%(94명 59명), 1회가 37.2%(35명)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접견 횟수가 약간 더 많게 나오긴 했다. 표의 오른쪽, 시설 내 소년들에 설문에서는, 국선보조인이 남성인 경우 2회 이상 접견했다고 기억한 소년들은 25.1%(788명 중 198명), 1회라고 기억한 소년들은 74.9%(590명)이었고, 국선보조인이 여성인 경우엔 2회 이상이 28.9%(387명 중 112명), 1회는 71.1%(275명)이었다. 여기서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소년 대상 설문지에서도 여성 국선보조인의 접견 횟수가 약간 더 많게 나왔다.

<표 6-6> 성별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단위: 명(%))

접견 횟수 구분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회	51 (43.6)	35 (37.2)	590 (74.9)	275 (71.1)
2회 이상	66 (56.4)	59 (62.8)	198 (25.1)	112 (28.9)
합계	117 (100.0)	94 (100.0)	788 (100.0)	387 (100.0)

국선보조인: $\chi^2=0.872(df=1)$, N.S. 시설 내 소년: $\chi^2=1.943(df=1)$, N.S.

이어서 다음 <표 6-7>은 연령대별 접견 횟수에 대한 두 설문문의 응답을 서로 비교해 본 것을 요약한 표이다. 설문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 중에서 30대 이하의 2회 이상 접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0.0%(95명 중 57명), 1회 경험밖에 없다는 응답은 40.0%(38명)이었고, 40대 이상은 2회 이상이 58.6%(116명 중 68명), 1회가 41.4%(48명)로 나타났다. 이 경우엔 연령대별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한편, 시설 내 소년들의 설문응답에서는, 국선보조인이 30대 이하인 경우 2회 이상 접견했다고 기억한 소년들은 21.0%(543명 중 114명), 1회라고 기억한 소년들은 79.0%(429명)이었고, 국선보조인이 40대 이상인 경우엔 2회 이상이 31.5%(632명 중 199명), 1회는 68.5%(433명)이었다. 이 경우엔, 40대 이상의 접견 횟수가 30대 이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제4장의 분석에서, 시설 내 소년들의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에서 30대 이하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가 40대 이상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게 나온 것(역시 제4장의 분석 결과 중에서 접견횟수가 많은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과는 다소 배치되는 결과이기도 한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뒤에 모아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표 6-7> 연령대별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단위: 명(%))

접견 횟수 구분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30대 이하	40대 이상	30대 이하	40대 이상
1회	38 (40.0)	48 (41.4)	429 (79.0)	433 (68.5)
2회 이상	57 (60.0)	68 (58.6)	114 (21.0)	199 (31.5)
합계	95 (100.0)	116 (100.0)	543 (100.0)	632 (100.0)

국선보조인: $\chi^2=0.041(df=1)$, N.S. 시설 내 소년: $\chi^2=16.455(df=1)$, $p<.001$

이어서 다음 <표 6-8>은 지역별 접견 횟수에 대한 두 설문문의 응답을 서로 비교·요약한 표이다.

〈표 6-8〉 지역별 접견 횟수에 대한 응답 비교

(단위: 명(%))

접견 횟수 구분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부산경남	기타지역	부산경남	기타지역
1회	5 (18.5)	81 (44.0)	97 (54.8)	757 (76.7)
2회 이상	22 (81.5)	103 (56.0)	80 (45.2)	230 (23.3)
합계	27 (100.0)	184 (100.0)	177 (100.0)	987 (100.0)

국선보조인: $\chi^2=6.342(df=1)$, $p<.05$. 시설 내 소년: $\chi^2=36.822(df=1)$, $p<.001$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 중에서 부산·경남지역의 국선보조인들은 대상 소년을 2회 이상 접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1.5%(27명 중 22명), 1회 경험밖에 없다는 응답은 18.5%(5명)였고, 기타지역의 국선보조인들은 2회 이상이 56.0%(184명 중 103명), 1회가 44.0%(81명)로 나타났다. 시설 내 소년 설문응답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시설 내 소년들의 국선보조인 2회 이상 접견은 45.2%(177명 중 80명), 1회는 54.8%(97명)이었고, 기타 지역의 경우엔 2회 이상이 23.3%(987명 중 230명), 1회는 76.7%(757명)이었다. 요컨대, 두 가지 설문조사 모두에서 부산·경남지역의 접견 횟수가 기타지역에 비해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두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3. 국선보조인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

국선보조인의 설문조사 응답과 시설 내 소년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질문 중 두 번째의 것으로는 국선보조인의 접견 시간이 있다. 각 설문지에서의 해당 질문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비교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에서는 “개별 소년별로 면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시간을 분 단위까지 직접 기입하는 것⁸¹⁾이었고, 시설 내 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와서 여러분과 얼마나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0분 미만’,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것⁸²⁾이다. 각 설문 응답을 동일한 간격

81) 〈부록1.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제3쪽 4.1.번 문항.

으로 코딩할 경우엔 서로 비교가 가능한 것임은 물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6-9>는 위 두 종류의 설문응답을 서로 비교한 결과이다.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은 접견 시간이 '30분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7%(211명 중 12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3.1%(91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36.0%(76명), '2시간 이상'은 15.2%(32명)였다. 이에 비해, 시설 내 소년들이 기억하는 가장 최근에 접한 국선보조인들의 접견 시간은 '30분 미만'이 67.5%(1,189명 중 802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 28.3%(337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3.4%(40명), '2시간 이상'은 0.8%(10명)였다. 앞서 살펴본 접견 횟수의 경우보다도 두 종류의 설문 집단의 응답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선보조인 면담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국선보조인들에게서는 단 5.7%만 나온 것에 반해, 시설 내 소년들이 30분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는 무려 67.5%에 이른다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메워지기 어려운 격차이다. 물론 국선보조인의 경우 분류심사원에 도착하여 기다리는 시간 등을 포함한 응답일 개연성도 있을 것이긴 하나,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표 6-9>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

(단위: 명(%))

접견 시간 구분	국선보조인 표본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30분 미만	12 (5.7)	802 (67.5)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91 (43.1)	337 (28.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76 (36.0)	40 (3.4)
2시간 이상	32 (15.2)	10 (0.8)
합계	211 (100.0)	1,189 (100.0)

$\chi^2=4.836E2(df=3)$, $p<.001$

<표 6-9>의 내용을 앞 소절에서 살펴본 세 가지 변인, 즉 성별 변인, 연령대 변인, 지역별 변인의 세 가지 변인에 따라 교차하여 비교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다음 <표 6-10>은 성별 접견 시간에 대한 두 설문의 응답을 서로 비교해

82) <부록2. 시설 내 소년 대상 설문지> 제3쪽 7.번 문항.

본 것을 요약한 표이다.

우선 이 표의 왼쪽부터 보기로 하자.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 중에서 남성은 접견 시간이 '30분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8%(117명 중 8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5.3%(53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35.9%(42명), '2시간 이상'은 12.0%(14명)였다. 여성 국선보조인의 경우엔 접견 시간이 '30분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3%(94명 중 4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0.4%(38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36.2%(34명), '2시간 이상'은 19.1%(18명)였다. 이를 보면, 여성 국선보조인의 면담시간이 남성 국선보조인의 면담시간보다 약간 더 길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까지는 아니었다.

〈표 6-10〉 성별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1

(단위: 명(%))

접견 시간 구분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0분 미만	8 (6.8)	4 (4.3)	563 (71.1)	234 (60.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53 (45.3)	38 (40.4)	198 (25.0)	136 (35.0)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42 (35.9)	34 (36.2)	24 (3.0)	16 (4.1)
2시간 이상	14 (12.0)	18 (19.1)	7 (0.9)	3 (0.8)
합계	117 (100.0)	94 (100.0)	792 (100.0)	389 (100.0)

국선보조인: $\chi^2=2.673(df=3)$, N.S. 시설 내 소년: $\chi^2=14.715(df=3)$, $p<.01$

한편 표의 오른쪽에서, 시설 내 소년들이 기억하는 가장 최근에 접한 남성 국선보조인들의 접견 시간은 '30분 미만'이 71.1%(792명 중 563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 25.0%(198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3.0%(24명), '2시간 이상'은 0.9%(7명)였다. 이에 비해 소년들이 기억하는 여성 국선보조인들의 접견 시간은 '30분 미만'이 60.2%(389명 중 234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 35.0%(136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4.1%(16명), '2시간 이상'은 0.8%(3명)였다. 여기서도 여성 국선보조인의 면담시간이 남성 국선보조인의 면담시간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기까지 하다. 〈표 6-10〉의 결과는 대체로 여성의 접견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는

앞의 제4장에서 여성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소년들의 만족도가 남성 국선보조인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참고로, 다음 <표 6-11>에서는 국선보조인의 접견 시간을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의 두 범주로 나뉘보았고, <표 6-12>에서는 '30분 미만'과 '30분 이상'으로 나뉘 분석을 해보기도 하였다.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해 잠시 보류하자면, 어떤 식의 분류를 해도 여성 국선보조인의 접견 시간이 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1> 성별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2

(단위: 명(%))

접견 시간 구분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시간 미만	61 (52.1)	42 (44.7)	761 (96.1)	370 (95.1)
1시간 이상	56 (47.9)	52 (55.3)	31 (3.9)	19 (4.9)
합계	117 (100.0)	94 (100.0)	792 (100.0)	389 (100.0)

국선보조인: $\chi^2=1.160(df=1)$, N.S. 시설 내 소년: $\chi^2=.606(df=1)$, N.S.

<표 6-12> 성별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3

(단위: 명(%))

접견 시간 구분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0분 미만	8 (6.8)	4 (4.3)	563 (71.1)	234 (60.2)
30분 이상	109 (93.2)	90 (95.7)	229 (28.9)	155 (39.8)
합계	117 (100.0)	94 (100.0)	792 (100.0)	389 (100.0)

국선보조인: $\chi^2=0.648(df=1)$, N.S. 시설 내 소년: $\chi^2=14.207(df=1)$, $p<.001$

이어서 다음 <표 6-13>은 연령대별 접견 시간에 대한 두 설문문의 응답을 서로 비교해 본 것을 요약한 표이다.

먼저 국선보조인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부터 보기로 하자. 설문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 중에서 30대 이하의 접견 시간이 '30분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2%(95명 중 3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2.6%(50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36.8%(35명), '2시간 이상'은 7.4%(7명)였다. 40대 이상 국선보조인의 경우엔 접견 시간이 '30분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8%(116명 중 9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5.3%(42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도 35.3%(41명), '2시간 이상'은 21.6%(25명)였다. 평균적 차원에서 대략적 추세를 보자면, 40대 이상 국선보조인의 면담시간이 30대 이하 국선보조인의 면담시간보다 더 길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상세하게 들여다 볼 경우 연령 효과가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6-13>에서 2시간 이상 면담을 했다는 국선보조인은 40대 이상이 30대 이하 보다 두드러지게 많긴 했지만, 30분 미만으로 면담을 했다는 국선보조인도 4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도 나타난 것이다. 연령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순수한 선형적 상관관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표 6-13> 연령대별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

(단위: 명(%))

접견 시간 구분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30대 이하	40대 이상	30대 이하	40대 이상
30분 미만	3 (3.2)	9 (7.8)	369 (68.0)	427 (66.8)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50 (52.6)	41 (35.3)	153 (28.2)	183 (28.6)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5 (36.8)	41 (35.3)	18 (3.3)	22 (3.4)
2시간 이상	7 (7.4)	25 (21.6)	3 (0.6)	7 (1.1)
합계	95 (100.0)	116 (100.0)	543 (100.0)	639 (100.0)

국선보조인: $\chi^2=12.523(df=3)$, $p<.01$. 시설 내 소년: $\chi^2=1.115(df=3)$, N.S.

한편 표의 오른쪽에서, 시설 내 소년들이 기억하는 가장 최근에 접한 30대 이하 국선보조인들의 접견 시간은 '30분 미만'이 68.0%(543명 중 369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 28.2%(153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3.3%(18명), '2시간 이상'은 0.6%(3명)였다. 소년들이 기억하는 40대 이상 국선보조인들의 접견 시간은 '30분 미만'이 66.8%(639명 중 427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 28.6%(183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3.4%(22명), '2시간 이상'은 1.1%(7명)였다. 시설 내 소년들의 응답결과에 있어서는 국선보조인의 연령대에 따른 접견 시간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소절의 끝으로, 다음 <표 6-14>는 지역별 접견 시간에 대한 두 설문지의 응답을 서로 비교·요약한 표이다.

이 표의 왼쪽부터 보면,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 중에서 부산·경남지역의 국선보조인은 접견 시간이 '30분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7%(27명 중 1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1%(3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44.4%(12명), '2시간 이상'은 40.7%(11명)였다. 기타지역 국선보조인의 경우엔 접견 시간이 '30분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184명 중 11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7.8%(88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34.8%(64명), '2시간 이상'은 15.2%(21명)였다. 이를 보면, 부산·경남지역 국선보조인의 면담시간이 기타지역 국선보조인의 면담시간보다 더 길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이기도 하다.

〈표 6-14〉 지역별 접견 시간에 대한 응답 비교

(단위: 명(%))

접견 시간 구분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부산경남	기타지역	부산경남	기타지역
30분 미만	1 (3.7)	11 (6.0)	105 (59.0)	685 (69.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 (11.1)	88 (47.8)	60 (33.7)	271 (27.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2 (44.4)	64 (34.8)	9 (5.1)	31 (3.1)
2시간 이상	11 (40.7)	21 (15.2)	4 (2.2)	6 (0.6)
합계	27 (100.0)	184 (100.0)	178 (100.0)	993 (100.0)

국선보조인: $\chi^2=21.537(df=3)$, $p<.001$. 시설 내 소년: $\chi^2=10.858(df=3)$, $p<.05$

한편 표의 오른쪽 시설 내 소년 설문 응답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시설 내 소년들이 기억하는 국선보조인들의 접견 시간은 '30분 미만'이 59.0%(178명 중 105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 33.7%(60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5.1%(9명), '2시간 이상'은 2.2%(4명)였다. 이에 비해 기타지역 시설 내 소년들의 경우엔, 국선보조인들의 접견 시간 '30분 미만'이 69.0%(993명 중 685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 27.3%(271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은 3.1%(31명), '2시간 이상'은 0.6%(6명)였다. 여기서도 부산·경남지역 국선보조인의 면담시간이 기타지역 국선보조인의 면담시간보다 더 길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접견 시간 역시도 접견 횟수처럼 양 설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4. 국선보조인의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국선보조인의 응답과 시설 내 소년들의 응답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질문 중 마지막 것으로는 국선보조인의 가족 면접 여부가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설문지에서의 해당 질문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비교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에서는 “귀하께서는 대상자의 관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네’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는 것⁸³⁾이었고, 시설 내 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이 여러분의 부모님(보호자) 또는 가족과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로 응답하는 것⁸⁴⁾이었다. 두 설문지의 응답 범위는 많은 부분 겹친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의 경우엔, 부모나 형제 등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선생님, 친구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소년 대상 설문지는 부모(보호자) 또는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선보조인의 경우, 관계인을 만난 경험이 단 한번이라도 있을 경우엔 ‘네’라고 응답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년들의 경우엔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에 한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질문은 동질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보조인이 만나는 관계인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족을 만나는 국선보조인은 계속해서 가족을 만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두 설문 응답의 비교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두 설문지에서 가족 면접 여부와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표 6-15>를 보기로 하자.

표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은 가족을 포함한 관계인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경우가 91.9%(211명 중 194명),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8.1%(17명)임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선보조인들은 대상 소년의 관계인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하지만, 소년들은 느끼는 것은 그와 다른 듯해 보인다.

시설 내 소년들의 경우엔 국선보조인이 가족을 만났는지 아닌지 사실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전체 응답 중에서 38%(1,182명 중 460명)나 된다. 이렇게 ‘모르겠다’는

83) <부록1.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제3쪽 4.6.번 문항.

84) <부록2. 시설 내 소년 대상 설문지> 제4쪽 9.번 문항.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선보조인이 가족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하나, 여기서는 일단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그렇다’와 ‘아니다’)만을 가지고 비교를 행하고자 하였다.

〈표 6-15〉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단위: 명(%)[%])

가족 면접 여부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가족 면접 경험이 있다	194 (91.9)	544 (44.9) [72.4]
가족 면접 경험이 없다	17 (8.1)	207 (17.1) [27.6]
모르겠다(시설 소년만 해당)	-	460 (38.0) [-]
합계	211 (100.0)	1,182 (100.0) [100.0]

‘모르겠다’를 제외했을 경우: $\chi^2=35.087(df=1)$, $p<.001$

시설 내 소년들의 기억 속에서, 국선보조인이 자신의 가족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2.4%(751명 중 544명, ‘모르겠다’는 응답자 460명 제외한 계산임)였고, 국선보조인이 자신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7.6%(751명 중 207명)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을 계산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설문 집단의 응답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 〈표 6-15〉의 내용을 성별 변인, 연령대 변인, 지역별 변인의 세 가지 변인에 따라 교차하여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표 6-16〉은 국선보조인의 성별에 따른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두 설문의 응답을 서로 비교해 본 것을 요약한 표이다.

이 표의 왼쪽부터 보기로 하자.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 중에서 남성은 가족을 포함한 관계인을 면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9.7%(117명 중 105명),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10.3%(12명)이었고, 여성 국선보조인들의 경우엔 가족 면접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4.7%(94명 89명), 없다는 응답이 5.3%(5명)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여성 국선보조인이 남성 국선보조인에 비해 가족 면접 경험이 더 많게 나오긴 했다.

표의 오른쪽, 시설 내 소년들에 설문에서는, 국선보조인이 남성인 경우 가족 면접을 한 적이 있다고 기억한 소년들은 70.2%(486명 중 341명, ‘모르겠다’는 응답 361명⁸⁵⁾

을 제외한 계산임), 없다고 기억한 소년들은 29.8%(486명 중 145명)이었고, 국선보조인이 여성인 경우엔 가족 면접을 한 적이 있다고 기억한 소년들은 78.6%(252명 중 198명, '모르겠다'는 응답 138명⁸⁶⁾을 제외한 계산임), 없다고 기억한 소년들은 21.4%(252명 중 54명)이었다. 여기서도 여성 국선보조인의 가족 면담 경험이 남성 국선보조인의 가족 면담 경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6-16〉 성별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단위: 명(%))

가족 면접 여부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족 면접 경험이 있다	105 (89.7)	89 (94.7)	341 (70.2)	198 (78.6)
가족 면접 경험이 없다	12 (10.3)	5 (5.3)	145 (29.8)	54 (21.4)
모르겠다(시설 소년만 해당)	-	-	361 (제외)	138 (제외)
합계	117 (100.0)	94 (100.0)	802 (100.0)	390 (100.0)

국선보조인: $\chi^2=1.715(df=1)$, N.S. 시설 내 소년: $\chi^2=5.955(df=1)$, $p<.05$

이어서 다음 〈표 6-17〉은 연령대별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두 설문문의 응답을 서로 비교하여 요약한 표이다.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 중에서 30대 이하의 가족 면접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2.6%(95명 중 88명), 없다는 응답은 7.4%(7명)이었고, 40대 이상은 가족 면접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1.4%(116명 중 106명), 없다는 응답이 8.6%(10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시설 내 소년들의 설문응답에서는, 국선보조인이 30대 이하인 경우 국선보조인이 가족 면접을 했다고 기억한 소년들은 68.8%(330명 중 227명, '모르겠다'는 응답 219명⁸⁷⁾을 제외한 계산임), 그렇지 않다고 기억한 소년들은 31.2%(330명 중 103명)이었고, 국선보조인인 40대 이상인 경우엔 가족 면접을 했다는 응답 76.7%(408명 중 313명, '모르겠다'는 응답 234명⁸⁸⁾을 제외한 계산임), 없었다는 응답은 23.3%(408명 중 95명)이었다. 이 경우엔, 40대 이상 국선보조인의

85) 이 때, '모르겠다'는 응답은 39.4%(802명 중 361명)임.

86) 이 때, '모르겠다'는 응답은 35.4%(390명 중 138명)임.

87) 이 때, '모르겠다'는 응답은 39.9%(549명 중 219명)임.

88) 이 때, '모르겠다'는 응답은 36.4%(642명 중 234명)임.

대상 소년 가족 면접 경험이 30대 이하의 면접 경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제4장의 분석에서, 시설 내 소년들의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에서 30대 이하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가 40대 이상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게 나온 것(역시 제4장의 분석결과 중에서 접견횟수가 많은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과는 다소 배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앞서 살펴본 연령대별 접견 횟수의 경우(〈표 6-7〉 참조)와도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부분 역시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표 6-17〉 연령대별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단위: 명(%))

가족 면접 여부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30대 이하	40대 이상	30대 이하	40대 이상
가족 면접 경험이 있다	88 (92.6)	106 (91.4)	227 (68.8)	313 (76.7)
가족 면접 경험이 없다	7 (7.4)	10 (8.6)	103 (31.2)	95 (23.3)
모르겠다(시설 소년만 해당)	-	-	219 (제외)	234 (제외)
합계	95 (100.0)	116 (100.0)	549 (100.0)	642 (100.0)

국선보조인: $\chi^2=0.111(df=1)$, N.S. 시설 내 소년: $\chi^2=5.841(df=1)$, $p<.05$

끝으로, 다음 〈표 6-18〉에서는 지역별 국선보조인의 가족 면접 경험에 대한 두 설문의 응답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설문에 응답한 국선보조인 중에서 부산·경남지역의 국선보조인들은 대상 소년들의 가족 면접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6.3%(27명 중 26명), 없다는 응답은 3.7%(1명)였고, 기타지역의 국선보조인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1.3%(184명 중 168명), 없다는 응답이 8.7%(16명)로 나타났다. 가족 면접 경험은 부산·경남지역 국선보조인들이 타 지역 국선보조인들에 비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6-18〉 지역별 가족 면접 여부에 대한 응답 비교

(단위: 명(%))

가족 면접 여부	국선보조인 응답 내용		시설 내 소년 응답 내용	
	부산경남	기타지역	부산경남	기타지역
가족 면접 경험이 있다	26 (96.3)	168 (91.3)	115 (83.9)	419 (69.7)
가족 면접 경험이 없다	1 (3.7)	16 (8.7)	22 (12.0)	182 (30.3)
모르겠다(시설 소년만 해당)	-	-	47 (제외)	408 (제외)
합계	27 (100.0)	184 (100.0)	184 (100.0)	1,009 (100.0)

국선보조인: $\chi^2=.792(df=1)$, N.S. 시설 내 소년: $\chi^2=11.286(df=1)$, $p<.01$

한편, 시설 내 소년 설문응답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시설 내 소년들의 국선보조인 가족 면접 경험은 83.9%(137명 중 115명, '모르겠다'는 응답 47명⁸⁹⁾을 제외한 계산임), 없다는 응답은 12.0%(137명 중 12명)이었고, 기타지역의 경우엔 가족 면접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9.7%(601명 중 419명, '모르겠다'는 응답 408명⁹⁰⁾을 제외한 계산임), 없다는 응답은 30.3%(601명 중 182명)이었다. 즉 부산·경남지역이 기타지역에 비해 가족 면접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참고로, 부산·경남지역 시설 내 소년들의 경우엔,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25.9%(187명 중 47명, 가족 면접 여부를 '모르겠다'는 응답의 평균은 〈표 6-1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8.0%)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

두 가지 설문조사 중 후자의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두 설문 모두에서 부산·경남지역 국선보조인들의 대상 소년 가족 면접 경험이 기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할 만하다.

5. 설문조사 응답 비교 요약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설문지와 시설 내 소년들에 대한 설문지 내용 중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들을 비교해 본 결과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 해볼 수 있다.

89) 이 때, '모르겠다'는 응답은 25.9%(184명 중 47명)임. 성별 비교와 연령별 비교에서의 '모르겠다' 비율들(39.4%, 35.4%, 39.9%, 36.4%, 앞의 각주들 참조)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90) 이 때, '모르겠다'는 응답은 40.4%(1,009명 중 408명)임.

첫째, 국선보조인의 활동 내용 중 국선보조인의 소년 접견 횟수, 접견 시간, 가족 등 주요 관계인 면접 경험 등에 대해 국선보조인들이 스스로 응답한 내용과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았던 소년들이 국선보조인에 대해 기억하여 응답한 내용 사이에는 매우 커다란 격차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우선 접견 횟수에 있어서, 국선보조인들의 절반 이상(59.2%)은 자신들이 소년들을 '2회 이상' 접견한다고 했지만, 소년들은 국선보조인 접견이 '1회'에 그친 경우가 훨씬 더 많다(73.4%)고 기억하고 있었다. 접견 시간에 있어서는, 국선보조인의 절반 가까운 수(51.2%)가 '1시간 이상' 소년들을 접견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소년들은 국선보조인들의 상당수(67.5%)가 접견 시간이 '30분 이내'였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등 주요 관계자 면접에 있어서는, 국선보조인의 거의 절대 다수(91.9%)가 가족 면접을 했다는 응답을 하였지만, 소년들은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에도 그보다 적은 수의 소년들만(72.4%)이 그렇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 같이 커다란 격차는 세부적인 질문의 차이나 기타 요인들⁹¹⁾ 등에 의해 증폭된 것일 수도 있겠으나, 특히 접견 시간의 차이⁹²⁾로 볼 때 아주 과장된 격차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국선보조인들과 소년들 사이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국선보조인들이 '이 정도면 난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범위의 한참 바깥쪽에 소년들의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평가가 위치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부분은 그 자체로 소년들이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든가 하는 식으로 해석될 종류의 것은 아니다. 제4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설 내 소년들의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의 만족도나 신뢰도는 산술적인 평균 수준(기대값, 4점 척도에서의 2.5점)보다 높은 편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두 설문 사이의 응답 격차)는 국선보조인들이 한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소년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91) 가령 국선보조인들의 경우엔 열성적인 국선보조인들 위주로 설문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시설 내 소년 표본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년들, 즉 9호나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원생들의 경우 다른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 비해 불만이 더 많아서 국선보조인에 대해 좀 더 나쁘게 기억할 개연성 역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92) 물론 접견 시간의 차이에 있어서도, 국선보조인들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 등까지 포함하여 응답한 것일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둘째, 두 설문 사이의 응답 격차와는 별도로, 두 설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접견 횟수와 시간, 가족 면담 경험 등에 있어 나타나는 두 설문 사이의 응답 격차에도 불구하고, 두 설문 모두에서 부산·경남과 같은 특정 지역의 국선보조인은 다른 나머지 지역의 국선보조인들보다 일관되게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보다는 살짝 약한 정도이긴 하지만 두 설문 모두에서 여성 국선보조인들이 남성 국선보조인들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앞의 제4장에서 국선보조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요인, 성별(여성)남성), 지역(부산·경남)기타지역), 연령대별(30대 이하)40대 이상) 요인 중 지역과 성별은 두 설문 모두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변인이 가장 뚜렷한 일관성을 나타내 보였다. 즉 국선보조인들 스스로의 평가에서는 물론 소년들의 평가에서도 부산·경남 국선보조인들은 기타지역 국선보조인들에 비해 소년들을 더 많이 접견하고, 더 길게 접견하고, 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도 더 많이 접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더 길게 접견하는 경향성이 있었지만, 지역변인보다는 조금 덜 뚜렷한 경향성이라고 할 만하다. 이에 비해 연령대별 요인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혹은 제4장의 내용(30대 이하)40대 이상)과는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 시설 내 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동시에 그러한 만족도에는 접견 횟수나 시간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장의 분석결과에서는 반대로 40대 이상의 접견 횟수나 가족 면접 경험이 더 많게 나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령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적고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두 설문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성은 다른 분석결과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심층면접 내용과의 비교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설문조사 결과에서 극심한 응답 차이가 난 부분들에 대해 심층면접 내용들을 참조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접 사례가 광범위한 수준의 것은 아니라서 아주 분명한 수준으로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선보조인, 시설(분류심사원·소년원) 내 소년, 담당 판사, 분류심사관 중 일부 사람들의 자기의견들(설문보다는 좀 더 자세한 의견들)이라도 종합적으로 참고하면 설문 응답결과와의 연관성을 찾아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일정한 양상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5장에서 살펴보았던 심층면접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장의 제1절에서 다루었던 내용들과 결합해 볼 때, 시설 내 소년들이 응답한 국선보조인들의 면접 횟수나 면접 시간, 그리고 관계인 면접 등에 관한 응답결과는,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소년들의 응답이 국선보조인들의 응답보다 진실에 더 가까울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적어도 연구진이 접촉한 분류심사원 수용 소년들과 분류심사관들과의 면접 결과는 소년들의 응답이 사실에 가까움을 지지해 주고 있다. 연구진이 만나본 소년들과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선보조인이 매우 성실하다는 인상보다는 다수의 국선보조인들이 형식적으로 소년들과 면담을 하거나 때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식의 인상을 주었다. 이는 평균 수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국선보조인들 중에서 매우 열성적이고 성실한 국선보조인들이 다수 있으며 연구진이 직접 만나본 국선보조인들 중에는 특별히 헌신적이고 성실하게 활동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열성적인 활동을 하는 국선보조인들은 전체 국선보조인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것을 시설 내 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보여주며, 시설 내 소년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와 분류심사원·소년원 관계자들과의 면접 결과 역시도 추가로 그러한 사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국선보조인들의 활동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편차는 앞의 제1절에서 보았듯이, 특정 지역의 국선보조인들의 활동이 더 두드러진대거나 혹은 남성보다 여성 국선보조인들의 활동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제7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요약·결론 및 정책 제언

황 지 태

요약·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요약 및 해석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소년원 등의 시설에 수용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분류심사관, 분류심사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외국의 관련 제도 소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연구이다.

이에 먼저 전술한 방식의 조사를 통해 밝혀낸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 실태에 대해 본문에 분석·설명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결과 현재 국선보조인의 70% 정도는 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 ①항에 규정된 직업적인 변호사로, 나머지 30% 가량은 제19조의2 ②항에 규정된 비법률가 출신의 청소년 전문가(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장 참조). 둘째, 현재 국선보조인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활동하고 있고, 30-40대가 대다수이며, 법원의 위촉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국선보조인에 위촉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참조). 셋째, 현재 여러 국선보조인의 활동(소년에 대한 관심, 시간 투자, 전념도 등 활동의 성실성을 의미) 사이에는 꽤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이러한 편차는 기본적인 개인별 편차뿐만 아니라 성별(남녀 차이), 직업별(변호사-청소년전문가 차이), 지역별 편차(부산·경남지역과 기타지역 차이 등)로도 나타나고 있다. (제3장, 제4장 참조). 넷째, 현재 각 지역의 국선보조인제도는 지역마다 독특하게 제각기 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각 지역의 국선보조인, 소년부 판사 등은 다른 지역의 국선보조

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의 잘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 내 국선보조인들 간의 교류는 나름 존재하기도 하지만 지역 간의 교류는 거의 없는 편이다. (제3장, 제5장 참조). 다섯째, 국선보조인 스스로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수준과 국선보조인의 보조를 받는 소년들이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수준 사이에는 매우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성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선보조인들에 대한 소년들의 평균적인 평가수준은 대체로 높지 않은 편이다. (제5장, 제6장 참조).

이 중에서 현재 국선보조인들 간의 편차에 관한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요한 편차 몇 가지에 대해 좀 더 상술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편차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국선보조인들이 남성 국선보조인들에 비해 의견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년 접견 횟수, 접견 시간, 가족 면접 경험 등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보다 소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더 나아가 시설 내 소년들의 설문 응답 결과, 소년들은 남성 국선보조인보다 여성 국선보조인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표출했다. 이는 여성이 가진 부드러움 등의 특성이 효과를 발휘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시간 할애의 정도가 국선보조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국선보조인들의 소년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도가 낳은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직업별 편차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직업별 편차란 주로 직업적인 변호사와 비변호사(혹은 청소년 전문가집단) 사이의 편차를 의미한다. 국선보조인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청소년 전문가들이 직업적 변호사들보다 많은 시간(의견서 작성 시간, 소년 면담 시간 등)과 노력을 들이며, 소년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금지와 자신감, 보람 등에 있어서도 청소년 전문가집단이 변호사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부

산·경남지역과 기타지역 사이의 편차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모두에서 일관되게 부산·경남지역 국선보조인들이 기타지역 국선보조인들에 비해 소년 접견 횟수, 가족 면접 경험 등이 많고 접견 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사건 이후에 소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부산·경남지역의 국선보조인들이 기타지역 국선보조인들보다 앞서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시설 내 소년들의 설문 응답 결과, 부산·경남지역 소년들의 국선보조인에 대한 만족도가 타지역보다 뚜렷이 높게 나타난다. 부산·경남지역이 모든 점에서 다 잘하고 있다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 국선보조인제도 운영에 있어 이 지역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편차는 여성, 청소년 전문가, 부산·경남지역의 어떤 고유한 속성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성 국선보조인, 직업 변호사 출신 국선보조인, 기타지역의 국선보조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소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선보조인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수준에 위와 같은 체계적인 편차가 나타난 이유는 몇 가지 특정한 조건과 위 변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가령, 청소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활동이 헌신적일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부대적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변호사 국선보조인보다 더 나은 이유는 하나도 없다. 특정 지역의 두드러진 차이 역시도 그러하다. 특별한 열정을 가진 소년부 판사와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들의 효과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그 지속성이 편차를 만들어낸 것이지 그 지역 자체의 특성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국선보조인들 및 소년부 판사, 소년 분류심사관 등이 느끼는 제도운영의 어려움으로는, 보수수준, 시간의 부족, 비체계적 운영의 문제, 국선보조인 교육의 문제, 처분종류와 처벌시설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에 덧붙여, 시설 내 소년들 및 분류심사관, 소년원 담당자들이 지적하듯이 헌신적인 몇몇 국선보조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차원에서 국선보조인들이 불성실하다고 평가되는 문제(하지만, 동시에 국선보조인들 스스로는 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는 그 무엇보다도 잘 되새겨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제언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국선보조인제도가 신설되어 그 자체로 그 이전에 비해 소년사범들의 인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향상되었다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 보고서는 처음부터 필요 없는 보고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만족을 넘어, 이 제도가 다른 사회구조적, 부대적 여건들의 개선과 맞물려 비행과 범죄의 위험에 빠진 소년들을 돕고 그들이 본격적인 성인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기대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박한 정책적 제언들에 귀 기울일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범적인 사례들 서로 배우고, 잘못된 사례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사실, 국선보조인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국선보조인제도 하나만의 문제일리는 없다. 어쩌면 우리나라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문제가 국선보조인제도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것이라 판단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소년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력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물론 그렇게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때로는 가장 거창한 이야기가 가장 소용없는 이야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의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범 사례와 일부 잘못된 사례를 보여주고자 시도한 본 보고서가 나름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소년들을 감싸 안는 여성적인 섬세함이 필요하고, 부산·경남지역의 판사 및 국선보조인들의 헌신을 모범으로 삼아볼 만도 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선보조인들이 소년들에게 실수 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서로 공유하여 최소한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위에 언급한 가장 기초적인 제언은 자연스럽게 국선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문제로 이어진다. 소년들이 처한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법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에서 생기는 부작용(주로 직업적인 변호사들의 문제 소지도 문제이겠지만, 분류심사원 소년이 지적한 바도 있는 것처럼 1호 처분과 10호 처분

에 대한 기본적 구별도 못하는 국선보조인도 심각한 문제(이 경우엔 주로 비법률가들의 문제 소지)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변호사와 청소년 전문가는 모두 그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장점을 보충하여 소년사법에서의 특수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각각의 모자란 점을 잘 배워서 단점을 고쳐나가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현재에도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한 교육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교육은 피부에 잘 와 닿지 않지 쉽고, 적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 자체에 참석조차 하지 않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즉 교육은 중요하지만, 형식화된 교육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선보조인에 대한 교육은 오히려 동료와 선배 국선보조인과의 네트워크와 경험 공유를 통한 현장 교육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셋째, 앞서 제안한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려면 국선보조인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년보호절차에서 소년을 조력하는 보조인은 법적 조력자의 역할뿐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년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아울러 지식 및 경험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보조인에 해당하는 소년변호사의 자격을 소년판사, 소년검사와 동일하게 소년법원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국가소년변호인센터(National Juvenile Defender Center; NJDC)를 설립하여 소년들의 권리 보호(특히 변호권)를 포함하여 소년법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폭 넓게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참조할 만하다. 실제로 소년변호인의 전문화를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소년변호인센터는 소년변호기준(Juvenile Defense Standards)을 정립하여 소년을 변호하고자 하는 변호인에 대한 다양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소년을 담당하게 될 변호인들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소년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범죄소년에 대해 무자력 추정의 원칙을 수립하여 모든 소년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는 우리나라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조력을 담당하는 보조인의 자격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선보조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선보조인제도는 소년법 및 소년심판규칙의 규정을 제외하고 특별하게 그 업무 혹은 비용과 관련하여 규정된 법률이 없다. 물론 보조인 및 국선보조인에 대한 절차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성인을 위한 형사절차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인제도의 운영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일본은 「国選付添関連業務の解説(국선보조관련업무에 관한 설명)」을 제정하여 국선보조인의 업무 및 그 보수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수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검찰이 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원거리면회 가산, 화해의 성립 등 특별성과 등에 대해 추가로 보상하는 항목 등을 두어 국선보조인이 소년심판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소년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조인의 소극적 활동이 문제로 지적된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보조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일본은 미국,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서는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경래(2008). “한·일 개정소년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11) 한국소년정책학회.
- 곽병선(2007). “미국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 고명수(2012).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원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다숙(2013). “소년보호재판에서 국선보조인의 역할”,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 김은경·김지선·이승현·김성언·원혜욱·이호중·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2007a).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1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외(2007b).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3부 대안의 모색, 소년사법 개혁방향과 정책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송을섭(2013). 『법원에 의한 법률구조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선 변호(보조)와 소송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옥(2007). “청소년범죄의 형사법적 대책과 검사의 역할: 한국의 소년사건처리절차와 검사의 역할”, 『경희법학』 제42권 제2호.
- 양건수(2012). “미국 소년 사법의 구조적 변화”,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법무연수원.
- 원혜욱(2007). “국선변호인(보조인)제도의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 이동원·박병훈 (2015). “소년사법에 있어서 국선보조인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경험적 고찰”, 『경찰학논총』제10권 1호.

이승현(2008). “한국 개정소년법상 소년의 권리 보장”, 『소년보호연구』 (11), 한국소년정책학회.

최병각(200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소년사법”, 『소년법연구』 제1호.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11. 22, 의안번호 7924

2. 미국문헌

Interbranch Commission on Juvenile Justice, report, May, 2010.

National Juvenile Defense Standards, National Juvenile Defender Center, 2013.

National Juvenile Justice Network, six policy priorities for juvenile defense, May 2013.

Performance Guidelines for Quality and Effective Juvenile Delinquency Representation, Juvenile Defenders Association of Pennsylvania, April, 15, 2010.

Performance Standards Governing Representation of Indigent Juveniles in Delinquency, Youthful Offender, and Criminal cases, Massachusetts Committee for Public Counsel Services, 2016. 2.

Standards For Indigent Defense Services in Non-Capital Cases, Indiana Public Defender Commission, June 19, 2013.

STANDARDS of Representation of Clients in Juvenile Delinquency cases, Ohio Public Defender Commission, February, 2016.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for Attorneys Representing Children in Delinquency Proceeding, Louisiana Public Defender Board, 2011.

Wachter, Andrew, Indefensible: The Lack of Juvenile Defense Data, JJGPS StateScan,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5. 7.

Wisconsin State Public Defender Principles of Juvenile Defense Practice, 2016. 4.

3. 독일문헌

Albrecht, Peter-Alexis, Jugendstrafrecht, C.H.Beck München, 2000.

- Eisenberg, Ulrich, Jugendgerichtsgesetz 16. Auflage, C.H.Beck, 2013.
- Köpcke-Duttler, Arnord, Besitz die Verteidigung im Jugendstrafverfahren eine Erziehungsaufgabe?, DVJJ-Journal 2/2001.
- Meier/Rössner/Schöch, Jugendstrafrecht, C.H.Beck München, 2003.
- Streng, Franz, Jugendstrafrecht, C.F.Müller Verlag, 2003.

4. 인터넷자료

- <http://njdc.info/>
- <http://njdc.info/our-work/community-building/>
- <http://njdc.info/our-work/juvenile-defense-standards/>
- <http://njdc.info/our-work/training/>
- http://njdc.info/wp-content/uploads/2016/01/CT-ocpd-Juvenile_Delinquency-Performance_Standards_For_Counsel_In_Juvenile_Delinquency_Matters_FINAL_AS_APPROVED.pdf
- <http://njdc.info/wp-content/uploads/2016/01/Indiana-Public-Defender-Commission-Stds-for-Indigent-Defense-Svcs-2013.pdf>
- <http://njdc.info/wp-content/uploads/2016/02/Massachusetts-CPCS-Juv-Def-Performance-Stds.pdf>
- http://njdc.info/wp-content/uploads/2016/02/Ohio_defender_standards.pdf
- <http://njdc.info/wp-content/uploads/2016/04/Wisc-State-PD-juvenile-standards.pdf>
- <http://law.e-gov.go.jp/>
- <http://www.nichibenren.or.jp>(JFBA 日本弁護士連合会 홈페이지)
- <http://www.houterasu.or.jp> 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法テラス)
- <https://www.uni-due.de/~gvo400/materialien/JGG/JGG.htm>
- <http://lexic.de/index.php/g-grundlagen/verfahrensbeteiligte/beistand>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Operation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in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Hwong, Ji-tae* · Kim, Ji-young* · Won, Hye-wook** ·

Kim, Ji-youn*** · Son So-young****

To help the juvenile offenders, our legal system has implemented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since 2007, revising Juvenile 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consisted of three parts. The first purpose is to survey the actual oper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The second, we caught the current operational problems. At last, we suggested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regarding issues exposed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includes five primary contents: Overview about th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s related with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chapter 2),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of court-appointed assistants(chapter 3),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of juveniles seeing court-appointed assistants(chapter 4), Qualitative research of the in-depth interview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juvenile-court judges,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board investigators, and juveniles imprisoned in classification centers(chapter 5), comparative analysis with surveys(chapter 6).

The principal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literature research of foreign

*KIC, Research Fellow

**Professor, College of Law, Inha University Dr. Jur

***Post-doc, Ph. D. Police Administration

****Intern Researcher

cases, survey of court-appointed assistants(249 persons), survey of juveniles imprisoned in institutions(1,227 persons), in-depth interview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juvenile-court judges,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board investigators, and juveniles imprisoned in classification cent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esearch, discovered features associated with system management are in following:

The first, at present court-appointed assistants are consisted of 70% lawyers and 30% experts in areas of youth problems such as counsellors, professors, juvenile guidance commissioners etc. In addition, most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are males, from 30s to 40s, and volunteers applying to a court-appointed assistant after seeing court notice.

The second, there are great differences in work activities among court-appointed assistants. These differences are originated from gender, occupation, and region etc. By gender, females' activities are more outstanding than males' and by occupation, youth experts' works are noticeable. Particularly the result shows the fact that court-appointed assistant's operation are carried out well in Pusan, Ulsan and Gyeongnam state.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juveniles met court-appointed assistants are higher in Pusan, Ulsan and Gyeongnam state than other areas and higher in female assistants than males. The cases of high level of satisfaction are appeared in devoting time and effort to interview with juveniles.

The third, at present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is been operating variously by region. Moreover court-appointed assistants and juvenile-court judges of each region don't know much current condi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operation in other states. This study shows there is mutual interchange among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in some areas, but most of them don't perform mutual interchange and don't know each other.

The forth,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the level of self-assessment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and assessment and the level of assessment by juveniles. Though there are gender and regional differences, in principle court-appointed assistants' works are not received favorable evaluations by interviewed juvenil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many problems in the current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So we are trying to suggest some improvement plans. They may be summarized as follow:

The first, we suggest that the current court-appointed assistants ought to keep in touch with the good cases, learn various experiences each other through sharing data. It is important that same mistakes are not repeated. This study discovered a couple of mistakes, problems and faults in operating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So court-appointed assistants should learn many experiences and correct their mistakes and problems. They can follow the example of Pusan, Ulsan and Gyeongnam state in trying to devote much effort to their works.

The second, the educ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s is important, but it is not sufficient. Many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s are not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 course. If at all, the contents of the course are mere formal. Through sharing various experiences, court-appointed assistants can gain practical experiences of the works. And it is necessary in making good results.

The third, we need to buil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raise specialty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In USA, National Juvenile Defender Center(NJDC) has established Juvenile Defense Standards and been operating various training programs to specialize career of court-appointed assistant based on the Standards. This case may be considered as measure to specialize qualification of court-appointed assistant in juvenile justice process of ours.

Finally, current our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is criticized for being

operated unsystematically. So the guidelines to operate the system efficiently should be arranged. Japan legislated Instructions at work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and in the law,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about operating the system, for example works and pay, are provided. These foreign systems and laws are full of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to us.

[부록 1] 국선보조인 대상 설문지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D				TYPE	
----	--	--	--	------	--

「국선보조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선보조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조사'로 조사결과는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조사주관기관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조사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5.2.1.	범죄관련사항	①	②	③	④
5.2.2.	범죄경력	①	②	③	④
5.2.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①	②	③	④
5.2.4.	성장과정	①	②	③	④
5.2.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①	②	③	④
5.2.6.	학력 및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5.2.7.	교우관계	①	②	③	④
5.2.8.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①	②	③	④
5.2.9.	진술태도	①	②	③	④
5.2.10.	향후 생활계획	①	②	③	④
5.2.11.	소년에 대한 이전 조사자료들	①	②	③	④
5.2.12.	재범 가능성	①	②	③	④
5.2.13.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	①	②	③	④

5.3. 보조인 의견 결정시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는 특별한 범죄유형이 있습니까?

- ①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 ② 절도범죄
- ③ 성폭력범죄
- ④ 교통범죄
- ⑤ 풍속범죄(도박, 음락행위 등)
- ⑥ 유해화학 물질 흡입(마약, 분드, 락카 등)
- ⑦ 공문서 위조 및 사기 ⑧ 기타(직접기입: _____)
- ⑨ 없다

5.4. 면담시 소년의 태도(용모, 언행, 후회 및 합회의 정도)는 처분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약간 영향을 준다

④ 매우 영향을 준다

5.5. 보조인 의견 결정에 있어 국선보조인의 개인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약간 영향을 준다

④ 매우 영향을 준다

5.6. 보조인 의견서의 형식은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① 판사의 권유(판사가 권하는 양식)

② 내 나름의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

③ 정형화 된 양식이 없음(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 작성)

5.7. 의견서 형식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다음은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6.1. 국선보조인으로 활동 이전에 국선보조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까?

① 전혀 몰랐다

② 약간 알고 있었다

③ 매우 잘 알고 있었다

6.2. 다음은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6.2.1. 평소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자료나 기사, 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6.2.2. 내가 하는 일에 진정한 소명의식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6.2.3. 다른 보조인들과의 정보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2.4.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①	②	③	④
6.2.5. 내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2.6. 판사의 최종결정에 심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2.7. 내가 하는 일은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6.2.8.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직무에 비해 더 엄격한 윤리기준 등을 마땅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6.2.9. 나의 의견이 판사의 최종결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6.3. 다음은 국선보조인으로서의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6.3.1. 나는 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3.2. 나는 관례법에서 보장하는 소년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6.3.3. 나는 업무와 관련된 문헌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3.4. 나는 소년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6.4. 다음은 보조인 의견 결정과 관련된 업무 내용입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6.4.1.	소년이 예상처분을 물어오면 답변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6.4.2.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면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장래희망을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6.4.3.	시설내 처분이 적합한 아이이지만, 사회내처우로 의견을 제시하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5. 내 직업이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특별한 강점이 있다고 볼니까?

- ① 그렇다(6.5.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6.5.1. 그렇다면 내 직업의 어떠한 점이 국선보조인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률적 지식
② 청소년에 대한 이해
③ 심리 및 상담기술에 대한 이해
④ 기타(직접기입)

7. 다음은 국선보조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7.1. 보수 수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③ 적절하다
④ 매우 적절하다

7.2.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7.3.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7.3.1번 문항으로)
② 없다(7.3.2번 문항으로)

7.3.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충실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충실하지 않다
- ② 별로 충실하지 않다
- ③ 충실하다
- ④ 매우 충실하다

7.3.2.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 ② 필요성이 없어서
- ③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④ 기타(직접기입: _____)

7.4. 다음은 국선보조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기해주세요.

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7.4.1.	청소년심리, 비행의 원인 및 실태	①	②	③	④
7.4.2.	대상자와의 상담기술	①	②	③	④
7.4.3.	국선보조인 활동사례 발표와 토론	①	②	③	④
7.4.4.	비행청소년 사법처리절차	①	②	③	④
7.4.5.	국선보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	①	②	③	④

7.5. 국선보조인에서 법률 전문가와 비법률 전문가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률 전문가와 비법률 전문가의 비율이 비슷해야 함
- ② 법률 전문가의 비율이 높아야 함
- ③ 비법률 전문가의 비율이 높아야 함
- ④ 상관없다

7.6. 국선보조인 운영 및 관리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운영
- ②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 ③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④ 기타(직접기입)

7.7. 현행 국선보조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7.7.1번 문항으로)

7.7.1. 국선보조의 운영 및 관리가 좀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8.1. 면담 소년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연락하지 않고 있다
② 가끔 연락하고 있다
③ 자주 연락하고 있다

8.2. 국선보조의 활동에 대한 귀하의 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표기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8.2.1.	참여하는 것이 보람 있다	①	②	③	④
8.2.2.	앞으로 계속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8.2.3.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8.2.4.	비형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8.3. 국선보조의 활동의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8.3.1.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8.3.2.	보수가 적다	①	②	③	④
8.3.3.	관련지식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8.3.4.	면담시 대상자들이 비협조적이다	①	②	③	④
8.3.5.	남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3.6.	국선보조인간의 상호협조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8.3.7.	처분유형과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함	①	②	③	④
8.3.8.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①	②	③	④
8.3.9.	국선보조인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①	②	③	④
8.3.10.	대상자의 개선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8.3.11.	대상자가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8.4. 국선보조인 활동의 보람결과 관련한 것입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8.4.1.	활동사례집 및 회보 발간	①	②	③	④
8.4.2.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확대	①	②	③	④
8.4.3.	국선보조인 워크숍 활성화	①	②	③	④
8.4.4.	교육 및 연수 강화	①	②	③	④
8.4.5.	역할 및 권한 강화	①	②	③	④
8.4.6.	법원의 감독 강화	①	②	③	④
8.4.7.	법원의 예산지원	①	②	③	④
8.4.8.	국선보조인에 대한 포상의 확대	①	②	③	④

9. 국선보조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 소년법원에서 협력자,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조력자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국선보조인에게 기대되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은 경우에 따라 상충될 수도 있고, 이러한 역할 모두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국선보조인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역할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간단히 피력하시오.

10. 현행 국선보조인 제도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가 견해를 적어주세요.

긴 시간 협조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시설 내 소년 대상 설문지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D

「소년국선보조인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립연구기관으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년국선보조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는 보다 좋은 소년사법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주관기관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7.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와서 여러분과 얼마나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까?

- _____ 1) 30분 미만
 _____ 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_____ 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_____ 4) 2시간 이상

8. 다음은 여러분이 최근에 국선보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 용	① 전혀 하지 않았다	② 별로 하지 않았다	③ 약간 이야기 하였다	④ 많이 이야기 하였다
1) 이번 사건내용	①	②	③	④
2) 나의 과거비행	①	②	③	④
3) 나의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①	②	③	④
4) 나의 성장과정	①	②	③	④
5) 나의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①	②	③	④
6) 나의 학력 및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7) 나의 교우관계	①	②	③	④
8) 내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①	②	③	④
9) 향후 생활계획	①	②	③	④
10) 피해자와의 합의능력	①	②	③	④
11) 이번 비행의 처분에 관한 이야기	①	②	③	④

9.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만난 국선보조인이 여러분의 부모님(보호자) 또는 가족과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_____ 3) 모르겠다

10.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국선보조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 용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비행소년이나 범죄자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내 이야기를 많이 듣고자 노력하는 것 같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의심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다음은 여러분이 국선보조인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 용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의지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사건내용과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국선보조인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무성의하게 말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구총서 16-AA-02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 | 2016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김진환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02)2272-0307
ISBN | 979-11-87160-09-0 9333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